

# 2012 간추린 改正稅法

2013

企劃財政部



## 머 리 말

2012년 우리경제는 고용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물가가 안정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신흥국의 성장률 둔화, 유럽재정위기의 재부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수출이 둔화되고 소비·투자의 부진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2년 세법개정은 “활력있는 경제, 튼튼한 재정, 안정된 미래”라는 비전하에 지속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면서 내수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비과세·감면정비 및 과세기반 확충 등을 통해 재정건전을 제고하고 100세시대 대비 연금·퇴직 및 금융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등 조세제도 선진화를 통해 미래에 대한 대비도 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고용창출 세제의 고용유인효과를 제고하고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전·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법인도 확대하였습니다. R&D 등 투자활성화를 위해 R&D세제지원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율을 우대하였습니다. 융합과 혁신지원을 위해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등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내수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소비를 촉진하고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는 한편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비촉진을 위해 에너지 고효율 가전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1년간 추가적으로 유예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재형저축을 신설하고,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월세소득공제율을 인상하였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노인 1인가구와 탈기초수급자에게 근로장려세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체납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기준도 인상하였습니다.

셋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원투명성 제고와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세입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성실공익법인 확인제도를 마련하고 해외금융 계좌 신고제도 개선, 탈세제도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 차명계좌에 대한 취득추정규정 도입 및 차명계좌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 면세유 관리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비과세·감면 정비를 위해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종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향조정 등 정책목적을 달성한 감면제도는 축소·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과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상향조정하고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증가하는 재정수요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세제도 선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금융세제 선진화 측면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하고 여타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고액의 보험상품을 과세로 전환하여 금융상품간 과세형평을 제고하였습니다.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연금·퇴직소득을 개편하였습니다. 사적 연금활성화를 위해 연금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대상금액을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연금재원 확충을 위해 연금저축 납입요건을 완화하면서 장기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수령요건은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퇴직금의 경우에는 연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부담을 연금소득보다 높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 접대비 제도 개선, 금융회사 등의 대손충당금 설정률 인하 등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과세제도를 합리화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2 간추린 개정세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 내용이 포함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내용과 개정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국민과 기업, 세무사·관세사·공인회계사 및 관련 공무원들이 새롭게 개정된 세법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3년 3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백은찬



# 目 次

## [소득세법]

I. 총괄 · 사업소득 .....	9
1.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9
2. 퇴직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	10
3. 부동산서비스업 등 업종 분류 합리화 .....	11
4. 인적용역소득자의 업종구분 명확화 .....	12
5. 부동산 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방법 보완 .....	13
6. 연말정산 선택가능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 .....	14
7.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 요건 명확화 .....	15
8.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 .....	16
9. 성실사업자 등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17
10.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제도 보완 .....	18
11. 소득세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 .....	19
12.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근거 마련 .....	20
13.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 명확화 .....	21
14. 기부금 표본조사 기본계획 제출 조사대상 확대 및 기한 변경 .....	22
15.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법정기부금의 범위 명확화 .....	23
16. 임업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개선 .....	24
17. 봉사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정 .....	25
18. 국고보조금 처리 기준 명확화 .....	26
19.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등 조정 .....	27
II. 근로소득 .....	28
1.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	28

2.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 확대 .....	29
3.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30
4.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31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32
6. 원양·외항 선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 .....	33
7. 국외건설 감리업무 수행자 비과세 범위 명확화 .....	33
8.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34
9.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 .....	35
10.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	36
11.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	37
<b>Ⅲ. 연금소득</b> .....	<b>38</b>
1. 연금소득의 유형 재분류 .....	38
2. 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 조정 및 확대 .....	39
3.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차등 적용 .....	40
4. 연금계좌의 범위 .....	41
5. 연금저축계좌의 취급기관 및 계약의 범위 .....	42
6. 연금계좌의 가입 및 납입요건 완화 .....	43
7. 연금수령요건 개선 .....	44
8. 연금수령한도 신설 .....	45
9. 연금계좌의 인출 순서 신설 .....	46
10. 연금계좌간 이체요건 보완 .....	47
11.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범위 등 .....	48
11-1 기타소득의 요건 .....	48
11-2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	49
11-3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	50
12. 연금계좌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51
12-1 배우자 상속시 과세특례 신설 .....	51
12-2 승계범위 및 절차 .....	52

12-3 연금계좌가입자 사망시 세액정산 및 절차 .....	53
13.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의 범위 명확화 .....	54
14. 공적연금 관련 과세체계 정비 .....	55
14-1 공적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확대 .....	55
14-2 공적연금법에 따른 연금 및 일시금의 계산 .....	56
15. 연금소득 등 수입시기 조정 .....	58
16. 연금계좌 과세제외금액의 확인절차 등 .....	59
16-1 과세제외금액의 범위 .....	59
16-2 과세제외금액의 확인 .....	60
17. 연금저축 해지가산세 폐지 .....	61
18.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 확대 .....	62
<b>IV. 퇴직소득</b> .....	<b>63</b>
1.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	63
2. 퇴직소득 과세이연 방식 개선 .....	64
3. 이연퇴직소득세의 계산 및 원천징수 .....	65
4. 퇴직소득세 환급절차 개선 .....	66
5. 퇴직금 중산정산 후 최종 퇴직시 세액정산특례 신설 .....	67
6. 퇴직소득세 정산 사유 등 .....	68
7. 퇴직소득 일부 수령시 세액계산특례 폐지 .....	69
8. 퇴직관정의 특례 조정 .....	70
9. 근속연수의 계산 명확화 .....	71
10.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외수령 관정 특례 .....	72
11. 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관계 명확화 .....	73
12. 보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 사유 추가 .....	74
13. 근로·퇴직소득 비과세 규정 정비 .....	75
14. 퇴직소득의 소득구분 명확화 .....	76
15. 근로·퇴직소득의 범위 조정 .....	77
16.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범위 조정 .....	79

17. 금전 외의 대가로 지급시 총수입금액의 계산 .....	80
<b>V. 근로장려세제 .....</b>	<b>81</b>
1.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	81
2. 탈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적용 확대 .....	82
3. 근로장려세제 사업자 확대적용 .....	83
3-1 모든 사업소득자에 대한 EITC 적용 확대 .....	83
3-2 사업자의 연간 총소득합계액 산정방법 변경 .....	84
3-3 총급여액 등 산정시 제외 대상 소득의 범위 조정 .....	85
4. 근로장려세제 수급요건 개선 .....	86
4-1 전세금 평가방법 개선 .....	86
4-2 신청요건 보완 .....	87
4-3 배우자 사망시 판정기준 보완 .....	88
<b>VI. 금융소득 .....</b>	<b>89</b>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	89
2. 채권 과세제도 정비 .....	90
2-1 10년이상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개선 .....	90
2-2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 이자소득 과세 .....	90
3. 과세제외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납입한도,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및 중신형 연금보험 요건 등 신설 .....	91
4. 저축성보험 계약변경시 계약기간 기산일 변경 .....	92
5.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	93
6.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94
7. SOC 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	95
8.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96
9. 영농조합법인 등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97
10. 임대주택 리츠·펀드 세제지원 확대 .....	98
11. 수협 근로자의 자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 .....	99

12. 녹색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의무투자비율 완화 .....	100
13.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 연장 .....	101
14.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비과세 적용 종료 .....	102
15.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종료 .....	102
16. 기업어음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일원화 .....	103
17.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건수 축소 .....	103
18.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 확대 .....	104
19.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	105
20. 법인분할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기준 보완 .....	106
21. 주식대차거래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기준 보완 .....	107
22.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산정방식 변경 .....	108
23. 창업자·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109
24. 기타 제도개선 .....	110
24-1 역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	110
24-2 과생결합사채 과세제도 정비 .....	111
24-3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범위에 저축성보험 등 추가 .....	112

## [법인세법]

I. 기업경쟁력 강화 .....	119
1.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법인의 주식처분 및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처분에 따른 과세시 과세이연 요건 신설 .....	119
2. 적격물적분할 관련 부득이한 사유 및 과세방법 구체화 .....	120
3.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	122
4.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합리적 조정 .....	123
5. 제약회사간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124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한 연장 .....	125
7.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126
8.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 .....	127

9. 주주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128
10.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129
11.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130
12. 기업도시·신발전지역 개발사업구역내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131
<b>II. 공정과세 및 세원관리 강화 .....</b>	<b>132</b>
1. 불합리한 접대비 제도 개선 .....	132
2. 금융회사 등 대손충당금 설정률 인하 .....	133
3.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신고서의 제출의무 .....	134
4. 임원의 범위 확대 .....	135
5. 계열회사간 진출입시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임원의 범위 명확화 ·	136
6. 농수산물 중도매인·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미교부 가산세 특례 요건 보완 .....	137
7.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 대상 확대 .....	138
8. 연결집단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방법 명확화 .....	139
9.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 .....	140
10.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적용 조합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	141
11.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	142
12.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	143
13.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	144
14.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	145
15. 벤처기업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	146
16. 행복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기한 종료 .....	147
17.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	148

<b>III. 법인 세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b> .....	149
1.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 149
2.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 취소권자 변경 .....	150
3.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일원화 .....	151
4. 지급명세서 제출제도 보완 .....	152
5.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 .....	153
6.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 .....	154
7. 경비 등의 지출증명서류 보관의무 면제 신설 .....	155
8.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공제사업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추가	· 156
9.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 · 승인 기간 변경 .....	157
10.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추가	· 158
11.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대상 .....	160
1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추가	· 161
13.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금 손금산입특례 신설 .....	162
14.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163
15. 영농조합법인 · 영어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164
<b>IV. 기부금 및 비영리법이 세제개선</b> .....	165
1. 전공대학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 .....	165
2.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대상에 추가 .....	166
3. 국제기구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제도 개선 .....	167
4. 지정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추가 .....	168
5. 지정기부금단체 추가 .....	169
6.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한 변경 .....	171
7.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 명확화 .....	172
8. 수익사업의 정의 명확화 .....	173
9. 소비자생협을 비영리법인에 추가 .....	174

<b>V. 기타 제도보완</b> .....	175
1. 외국법인 발행 채권 등 관련 원천징수의무자 명확화 .....	175
2.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규정 개선 .....	176
3. 자본잉여금의 개념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 .....	177
4. 법인세 징수규정 명확화 .....	178
5.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 추징 및 이자상당액 가산사유를 법률로 이관 .....	179
6.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 .....	180
7. 리스료의 손익귀속시기 법령화 .....	181
8. 국세결손처분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금 산입 대상 제외 .....	182
9. 용역제공의 손익 귀속시기 명확화 .....	183
10.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방법 명확화 .....	184
1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원천징수방법 명확화 .....	185
1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조문 정리 .....	186
13. 기타 조문정리 .....	187

## [양도소득세]

1.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중과유예 일몰 연장 .....	197
2. 투기지역내 양도세 추가과세 제도 일몰 연장 .....	197
3.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제도 항구화 .....	198
4.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 일몰 종료 .....	198
5.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199
6.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기준 완화 .....	200
7.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기준 완화에 따른 조문정리 .....	201
8. 양도소득세 감면을 세액감면과 소득공제 방식으로 이원화 .....	202
9.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204
10.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주택 제한	205
11.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등 적용 후 사후관리 규정 위반시 신고 납부기한 신설 .....	206

12.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의 지분변경시 과세방법 변경 .....	207
13.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명확화 .....	208
14. 혼인 또는 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선 .....	209
15.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	210
16.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판정기준 변경 .....	212
17. 이월과세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시기를 증여자의 취득시기로 합리화 .....	213
18.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직계존속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재촌·자경요건 완화 .....	214
19. 주택일부 수용후 잔존 주택·부수토지의 양도기한 연장 .....	215
20. 주택일부 수용후 잔존 주택·부수토지의 양도기한 연장에 따른 조문정리 ·	216
21. 중과 배제 임대주택 요건 중 면적기준 폐지 .....	217
22. 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요건 완화 .....	218
2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따른 조문 정비 .....	219
24.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항구화 및 사후관리제도 강화 ·	220
24-1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항구화 및 사후관리제도 도입 .....	220
24-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항구화 및 사후관리 보완 ····	221
24-3 중소기업 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사후관리 강화 .....	222
25. 세제지원에 따른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규정 보완 ·	224
26.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부세 과세특례 항구화 .....	224
27.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특례 요건 명확화 ·	225
28. 8년 자경농지 등의 양도세 감면대상 중 비거주자 제외 .....	226
29.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 등의 양도세 감면 자경농지 대상 명확화 ···	227
30. 8년 자경농지 등 양도세 감면 대상에 세종시 포함 명확화 .....	229
31.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면제 등 일몰 연장 .....	230

32.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면제 일몰 연장 .....	231
33.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일몰 연장 .....	232
34.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	233
35.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일몰 연장 .....	234
36.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 ..	235
3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 .....	236
38.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일몰 연장 .....	237
39.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	238
40.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23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합리화 .....	247
1-1 지배주주 선정 보완 .....	247
1-2 동일주주간의 증여세 과세제 .....	248
1-3 수혜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	248
1-4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개념 보완 .....	249
1-5 간접출자법인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 특례 폐지 .....	250
1-6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	251
1-7 간접보유비율 계산의 합리화 .....	252
1-8 지배주주 선정 시 자기주식 제외 .....	253
2. 성실공익법인 요건 강화 .....	254
3.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확인 의무화 .....	255
4.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절차 등 .....	256
5.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 신설 .....	257
6.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신설 .....	258
7. 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의 개선 .....	259
8. 공익법인 공시대상서류 확대 .....	260

9. 기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	261
10. 차명계좌 증여추정 적용 명확화 .....	262
11.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	263
12.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개선 :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원칙 별도 조문화 .....	264
13.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개선에 따른 증여재산범위 규정 등 ...	265
14.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일반원칙 신설에 따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보완	266
15.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신설에 따른 이익계산방법규정 .....	267
16.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	268
17.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시 연대납세의무 면제	269
18.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보완 .....	270
19. 상속세과세가액 범위 명확화 .....	271
20.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 적용대상 확대 .....	272
21. 상속세 비과세대상 금액기준 규정 .....	273
22.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범위 확대 .....	274
23.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과세 .....	275
24. 물납제도의 개선 .....	276
24-1 연부연납시 물납 신청 금지 .....	276
24-2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축소 .....	277
25. 연부연납 신청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방법 개선 .....	278
26. 평가심의위원회 임원의 임기 등 개선 .....	279
27.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근거 개정 .....	280
28. 상속분쟁으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특례 명확화 .....	281
29. 공익법인 등의 범위 확대 .....	282
30.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배제 적용기한 연장 .....	283

## [종합부동산세법]

1.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 요건 중 면적기준 폐지 .....	289
2.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 범위 확대 .....	290

- 3. 국토부장관 및 국세청장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요구 근거 신설 291
- 4. 국토부장관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권한 부여 ..... 292

## [조세특례제한법]

- I.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297
  - 1.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297
  - 2. 조세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확대 ..... 298
  - 3.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299
  - 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등 ..... 300
  - 5.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 및 알뜰주유소 감면을 확대 ... 301
  
- II.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302
  - 1. R&D 비용 세액공제 제도 합리적 조정 ..... 302
  - 2. 중견기업에 대한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 구간 신설 ..... 303
  - 3.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R&D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신약  
연구개발 추가 ..... 304
  - 4. 정부 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 305
  - 5.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이익처분  
성과급 제외 ..... 306
  - 6.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위탁연구개발비의 범위 명확화· 307
  - 7.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분야 R&D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308
  - 8. R&D 세제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 309
  - 9.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310
  
- III. 투자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311
  - 1.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311
  - 2.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일부시설 공제율 인상 ... 312
  - 3.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 명확화 ..... 313
  - 4.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 ..... 314

5.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 시설 추가 .....	315
6.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합리적 개선 .....	316
7.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	317
8. 고용창출투자 추가세액공제시 우대되는 청년근로자의 범위 확대 ..	318
9. 합병·분할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명확화 .....	319
10.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321
11.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322
<b>IV. 기타 조세특례 .....</b>	<b>323</b>
1. 사업전환·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323
2.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324
3.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	325
4.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326
5.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327
6.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328
7. R&D시설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학교 추가 .....	329
8. 해외 사업장 철수방식 U턴지원 세제 보완 .....	330
8-1 해외사업장 유지방식 추가 및 해외사업장 철수기한 연장 ..	330
8-2 국내복귀대상 사업자의 범위 .....	331
9.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율 인상 .....	332
10. 제주개발관련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333
1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334
12. 금융중심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335
13. 기업도시 등 지역개발 세액감면 대상지역 추가 .....	336
14. 기업도시·신발전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등 ...	337
15.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간 중복지원 배제 기준 명확화 .....	338
16. 법인·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 조정 .....	339
17.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	340

18. 조세지출 종합평가 대상 및 조세지출예산서 작성방법 .....	341
---------------------------------------	-----

## [국제조세분야]

<b>I.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b>	<b>347</b>
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개선 .....	347
1-1 특수관계 판정기준 보완 .....	347
1-2 배당간주 적용대상 확대 .....	348
1-3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보완 .....	349
2.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정 기준 보완 .....	350
3. 장비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 .....	351
4. 외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정보교환을 위한 금융정보 요구권 신설 .....	352
5.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	353
5-1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	353
5-2 보유계좌잔액 계산 기준 변경 .....	354
5-3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	355
5-4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 .....	356
6.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반환금액의 귀속 사업연도 명확화 .....	357
<b>II. 비거주자 · 외국법인 관련 .....</b>	<b>358</b>
1. 국외 공동사업체(외국단체)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	358
1-1 외국법인 판정기준 명확화 .....	358
1-2 외국단체에 대해 동업기업 조세특례 허용 .....	359
1-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상 구분 및 과세방법 명확화 .....	360
2. “국내사업장 - 국외 본(지)점간 거래(‘내부거래’)에 대한 독립기업 원칙 적용 명확화 .....	361
3.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 .....	362

4. 외국교육기관 운영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	363
5. 거주자가 내국법인·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 지급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	364
6.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연금소득 신설 등 .....	365
7.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확대 .....	366
8. 비거주자에 대한 근로·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정 .....	367
9. 외국법인의 국내자산 수증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명확화 ...	368
10. 외국법인의 부동산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세지 명확화 .....	369
11.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동업기업과세특례 개선 .....	370
12. 양도시 과세가 면제되는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	371
<b>Ⅲ. 외국인투자 등 조세감면 관련</b> .....	372
1.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일몰연장 .....	372
2. 소득세감면 외국인기술자 범위확대 .....	373
3.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	374
4. 외국인투자지역 감면대상 업종 확대 .....	375
5. 외국투자가의 배당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식 개선 .....	376
6.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외국투자가에 대한 부당한 대여금 제외 .....	377
7.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규정 합리화 .....	378
8. 비거주자의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	379
9.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 접수창구 확대 .....	380

## **[부가가치세법]**

<b>I. 과·면세 및 영세율 범위 조정</b> .....	387
1. 채권추심업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종료 .....	387

2.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기관에 산학협력단 추가 .....	387
3. 산학협력단의 학교시설 무상임대에 대한 부가세 면제 .....	388
4. 은행법령 개정에 따른 면제대상 은행업 명확화 .....	389
5.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교육용역 등 부가세 면제 .....	390
6. 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	391
7. 국립대학병원이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 명확화 ...	392
8. 유방재건술을 과세대상 진료용역에서 제외 .....	393
9. 개인택시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394
10. 국내개최 국제대회에 대한 세제지원 .....	395
11.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범위 추가 .....	396
12. 국제대회가 종료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삭제 .....	397
13. 지방공기업의 정부업무대행단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범위 조정 ..	398
<b>II.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계산의 합리화 .....</b>	<b>399</b>
1.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겸영시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기준 명확화 ...	399
2. 사업자등록 하기 전의 매입세액공제 확대 .....	399
3. 수용시 부가가치세 절차 편의 제고 .....	400
4. 예정고지 산정 기준금액의 합리적 개선 .....	401
5. 용역대가를 건물 등으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명확화 .....	402
<b>III. 농·어민 및 중소기업 등 지원 .....</b>	<b>403</b>
1. 구내식당(공장·학교 등)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	403
2. BTO 방식으로 건설한 학교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학교시설의 범위 명확화 .....	404
3.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	405
4. 부가가치세 등이 감면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	406
5. 농어업 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	406
6.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 개선 .....	407

7. 농·수협 등의 소비대차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일몰 연장 .....	408
8. 천연가스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	409
9.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	409
10.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영세율 일몰 연장 .....	410
11.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 연장 .....	410
12.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	411
1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 .....	412
14. 중소기업 농업·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 .....	413
15. 영세율 적용대상 임업인의 범위 조정 .....	414
<b>IV.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제도 보완 .....</b>	<b>415</b>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가공 및 위장 발급·수취 가산세 신설 .....	415
2. 세금계산서 관련 규제 완화 .....	416
3.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간 보완 .....	417
4.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기준금액 조정 .....	418
5. 세금계산서 선발급 요건 간소화 .....	419
6.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낮은 가산세 적용기한 연장 .....	420
<b>V. 납세편의 제고 및 기타 과세제도 보완 .....</b>	<b>421</b>
1. 금지금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일몰 연장 .....	421
2.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몰 연장 .....	421
3. 면세유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	422
4. 저유소를 제조업의 사업장 범위에서 제외 .....	422
5. 폐업신고서 송부 방법 추가 .....	423
6. 한국석유공사 비축용 석유를 외국법인에 소비대차로 공급시 재화공급 범위에서 제외 .....	423
7. 국외 위탁가공을 위한 재화 반출시 수출 규정 적용 합리화 .....	424
8.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대상 재수입재화의 범위 개선 .....	425
9.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및 용역 공급규정 보완 .....	426

10. 구매확인서 발급기관 추가 .....	427
11. 영세율매출명세서 .....	428
12. 납부의무면제자의 환급조문 정비 .....	429
13. 동물진료 매출대장 관련 조문정비 .....	429
14. 세종시 설치 등에 따른 조문정비 .....	430
15. 세금계산서합계표 개별명세 작성의무 면제 범위 명확화 .....	431
16. 100% 자료상 가산세 징수장소 일원화 .....	432
17. 농·어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	433
18. 면세유 한도량 신청시기 및 첨부서류 등 신설 .....	433
19. 출고지시서 등 교부요건 명확화 .....	434
20.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확대 .....	434
21.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 명확화 .....	435
2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변경에 따른 유형전환 시기 조정 .....	436
23.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에 따른 절차규정 마련 .....	437
24. 면세점 이용 편의 제고 .....	438
24-1 VAT 시내환급창구 허용 관련 .....	438
24-2 VAT 환급관련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반출확인방법 변경 .....	439
24-3 면세판매자의 VAT 신고 및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 ..	440
24-4 전자판매확인서를 통한 환급등의 특례 .....	441
24-5 제주도여행객 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를 미화기준으로 조정 ..	442

## [인지세법]

I. 기타 조문정리 .....	445
1.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조문 정비 .....	447
1-1 시행령 제2조의2 제15호 .....	447
1-2 시행규칙 제9조 .....	447

## [개별소비세법]

1.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 면제 ..... 453
2. 고가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 454
3. 하이브리드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455
4. 제주도 및 기업도시 소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456
5. 주한외교관용 자동차 석유류 면세절차 개선 ..... 457
6. 외국군인의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종료 ..... 458
7. 유류세 신고·납부특례 보완 ..... 459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1.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 465
2.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 .. 466
3. 택시용 LPG 부탄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466
4. 면세유 관리시스템 구축 ..... 467
5. 외항선박·원양어선용 면세유 공급명세서 도입 ..... 468
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 ..... 469

## [주세법]

1. 전통주 등 정의 규정 신설 ..... 475
2. 소주 명칭 통합 ..... 476
3. 면허시 부관(조건) 지정에 대한 제한 ..... 476
4. 주세 신고·납부주기 변경 ..... 477
5. 주세 보전명령제도 개선 ..... 478
6. 주류의 표시사항 이관 ..... 479
7. 주류제조시설의 공통 이용시 승인절차 폐지 ..... 480
8. 직매장 시설기준 완화 ..... 481
9. 전통주 세율경감 제도 개선 ..... 482
10. 주류 첨가재료 추가 ..... 483
11. 브랜드·위스키 등 주류 제조시설 기준 완화 ..... 484

12.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완화 .....	485
13. 탁주(막걸리) 세원관리 강화 .....	485
14. 국세청 훈령·고시사항 법령화 .....	486
14-1 용도구분 주류표시제도 신설 .....	486
14-2 주류 운반 관련사항 .....	487
14-3 주정소매업 면허 및 면허요건 추가 .....	487
14-4 주류 제조시설의 변동신고 .....	488

## [증권거래세법]

1. 사인간 주식 장외거래 내역 제출 의무화 .....	493
2.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 .....	494
3.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기한 연장 .....	495
4. 창업자·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495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과세자료 대상 금융상품설명서 등 사전제출 의무화 .....	501
-------------------------------------	-----

## [국세기본법]

1. 전자송달을 위한 신청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자진납부 .....	507
2. 부담부증여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	508
3.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	509
4. 고액 국세채권과 관련된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 .....	510
5. 부당감면가산세 신설 .....	511
6. 납세조합의 불성실가산세 부과사유 변경 .....	512
7.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 조정 .....	513
8. 기한후 신고·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배제사유 확대 .....	514
9. 근로장려금의 국세환급금 발생일 추가 .....	515
10.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절차 명확화 .....	516

1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	517
12. 심사·심판청구의 중복 제기 시 처리절차 명확화 .....	518
13.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사유 추가 .....	519
14. 의견진술신청 시 간이통지 허용 .....	520
15.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경정절차 개선 .....	520
16. 당초 지정통지한 심판관 중 일부 제외시 통지 생략 .....	521
17.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상정방식 보완 .....	522
18. 세무조사 중지사유 추가 .....	523
19.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	524
20.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525
21.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도 개선 .....	526
22.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절차 개선 .....	527

## [국세징수법]

1.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 개선 .....	533
2. 신고납부 시 납부서에 따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	534
3. 제기 중소기업인 징수유예기간 특례요건 완화 .....	535
4. 압류금지재산 중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범위 조정 .....	537
5.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 금액 인상 .....	538
6. 복수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방법 규정 .....	539
7.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 .....	540
8. 공매 취소의 사유 규정 .....	541
9. 체납처분 중지 기준 개선 .....	542

## [관세법]

I. 기본관세율 조정 .....	547
1. 물가안정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관세율 조정 .....	547

<b>II. 관세평가 제도 개선</b> .....	548
1. 과세가격에 생산지원비 배분가산 근거 마련 .....	548
2. 동종·동질(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요건 명확화 .....	549
3.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 명확화 .....	550
4.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가격자료 미제출·비협조등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 마련 .....	551
 <b>III. 관세 부과징수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b> .....	 552
1. 원산지 검증 관련 부과체척기간·후발적 경정청구기간 보완 .....	552
2. 관세환급 사유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명확화 .....	553
2-1. 관세환급 사유별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	553
3.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주체 확대 등 .....	554
4.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사유 추가 .....	555
5. 보세판매장 특허제도 개선 .....	556
6. 수출입 물품가격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 .....	557
7. 탁송품 통관관리 강화 .....	558
7-1. 탁송품 운송업자 자체시설 통관허용 기준 .....	559
8. 품목분류 기준상 국내註 신설 .....	560
9. 관세율표 ‘알기쉬운 법령’ 개정 .....	561
10.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 통관 관련 담보비율 조정 .....	561
11. 개항외 지역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사유 신설 등 .....	562
 <b>IV. FTA관세특례법 관련 제도개선</b> .....	 563
1.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	563
1-1.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 .....	563
2. FTA관세특례법상 특례부과체척기간 도입 .....	564
3. 협정관세 적용보류 규정 명확화 .....	565
3-1. 협정관세 적용보류 기간 .....	565
3-2.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요건 .....	566

4. 원산지 확인요청 사유 추가 .....	567
<b>V. 관세 감면제도 정비 .....</b>	<b>568</b>
1.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단계적 정비 .....	568
2. 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 대상기관 확대 .....	568
3. 임상시험용의약품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 .....	569
4. 디지털방송장비 관세감면 종료 .....	569
5. 해외진출 후 국내복귀 기업 관세감면 .....	570
6. 제주첨단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 일몰연장 .....	571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개정된 주요내용】

### I. 총괄·사업소득

1.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2. 퇴직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3. 부동산서비스업 등 업종 분류 합리화
4. 인적용역소득자의 업종구분 명확화
5. 부동산 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방법 보완
6. 연말정산 선택가능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
7.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 요건 명확화
8.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
9. 성실사업자 등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10.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제도 보완
11. 소득세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
12.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근거 마련
13.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 명확화
14. 기부금 표본조사 기본계획 제출 조사대상 확대 및 기한 변경
15.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법정기부금의 범위 명확화
16. 임업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개선
17. 봉사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정
18. 국고보조금 처리 기준 명확화
19.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등 조정

### II. 근로소득

1.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2.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 확대
3.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4.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6. 원양·외항 선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

7. 국외건설 감리업무 수행자 비과세 범위 명확화
8.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9.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
10.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11.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 Ⅲ. 연금소득

1. 연금소득의 유형 재분류
2. 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 조정 및 확대
3.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차등 적용
4. 연금계좌의 범위
5. 연금저축계좌의 취급기관 및 계약의 범위
6. 연금계좌의 가입 및 납입요건 완화
7. 연금수령요건 개선
8. 연금수령한도 신설
9. 연금계좌의 인출 순서 신설
10. 연금계좌간 이체요건 보완
11.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범위 등
  - 11-1 기타소득의 요건
  - 11-2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 11-3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12. 연금계좌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12-1 배우자 상속시 과세특례 신설
  - 12-2 승계범위 및 절차
  - 12-3 연금계좌가입자 사망시 세액정산 및 절차
13.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의 범위 명확화
14. 공적연금 관련 과세체계 정비
  - 14-1 공적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확대
  - 14-2 공적연금법에 따른 연금 및 일시금의 계산
15. 연금소득 등 수입시기 조정
16. 연금계좌 과세제외금액의 확인절차 등

- 16-1 과세제외금액의 범위
- 16-2 과세제외금액의 확인
- 17. 연금지축 해지가산세 폐지
- 18.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 확대

#### IV. 퇴직소득

- 1.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 2. 퇴직소득 과세이연 방식 개선
- 3. 이연퇴직소득세의 계산 및 원천징수
- 4. 퇴직소득세 환급절차 개선
- 5. 퇴직금 중산정산 후 최종 퇴직시 세액정산특례 신설
- 6. 퇴직소득세 정산 사유 등
- 7. 퇴직소득 일부 수령시 세액계산특례 폐지
- 8. 퇴직판정의 특례 조정
- 9. 근속연수의 계산 명확화
- 10.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 특례
- 11. 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관계 명확화
- 12. 보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 사유 추가
- 13. 근로·퇴직소득 비과세 규정 정비
- 14. 퇴직소득의 소득구분 명확화
- 15. 근로·퇴직소득의 범위 조정
- 16.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범위 조정
- 17. 금전 외의 대가로 지급시 총수입금액의 계산

#### V. 근로장려세제

- 1.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 2. 탈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적용 확대
- 3. 근로장려세제 사업자 확대적용
  - 3-1 모든 사업소득자에 대한 EITC 적용 확대
  - 3-2 사업자의 연간 총소득합계액 산정방법 변경
  - 3-3 총급여액 등 산정시 제외 대상 소득의 범위 조정

4. 근로장려세제 수급요건 개선
  - 4-1 전세금 평가방법 개선
  - 4-2 신청요건 보완
  - 4-3 배우자 사망시 판정기준 보완

## VI. 금융소득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2. 채권 과세제도 정비
  - 2-1 10년이상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개선
  - 2-2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 이자소득 과세
3. 과세제외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납입한도,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및 종신행 연금보험 요건 등 신설
4. 저축성보험 계약변경시 계약기간 기산일 변경
5.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6.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7. SOC 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8.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9. 영농조합법인 등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0. 임대주택 리츠·펀드 세제지원 확대
11. 수협 근로자의 자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
12. 녹색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의무투자비율 완화
13.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 연장
14.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비과세 적용 종료
15.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종료
16. 기업어음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일원화
17.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건수 축소
18.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 확대
19.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20. 법인분할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기준 보완
21. 주식대차거래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기준 보완
22.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산정방식 변경

- 23. 창업자·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24. 기타 제도개선
  - 24-1 역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 24-2 파생결합사채 과세제도 정비
  - 24-3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범위에 저축성보험 등 추가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률: 제11611호(2013.1.1)
- 대통령령: 제23887호(2012.6.29), 제24356호(2013.2.15)
- 기획재정부령: 제323호(2013.2.23)



# I. 총괄 · 사업소득

## 1.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령 §36)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소득세 비과세 사회복지사업</p> <p>○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p> <p>*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p> <p>&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비과세 범위 확대</p> <p>○ (좌 동)</p> <p>○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p>

### (2) 개정이유

-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퇴직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소득령 §25②, §26의2⑦, §51③, §55⑤, §57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저축성보험차익(이자소득) ○ 퇴직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은 제외	○ <삭 제>
<input type="checkbox"/>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배당소득) ○ 퇴직일시금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 분배금은 제외	○ <삭 제>
<input type="checkbox"/> 총수입금액의 범위(사업소득) ○ 퇴직보험의 보험차익 ○ 퇴직일시금신탁 이익·분배금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	○ <삭 제> ○ <삭 제> ○ 이자 또는 배당 등 그 소득의 성격에 불구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
<input type="checkbox"/> 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 ○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 전환금 계상액은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한도에 가산	<삭 제> ※ 퇴직금전환제도 종료에 따른 조문정리 (단, 부칙에 경과조치)

(2) 개정이유

-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제도는 이미 폐지되어 조문정리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운용수익은 사용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됨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3. 부동산서비스업 등 업종 분류 합리화(소득령 §133 · 143 · 208)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업 및 임대업 ○ 부동산매매업 : (가) 군 ○ 부동산임대업 : (다) 군 ○ 부동산서비스업 및 동산임대업 - (가) 군* 기타 * 외부조정 등 각종 의무 부과시 도·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과 동일한 기준 적용	<input type="checkbox"/> 업종 분류 조정 ] ○ (좌 동) ○ 부동산서비스업 및 동산임대업 - (가) 군 → (다) 군
<input type="checkbox"/> 도매 및 소매업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도매 ○ 상품중개업 (가)군 ○ 소매업(자동차 제외)	<input type="checkbox"/> 업종 분류 조정 ] ○ (좌 동) ○ 상품중개업 - (가) 군 → (나) 군 ○ (좌 동)

#### (2) 개정이유

- 매출액 등 업종 성격을 감안하여 분류기준 적용을 합리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4. 인적용역소득자의 업종구분 명확화(소득령 §37)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업종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input type="checkbox"/> 대상업종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에 따른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

##### (2) 개정이유

-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업종 분류 명확화

\* 저술·강연 등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대가를 받는 용역(「부가법 시행령」 §35)

##### 〈현행 업종별 의무제도 구분 기준〉

업종 구분	성실신고 확인	복식부기	외부조정	소득금액 추계계산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30억원	3억원	6억원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15억원	1.5억원	3억원	3.6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7.5억원	7.5천만원	1.5억원	2.4천만원

5. 부동산 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방법 보완(소득령 §122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 방법 ○ 수입: 주택 또는 토지 매매가액 ○ 비용 - 취득가액 - 양도자산 필요경비 -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추 가>	<input type="checkbox"/> 비용항목 추가 ○ (좌 동)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 개정이유

-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연말정산 선택가능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소득령 §137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말정산 선택 가능 사업소득자 <input type="checkbox"/> 보험모집인 <input type="checkbox"/> 방문판매원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input type="checkbox"/> 대상 확대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font-size: 2em; margin-right: 5px;">}</div> <input type="checkbox"/> (좌 등)         </div> <input type="checkbox"/> 음료품 배달원

(2) 개정이유

- 영세 사업자인 음료품 배달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7.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 요건 명확화(소득법 §162의3)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 (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 30만원 이상 재화·용역 공급시 요청이 없더라도 발급 ○ (제재)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input type="checkbox"/> 의무발급 대상 명확화 ○ (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좌 동) ○ (좌 동)

### (2) 개정이유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실효성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8.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조특령 §121의5②)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현금거래사실 확인* 신청 *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장 등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가능 ○ (신청방법)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input type="checkbox"/> 신청기한 연장 ○ 1개월 → 3년
<input type="checkbox"/> 부가세 신고시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에 누락된 현금거래에 대한 확인 신청 ○ (제1기분) 9.15까지 ○ (제2기분) 3.15까지	<input type="checkbox"/> 신청기한 연장 ○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 (2) 개정이유

- 납세자 권리보호 및 세원투명성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9. 성실사업자 등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2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사업자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 대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②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③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④ 3년평균 수입금액대비 1.0배 초과 등 ○ (적용기한) 2012.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2015.12.31

(2) 개정이유

- 성실납세문화 조성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적용

10.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제도 보완(조특법 §126의6·§144)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제외)</li> </ul> </li> <li>○ (공제율) 확인비용의 60%</li> <li>○ (공제한도) 100만원</li> <li>○ 최저한세 적용 배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대상사업 확대 및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부담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임대업 포함</li> </ul> </li> </ul>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left: 20px;"> <span style="font-size: 2em; margin-right: 5px;">]</sp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손사업자의 세액공제액 이월 공제 허용</li> </ul>

(2) 개정이유

-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적용

11. 소득세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  
(소득령 §143③1단서)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소득상한배율* 적용 ○ (적용대상) 기준경비율 대상자 중 추계신고자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 경비율에 의한 금액의 일정 배율(소득상한배율)을 넘지 않도록 규정 ○(적용기한) '12.12.31까지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15.12.31까지 (3년 연장)

(2) 개정이유

- 추계신고자의 급격한 세부담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12.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근거 마련(소득령 §211)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전자계산서* 발급·보관 ○ 작성 및 발급 가능 * 사업자가 계산서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 등에 전송(발급)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계산서(소득령§211⑦) ○ (제출) 국세청 전송근거 없음 ○ (보관) 전자계산서 보관(5년)	<input type="checkbox"/>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 (좌 동) ○ 국세청에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가능 ○ 보관 의무 면제
<input type="checkbox"/> 전자계산서 발급분 매출·매입 계산서합계표 제출	<input type="checkbox"/> 합계표 제출 의무 면제

### (2) 개정이유

- 전자계산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4.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13.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 명확화  
(소득법 §81, 법인법 §7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input type="checkbox"/>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0.2% <input type="checkbox"/> 사실과 다르게 기재: 2% ※ 백지 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 불분명	<input type="checkbox"/> 기준 명확화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사실과 다르게 기재 또는 기부금액 및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2) 개정이유

- 백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지 등 기부문화 투명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기부금 표본조사 기본계획 제출 조사대상 확대 및 기한 변경  
(소득령 §226②,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부금 표본조사 ○ (대상) 기부금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조사 비율) 표본조사 대상의 0.1% ○ (기본계획 제출일) 매년 3월말	<input type="checkbox"/> 조사대상 확대 및 기한 변경 ○ (좌 동) ○ 0.1% → 0.5% ○ 매년 3월말 → 8월말

(2) 개정이유

- 기부금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합소득과세 표준 확정신고 기한(5.31.)을 감안하여 기본계획 제출일 변경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 15.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법정기부금의 범위 명확화(소득령 §81⑥)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법정기부금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자체 기부금품</li> <li>○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li> <li>○ 이재민 구호금품</li> <li>○ 사회복지시설, 비영리교육재단 국립대학교병원 등 기부금품</li> <li>○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자원봉사 활동분</li> </ul> <p>※ (기부용역의 가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5만원 + 유류비, 재료비 등 실제 발생비용</li> </ul> <p>※ (기부용역의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재해, 재난지역의 자치단체(자원 봉사센터)의 장이 발급한 기부금 확인서 제출</li> </ul>	<p><input type="checkbox"/> 범위 확대</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p>○ (좌 동)</p> </div> <p>○ 선포 후 → 선포 전·후</p>

### (2) 개정이유

-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 자원봉사 활동분에 대해서도 법정기부금  
으로 인정되도록 규정을 명확화

## 16. 임업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개선(소득령 §51⑧)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임목과 임지를 일괄양도하여 각각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계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지) 기준시가</li> <li>○ (임목)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기준시가)을 차감한 잔액</li> </ul>	<input type="checkbox"/> 계산방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지)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기준시가)을 차감한 잔액</li> <li>○ (임목) 기준시가</li> </ul>

### (2) 개정이유

- 납세자의 임목·임지 일괄양도를 통한 양도소득세 세부담 회피 사례를 방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양도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17. 봉사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정(소득법 §164)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 봉사료 등 : 다음연도 2월 말일 ○ 원천징수 사업소득, 근로·퇴직 소득 : 다음연도 3.10.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 말일	<input type="checkbox"/> 제출시기 조정 ○ 봉사료 : 2월 말일 → 3월 10일 ○ (좌 동)

### (2) 개정이유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와 일치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

## 18. 국고보조금 처리 기준 명확화(소득령 §60)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국고보조금으로 자산 취득시 일시상각충당금 계상을 통해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p> <p>○ 기한내에 자산 미취득 또는 폐업시 수입금액 산입</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수입금액 산입 기준 명확화</p> <p>○ (좌 동)</p> <p>○ 국고보조금으로 자산 취득 후 양도 또는 폐업시 수입금액 산입</p>

### (2) 개정이유

- 국고보조금으로 자산 취득 후 처분하거나,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 명확화

19.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등 조정(소득규칙§23, §5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간주임대료* 효율 ○ 4.0% * 부동산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효율을 적용	<input type="checkbox"/> 효율 조정 ○ 4.0 → 3.4%
<input type="checkbox"/>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 ○ 4.0%	<input type="checkbox"/> 이자율 조정 ○ 4.0 → 3.4%

(2) 개정이유

- 간주임대료 효율 및 차입금 이자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 반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차입분부터 적용

## II. 근로소득

### 1.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소득법 §51)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부모 소득공제<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제대상<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 공제대상(20세 이하)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자</li></ul></li><li>○ 공제금액: 연 100만원</li><li>○ 다만,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li></ul></li><li>*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원 소득공제</li></ul>

#### (2) 개정이유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 확대(소득령 §11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월세 지출액 소득공제 ○ (적용요건)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세입자 ○ (공제율) - 월세 지출액의 40%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input type="checkbox"/> 월세 지출액 공제율 인상 ○ (좌 동) ○ (공제율) - 월세지출액: 40%→ 50% ○ (좌 동)

### (2) 개정이유

- 서민·중산층의 부담 완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3.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0의3)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소득공제 대상 교육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li> <li>○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생)</li> <li>○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li> <li>○ 급식비(초·중·고등학생)</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재비 제외</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대상 확대</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font-size: 2em; margin-right: 5px;">}</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li> <li>○ (좌 동)</li> <li>- 교재비* 포함</li> <li>-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및 교재비*</li> </ul> <p>* 학교 등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p>

#### (2) 개정이유

- 교육비 소득공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4.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공제문턱) 총 급여의 25%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 전통시장 사용분 · 직불 · 선불카드: 30%  <추 가>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20%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300만원 ○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100만원 <추 가>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14.12.31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조정 ○ (좌 동)  ○ 대중교통*비 사용분: 30%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버스, 지하철, 철도)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확대 ○ (좌 동)  ○ 대중교통비 사용분: 추가 100만원  <input type="checkbox"/> (좌 동)

##### (2) 개정이유

- 대중교통 이용 유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법 §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input type="checkbox"/> 육아휴직 급여·수당 <input type="checkbox"/> 출산전후휴가 급여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input type="checkbox"/> 비과세대상 확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input type="checkbox"/> (좌 동)                 </div> <input type="checkbox"/>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text{육아휴직 급여액} \times \frac{\text{단축 전 근로시간} - \text{단축 후 근로시간}}{\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2) 개정이유

- 근로자의 출산 및 양육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원양·외항 선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소득령 §16①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일반) 월 100만원 ○ (원양·외항 선원) 월 200만원 ○ (건설 근로자) 월 300만원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한도 인상 ○ (좌 동) ○ 월 200만원→ 월 300만원 ○ (좌 동)

(2) 개정이유

- 장기간 해외 선박근무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국외건설 감리업무 수행자 비과세 범위 명확화(소득령 §16①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일반) 월 100만원 ○ (원양·외항 선원) 월 200만원 ○ (건설 근로자) 월 300만원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대상 명확화 ○ 건설근로자 및 감리업무 수행자 포함

(2) 개정이유

- 해외건설현장 감리업무 수행자도 국외건설근로자에 포함됨을 명확화

## 8.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7①)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요건 -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 총급여 2,000만원 이하 ○ 비과세대상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요건 - (좌 동) - 월정액급여 100→ 150만원 이하 - 총급여 2,000→ 2,500만원 이하 ○ (좌 동)

### (2) 개정이유

-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자 확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9.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조특법 §126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공제문턱) 총 급여의 25%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조정
○ 전통시장 사용분 · 직불 · 선불카드: 30%	○ (좌 동)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20%	○ 현금 영수증: 20%→ 30% 신용카드: 20%→ 15%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14.12.31.	<input type="checkbox"/> (좌 동)

### (2) 개정이유

- 직불형카드 · 현금영수증의 사용 제고를 통한 건전소비 유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10.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조특법 §18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 15% 단일세율 적용 가능 (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규정 적용 배제) ○ (적용기한) '12.12.31	○ 15% → 17% ○ (적용기한) '14.12.31(2년 연장)

(2) 개정이유

-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지원
  - 다만, 국내근로자(최고세율 38%)와 특례대상 외국인근로자 간 과세 형평을 고려하여 특례세율 인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11.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조특법 §132의2)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 공제한도: 2천5백만원 ○ 한도포함 소득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등 출자, 신용카드 * 공제한도 초과분 이월공제 가능 ○ 한도제외 소득공제 :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4대 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 장애인관련비용 등

### (2) 개정이유

-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다만, 2012년까지 지급한 지정기부금, 창투조합등 출자공제분은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음

### Ⅲ. 연금소득

#### 1. 연금소득의 유형 재분류(소득법 §20의3)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금소득의 유형을 지급근거에 따라 열거 ①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②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교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령 ③ 퇴직보험금에 따른 연금 ④ 「조특법」상 연금저축에 따른 연금 ⑤ 「근퇴법」에 따른 연금 ⑥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법률」에 따른 연금 ⑦ 기타 유사한 연금	<input type="checkbox"/> 연금소득의 유형을 지급근거 및 소득원천에 따라 재분류 ①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른 연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②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다음의 소득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연금수령으로 개별 원천소득이 연금소득으로 전환 (1) 퇴직소득 과세이연분 (2) 연금계좌 자기불입분 (소득공제 받은 분에 한함) (3) 연금계좌 발생 운용수익 (4) 그 밖에 연금계좌에 과세이연된 소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②와 유사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 (2) 개정이유

- 연금소득을 지급근거 및 소득원천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규정함으로써 연금소득세 과세체계 정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2. 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 조정 및 확대(소득법 §14③9)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금소득 분리과세 ○ 적용대상 : 공적연금* + 사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 등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한도 : 연간 600만원	<input type="checkbox"/> 분리과세 적용확대 ○ 적용대상 : 사적연금 ○ 한도 : 연간 1,200만원

### (2) 개정이유

- 연금소득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완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3.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차등 적용(소득법 §129①)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 공적연금: 간이세액표 세율 ○ 사적연금 : 5%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율 인하 ○ (좌 동) ○ 사적연금 : 연령 및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연령 및 유형</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적인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종신형 수령 70세 이후 수령</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퇴직소득 수령 80세 이후 수령</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body> </table> * 중복적용시 유리한 세율 적용	연령 및 유형	세율	일반적인 경우	5%	종신형 수령 70세 이후 수령	4%	퇴직소득 수령 80세 이후 수령	3%
연령 및 유형	세율								
일반적인 경우	5%								
종신형 수령 70세 이후 수령	4%								
퇴직소득 수령 80세 이후 수령	3%								

#### (2) 개정이유

- 퇴직금 등을 장기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인하여 고령화에 대비한 납세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4. 연금계좌의 범위(소득령 §40의2①)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사적연금의 유형  ○ 사적연금을 취급하는 개별 근거법에 따라 구분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 연금저축(연금·기타소득)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 퇴직연금(연금·퇴직소득)  ③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 퇴직연금(연금·퇴직소득)  <신 설>	<input type="checkbox"/> 사적연금을 소득세법상 연금계좌(①+②)로 통합  ○ 개별법이 아닌 소득원천별로 소득구분하는 근거 마련 * 사용자부담, 자기부담, 운용소득 등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  ① 연금저축계좌 * 종전 연금저축계좌와 동일  ② 퇴직연금계좌 * 「근퇴법」상 퇴직연금계좌 (DC, IRP → DB는 제외) * 과학기술인 공제회 퇴직연금계좌  <input type="checkbox"/> 연금저축계좌 표시 의무  ○ 연금저축계좌 설정시 “연금저축”이라는 명칭 사용

##### (2) 개정이유

- 사적연금의 유형을 연금계좌로 통합하고, 일반 계좌와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연금저축” 표시의무 부여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가입하는 연금계좌 분부터 적용  
단, 2013.1.1 전에 가입한 퇴직보험,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계좌는 연금계좌로 간주

5. 연금저축계좌의 취급기관 및 계약의 범위(소득령 §40의2①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금저축 취급기관 ① 신탁업자 (신탁에 한함) ② 집합투자업자 ③ 투자회사 ④ 보험회사 ⑤ 체신관서 (우체국보험) ⑥ 수협조합·중앙회, 신탁중앙회, 새마을금고 연합회(생명공제)	<input type="checkbox"/> 연금저축계좌 취급기관 및 계약 ① 신탁업자 : 신탁계약 ②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③ 보험회사등* : 보험계약** * 보험회사, 체신관서, 수협, 신탁, 새마을금고 ** 보험계약, 우체국보험계약, 공제계약 등

(2) 개정이유

-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의 취급기관을 소득세법 시행령 금융소득 분류체계에 맞춰 재조정 하고,
  - 연금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연금지급 등 연금계좌에 대한 관리가 곤란하므로, 연금관리가 가능한 투자중개업자를 연금계좌 취급기관으로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가입하는 연금계좌부터 적용

## 6. 연금계좌 가입 및 연금보험료 납입요건 완화(소득령 §40의2②)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금상품 가입대상 ○ (연금저축) 만 18세 이상 ○ (퇴직연금) 연령제한 없음  <input type="checkbox"/> 연금보험료 납입요건 [연금저축] : (①+②) [퇴직연금] : 세법상 요건 없음  ① 최소 납입기간 : 10년   ② 납입한도(계좌 합계)  - 연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신 설>	<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연금저축 + 퇴직연금) 가입대상 ○ 연령제한 삭제  <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 연금보험료* 납입요건 (①+②+③) * 가입자가 직접 납입하는 자기부담금  ① 최소 납입기간* : 5년 - 연금계좌가입일부터 연금수령 개시일까지 - 퇴직금이 있는 연금계좌의 경우 적용 배제  ② 납입한도(계좌 합계)  - 연 1,800만원(분기한도 폐지) * (좌 동)  ③ 추가납입 불가 - 연금수령개시 후 해당 연금계좌에 대한 추가납입 불가

### (2) 개정이유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연금보험료 납입규정을 통합하되, 납입요건을 완화하여 연금재원 확충을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7. 연금수령요건 개선(소득령 §40의2③, §187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금상품 연금수령요건 [연금저축] : (①+②+③) [퇴직연금] : 세법상 요건 없음  ① 최소 납입기간(10년) 경과 후 인출  ② 55세 이후 인출  ③ 5년 이상에 걸쳐 인출 <신 설>	<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 연금수령요건 개선  [일반 연금수령요건] : (①+②+③)  ① 최소 납입기간(5년) 경과* 후 인출 * 퇴직소득이 있는 계좌의 경우 미적용  ② 55세 이후 연금개시신청* 후 인출 * 연금수령하려는 자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개시신청서 제출 * 연금계좌취급자는 국세청에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내역 제출  ③ 연간 연금수령한도(신설) 내 인출  [종신 연금수령요건] : (①+②+③+④)  ①~③ 일반 요건 ①~③과 동일  ④ 사망일까지 수령하며, 수령기간 중 해지 불가

### (2) 개정이유

- 연금을 장기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노후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연금수령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 8. 연금수령한도 신설(소득령 §40의2③~⑤)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연금수령 한도 <div style="background-color: #e0f7fa; padding: 5px; margin: 5px 0;"> <math display="block">\text{연금수령한도}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 \text{ 현재 연금계좌 평가총액}}{(11 - \text{연금수령연차}^{**})} \times 120\%</math> </div> <p>* 연금수령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연금수령개시일                      ** 연금수령연차 11년 이상이면 한도 미적용</p>
<신 설>	<input type="checkbox"/> 연금수령 기산 연차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제1년차</li> <li>○ (예외) 다음의 경우 예외 기산연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 3. 1 전 가입분* : 제6년차</li> </ul> </li> <li>* '13.3.1 전 DB가입자의 퇴직금이 이체되는 경우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계한 연금계좌의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시 연금수령연차</li> </ul> </li> </ul>
<신 설>	<input type="checkbox"/>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시 소득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도 내 금액 : 연금소득</li> <li>○ 한도초과금액 : 퇴직·기타소득</li> </ul>

### (2) 개정이유

- 연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균등 수령할 수 있도록 유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 9. 연금계좌의 인출 순서 신설(소득령 §40의3)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과세대상 연금소득 산정</p> <p>○ 연금수령시 연금개시일의 과세비율로 과세대상 연금소득 산정</p> <div style="background-color: #e0f7fa; padding: 5px; margin: 5px 0;"> <math display="block">\text{연금수령액} \times \frac{\text{연금수령개시일 현재 과세대상금액}^*}{\text{연금수령개시일 현재 연금자원 총평가액}}</math> </div> <p>* 과세이연된 퇴직금, 자기불입금 중 소득공제 받은금액, 운용수익</p> <p><input type="checkbox"/> 과세대상 연금외소득 산정</p> <p>○ 해지 및 연금외수령시 수령일 현재 과세비율로 산정</p> <div style="background-color: #e0f7fa; padding: 5px; margin: 5px 0;"> <math display="block">\text{연금외수령액} \times \frac{\text{수령일 현재 과세대상금액}}{\text{수령일 현재 연금자원 총평가액}}</math> </div> <p>○ 연금외소득은 계좌유형에 따라 소득 구분</p> <p>① 퇴직연금계좌 → 퇴직소득</p> <p>② 연금저축계좌 → 기타소득*</p> <p>* 단, 사망으로 인한 일시금은 연금소득</p>	<p><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의 소득원천에 따른 인출 순서* (①→②→③ 순)</p> <p>* 연금수령·연금외수령 모두 해당</p> <p>① 과세 제외금액 (소득공제 받지 못한 금액)</p> <p>② 이연퇴직소득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하는 퇴직소득 포함)</p> <p>③ 그 밖의 소득금액 (소득공제액 + 운용소득)</p> <p><input type="checkbox"/> 인출금액은 수령방법에 따라 소득구분</p> <p>○ 연금수령 ⇒ 연금소득</p> <p>○ 연금외수령 ⇒ 퇴직·기타소득</p> <p><input type="checkbox"/> 인출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인출 순서</p> <p>○ 연금수령분→연금외수령분 순으로 인출</p>

### (2) 개정이유

-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 인출시 소득원천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출 순서를 규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 10. 연금계좌간 이체요건 보완(소득령 §40의4)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연금저축 계좌 이체 (구 조특법§86의2⑧)</p> <p>○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시 ⇒ 해지로 보지 않음</p> <p><input type="checkbox"/> 퇴직연금간 계좌 이체 (구 소득령§42의2⑤)</p> <p>○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로 이체를 통해 전부 이전시 * IRP, DC형 퇴직연금 계좌 ⇒ 퇴직소득의 발생(인출)으로 보지 않음</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간 이체</p> <p>○ 연금수령개시 전의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인출로 보지 않음</p> <p>○ 다만, 다음의 이체는 적용 제외</p> <p>① 신계좌*의 구계좌 이체 * '13. 3. 1 이후 가입 계좌</p> <p>②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간 상호 이체</p> <p>③ 퇴직연금계좌의 일부 이체</p> <p><input type="checkbox"/> 일부 금액 이체시 이체순서</p> <p>○ 연금계좌 인출순서 준용 (①→②→③ 순)</p> <p>* ① 과세제외금액 ② 이연퇴직소득 ③ 그 밖의 소득</p> <p><input type="checkbox"/> 이체시 연금계좌 가입일 등 연금계좌 적용 기준</p> <p>○ [원칙] 이체받은 연금계좌</p> <p>○ [예외] 종전(이체하는) 연금계좌*</p> <p>* (요건) 신규 계좌로 전액 이체</p> <p><input type="checkbox"/> (절차) 이체하는 연금계좌취급자는</p> <p>○ 이체와 함께 연금계좌이체확인서를 이체받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p>

### (2) 개정이유

- 연금가입자에 대해 연금상품을 변경할 기회 제공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이체하는 연금계좌 분부터 적용

## 11.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범위 등

### 11-1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요건(소득법 §21①21)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금상품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  ① (퇴직연금)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음  ② (연금저축) - 납입기간 만료 전 해지로 받는 일시금 소득  - 납입기간 만료 후 연금외 형태로 인출하는 소득	<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요건(①+②)  ① 연금수령으로 인출되는 금액이 아닐 것 → “연금외수령”일 것  ② 사용자부담금이 아닐 것 → 자기부담금 또는 운용소득  ※ 사용자부담금의 연금외수령은 퇴직소득에 해당

#### (2) 개정이유

- 연금상품의 유형에 관계없이 자기부담금 또는 운용소득을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2013. 1. 1 전에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단, 2012.7.26 이후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에 납입한 자기부담금 제외)과 그에 대한 운용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구분

## 11-2 기타소득의 과세방법(소득법 §14③7 나목, §129①6)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연금상품 연금외인출*시 과세방법 * 해지에 따른 인출 포함</p> <p>① 퇴직연금: 퇴직소득</p> <p>② 연금저축 : 기타소득* 또는 연금소득**</p> <p>* 20% 세율로 원천징수하되,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p> <p>* 사망으로 인출되는 경우에 한하며, 5% 세율로 원천징수하되, 6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p>	<p><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 연금외수령**시 과세방법 * 퇴직연금 + 연금저축 ** 해지도 연금외수령의 한 유형</p> <p>○ 인출 사유 및 소득원천에 따라 다르게 취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e0ffff;">소득원천</th> <th style="background-color: #e0ffff;">소득 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e0ffff;">일반 연금외 수령</th> <th style="background-color: #e0ffff;">부득이한 연금외 수령</th> </tr> </thead> <tbody> <tr> <td>(이연) 퇴직소득</td> <td>퇴직</td> <td>기본 세율</td> <td>기본 세율</td> </tr> <tr> <td>자기 부담금</td> <td>기타</td> <td>20%</td> <td>15%</td> </tr> <tr> <td>운용수익</td> <td>기타</td> <td>20%</td> <td>15%</td> </tr> <tr> <td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e0ffff;">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시 과세방법</td> <td>종합 과세</td> <td>분리 과세</td> </tr> </tbody> </table>	소득원천	소득 구분	일반 연금외 수령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이연) 퇴직소득	퇴직	기본 세율	기본 세율	자기 부담금	기타	20%	15%	운용수익	기타	20%	15%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시 과세방법		종합 과세	분리 과세
소득원천	소득 구분	일반 연금외 수령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이연) 퇴직소득	퇴직	기본 세율	기본 세율																		
자기 부담금	기타	20%	15%																		
운용수익	기타	20%	15%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시 과세방법		종합 과세	분리 과세																		

### (2) 개정이유

-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3.1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 분부터
- ※ (경과조치) 2013.1.1 전 가입한 연금저축계좌가 가입자의 사망으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 11-3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소득령§20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 기타소득으로 과세(20%)하나 사망으로 해지시 연금소득 과세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③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④ 연금취급자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⑤ 퇴직, 해외이주, 폐업 <신 설>	<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를 연금외수령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조정 * 기타소득으로 과세(20%)하나, 부득이한 경우는 15% 분리과세  ① ~ ④ (좌 동)  ⑤ 해외이주 ⑥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
<input type="checkbox"/> (절차)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시행규칙 서식으로 규정	<input type="checkbox"/> (절차) 해당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 관련 확인서류를 구비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

#### (2) 개정이유

- 연금계좌 해지시 15% 저율 분리과세(기타소득)되는 부득이한 사유의 요건을 조정하여 연금재원을 확충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연금외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 12. 연금계좌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12-1 배우자 상속시 과세특례 신설(소득법§44②, §74①)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p><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의 배우자 상속시 과세특례</p> <p>※ 연금계좌 상속시 과세문제 (①+②)</p> <p>① 소득세 정산 : 연금계좌 잔액 일시 인출</p> <p>② 상속세 과세 : 소득세 정산 후 재산가액을 상속</p> <p>○ 피상속인의 연금수령 지위를 상속인인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에 따른 소득세 정산 없이 연금소득세 납세의무 이행</p> <p>- 다만, 배우자(상속인)가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 가능</p>

#### (2) 개정이유

- 배우자 사망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상속인의 연금수령을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상속되는 연금계좌분부터 적용

12-2 승계 범위 및 절차(소득령 §100의2①·②, §40의2④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상속인(배우자)의 연금계좌 승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계한 날에 상속인이 연금계좌에 새로이 가입*한 것으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연금개시 및 원천세율 ⇒ 상속인 기준(연령) 적용</li> <li>② 피상속인이 연금개시한 상태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연금개시를 신청하지 않으면 추가납입 가능</li> </ul> </li> <li>○ 단, 다음 사항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 납입요건(5년)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li> <li>- 연금수령연차 산정을 위한 기산연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상속인의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를 상속인의 기산연차로 함</li> </ul> </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절차) 연금계좌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승계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계신청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피상속인의 연금계좌를 승계</li> </ul>

(2) 개정이유

- 연금계좌 승계의 요건, 승계범위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상속되는 연금계좌분부터 적용

12-3 연금계좌가입자 사망시 세액정산 방법 및 절차 신설  
(소득령 §100의2③·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p>□ 연금계좌 가입자 사망시 세액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계좌의 승계신청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산대상)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 소득</li> </ul> </li> </ul> <div style="background-color: #e1f5fe;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상속인 기준 적용 세액                      피상속인 기준으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계좌의 승계신청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산대상) : [① + ②]</li> </ul> </li> </ul> <p>①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소득</p> <p>* 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사망일부터 6개월) 이전인 경우 : 승계신청기한의 말일 또는 상속인의 연금외수령일</p> <p>② 사망확인일 현재 연금계좌에 남아있는 소득</p> <div style="background-color: #e1f5fe;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사망확인일 현재 연금외수령 가정시 세액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p> </div>

(2) 개정이유

- 연금계좌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과 승계신청일 또는 사망 확인일까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정산하도록 하여 원천징수 의무자들의 납세편의를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상속되는 연금계좌분부터 적용

### 13.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의 범위 명확화(소득법 §51의3)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소득공제되는 연금보험료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자가 납입하는 금액 ⇒ 자기부담금</li> <li>○ 사용자가 납입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 아님</li> </ul> <p>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납입하는 자기부담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도) 세법상 한도 없음</li> <li>* 단, 국민연금법 등 관련법에 납입 비율이 있어 한도의 역할을 함</li> </ul> <p>② (퇴직연금 +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자기부담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도) 연 400만원(인별적용)</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소득공제되는 연금보험료의 범위</p> <p style="text-align: center;">&lt;좌 동&gt;</p> <p>① &lt;좌 동&gt;</p> <p>②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자기부담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도) &lt;좌 동&gt;</li> <li>-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자기부담금의 범위</li> </ul> <p>(1)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을 과세 이연하기 위해 입금하는 경우</p> <p>(2) 연금계좌간 이체를 위해 납입하는 경우</p>

#### (2) 개정이유

- 소득공제 대상 자기부담금의 범위를 명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14. 공적연금 과세체계 정비

### 14-1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확대(소득법 §143의4)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공적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대상  ○ (시기) 다음연도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 또는 환급  ○ 단, 600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 없이 연말정산한 것으로 간주	<input type="checkbox"/> 공적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대상 확대  ○ (좌 동)  ○ (삭 제)

#### (2) 개정이유

- 공적연금이 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액에 관계없이 연말정산하도록 함
- \* 근로소득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연말정산하고 있음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4-2 공적연금법에 따른 연금 및 일시금의 계산  
(소득령 §40, §42의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연금소득 계산]</p> <p><input type="checkbox"/> 공적연금소득의 계산</p> <p>○ '02.1.1(과세기준일) 이후 적립금에 대해서만 과세</p> <div style="background-color: #e0f7fa; padding: 5px; margin: 5px 0;"> <math display="block">\text{연금 수령액} \times \frac{\text{과세기준일 이후 기간}}{\text{전체기간 금액}}</math> </div> <p>- 단, 공적연금 유형에 따라 비율산정 방법 상이</p> <p>* 국민연금법 : 환산소득 * 공무원연금법 등 : 납입월수</p> <p><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의 경우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보험료 중 미소득공제액이 있는 경우</p> <p>○ 소득공제비율*을 추가로 곱하여 계산</p> <div style="background-color: #e0f7fa; padding: 5px; margin: 5px 0;"> <math display="block">1 - \frac{\text{소득공제 받지 않은 기여금 등 누계액}}{\text{과세기준일 이후의 연금보험료 누계액}}</math> </div> <p><input type="checkbox"/> 직역연금 일시금 반납분*에 대한 처리</p> <p>* 퇴직소득세 기과세분</p> <p>① 일시금 반납후 연금수령시 해당 재직기간분 과세 제외</p> <p>② 직역연금에 재가입하는 경우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연금소득 계산</p>	<p style="text-align: center;">&lt;좌 동&gt;</p> <p><input type="checkbox"/> 공적연금의 경우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보험료 중 미소득공제액이 있는 경우</p> <p>○ 미소득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차감</p> <p>* 미소득공제액이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연금소득에서 차감</p> <p>① · ②를 통합</p> <p>- 반납 일시금을 미소득공제액으로 보아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차감</p>

<p>[퇴직소득 계산]</p> <p><input type="checkbox"/> 공적연금 일시금의 계산</p> <p>① (원칙) 과세기준일 이후 연금보험료*와 (가산)이자**의 합계  * 사용자부담분 + 자기부담분  ** 연금보험료에 가산되는 금액</p> <p>② 반환일시금 한도*를 적용받는 경우  * 유족연금을 받던 자가 일시금을 받는 경우</p> <p><b>한도 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월수 비율</b></p> <p><input type="checkbox"/> 공적연금소득 계산시 소득공제 받지 못한 금액, 일시금반납에 따른 과세제외 등 규정  ⇒ 일시금 계산시 준용</p>	<p><input type="checkbox"/> 과세대상 공적연금 일시금 : Min(①, ②)</p> <p>① (좌 동)</p> <p>② <b>한도 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전 납입 연금보험료</b></p> <p>&lt;좌 동&gt;</p>
--	--

(2) 개정이유

- 과세기준일 이후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하되, 납입 보험료 중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과 기과세분을 반납하고 수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연 금) 2013.2.15 이후 개시되는 연금부터 적용  
(일시금) 2013.2.15 이후 발생하는 일시금부터 적용

## 15. 연금소득 등 수입시기 조정(소득령 §45, §50)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 : 중도해약일, 연금외수령일 * (구) 조특법 제86조	<삭 제> ※ 개인연금저축 일몰종료에 따른 조문정리(기계약분 경과조치)
<input type="checkbox"/> 연금저축 해지 및 연금외수령 : 지급받은 날	<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기타소득 : 연금외수령일
<input type="checkbox"/>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원칙) 퇴직한 날 ○ 잉여금처분에 따른 지급 : 잉여금처분 결의일	<input type="checkbox"/>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좌 동) ○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직공제금 : 지급받은 날
○ 퇴직소득 과세이연계좌 인출 등 : 지급받은 날	<삭 제>
<input type="checkbox"/>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	<input type="checkbox"/>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① 공적연금소득 : 지급받기로 한 날 ② 연금계좌분 : 연금수령일 ③ 그 밖의 연금소득 : 지급받은 날

### (2) 개정이유

-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를 연금유형에 따라 구분 적용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소득 분부터 적용

## 16. 연금계좌 과세제외금액의 확인절차 등

### 16-1 과세제외금액의 범위(소득령 §40의3②)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에 있는 과세제외금액의 범위 및 인출 순서(①→②→③ 순)</p> <p>① 인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p> <p>②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p> <p>③ ①·②외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서 소득공제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금액</p>
<p>&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과세제외금액의 확인</p> <p>○ 당연제외금액(위 ①·②) : 인출자의 입증 필요 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p> <p>○ 확인제외금액(위 ③) : 인출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p> <p>* 입증방법 및 절차 : 소득령 §201의10 참조</p> <p>- 확인제외금액은 확인된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간주 (경정하지 않음)</p>

#### (2) 개정이유

- 소득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를 명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 16-2 과세제외금액의 확인(소득령 §201의10)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소득공제 자료의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연금 수령자</li> <li>- 기타소득 수령자</li> <li>* 연금저축 및 소상공인 해지</li> <li>- 퇴직소득 수령자</li> <li>* 퇴직이연계좌 중도인출 등</li> </ul> </li> <li>○ 자료제공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음</li> <li>○ 원천징수의무자도 국세청장에게 자료 제공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소득자 동의 필요</li> </ul> </li> </ul>	<p>□ 과세제외금액 확인절차 및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다음 중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하려는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적연금 및 일시금 수령자</li> <li>②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li> <li>③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해지하려는 사람(기타소득)</li> </ol> </li> <li>○ 연금보험료등 소득공제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발급받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계좌취급자는 다음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li> </ul> </li> </ul> <div style="background-color: #e0f7fa;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 5px 0;"> <b>납입액 합계* - 소득공제액</b>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 제외</li> <li>○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확인서를 추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 ⇒ Min(①, ②)</li> <li>① [해당 연금계좌 + 다른 연금계좌] 납입합계액 - 소득공제액</li> <li>② 해당 연금계좌 납입액</li> </ul> </li> </ul> <p>※ 확인한 과세제외금액은 연금계좌납입명세서에 기재되어 국세청에 통보</p>

### (2) 개정이유

-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규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과세제외금액을 확인받으려는 분부터 적용

## 17. 연금저축 해지가산세 폐지(조특법 §86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금저축 해지가산세 ○ 연금저축 계약일부터 5년 이내 해지시 - 해약금*에 대해 기타소득 과세(20%) * 자기불입금 + 운용수익 - 해약금 중 자기불입금의 누계액*에 대하여 2% 해지가산세 부과 * 1년당 400만원 한도	<폐 지>

### (2) 개정이유

- 연금계좌 해지시 발생하는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여 연금계좌의 신규 가입을 유도
- \* 해지시 해지가산세 외에도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과세(20%)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3.1 이후 「소득세법」에 따라 가입하는 연금저축계좌 분부터 적용

18.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령 §108의3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이자비용 소득공제  ○ 적용요건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부부기준 1주택 소유자에 한함)  <추 가>  -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 공제대상 소득 - 연금소득  ○ 공제한도 : 연 200만원	<input type="checkbox"/> 대상 확대  ○ 적용요건 확대 - (좌 동)  - 민간은행 역모기지 (주택 요건 없음)  - (좌 동)  ○ (좌 동)

(2) 개정이유

- 민간은행의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이용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

## IV. 퇴직소득

### 1.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소득법 §55)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 (①→②→③) 순서로 계산  <신 설>  ① (연분) 과세표준*/근속연수 * 퇴직소득 - (정률공제+근속공제)  ② ① × 기본세율(6~38%)  ③ (연승) ② × 근속연수	<input type="checkbox"/> 연분연승 적용비율 조정 ○ (현행과 같음) ○ 퇴직소득 과표구간 적용시 과표를 5배수로 환산 적용  ① (과세표준×5)/근속연수  ② ① × 기본세율(6~38%)  ③ (②/5) × 근속연수

#### (2) 개정이유

- 연분연승 적용비율을 5년 기준으로 조정하여 누진과세 정상화 및 과세형평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근로에 대한 퇴직소득분\*부터 적용  
 \* 퇴직소득 × ('13.1.1 이후 근속연수 / 전체 근속연수)

※ '13.1.1 이후 근속연수 계산방법 : (① - ②)

- ① 전체 근속연수
- ② '13.1.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근속연수

## 2. 퇴직소득 과세이연 방식 개선(소득법 §146)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퇴직금의 과세이연계좌 이체시 과세이연 ○ 이체된 퇴직소득은 이연계좌 인출시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소득의 이연)	<input type="checkbox"/> 과세이연 방식 변경 : 소득의 이연 → 세액의 이연 ○ 퇴직시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후 세액을 과세이연* * 추후 연금계좌에서 인출시까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유예
<input type="checkbox"/> 과세이연 적용요건 (① + ②) ① 퇴직금의 80% 이상을 이체 ② 퇴직한 날부터 60일내 이체	<input type="checkbox"/> 적용요건 완화 및 조정 (① 또는 ②) ① 퇴직금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 - 80% 이체 요건 폐지 : 일부 이체도 가능 ②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내 연금계좌로 납입

### (2) 개정이유

- 퇴직소득 과세이연시 퇴직일과 퇴직소득 귀속시기를 일치시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 과세이연 요건을 완화하여 퇴직금의 연금재원 활용을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3. 이연퇴직소득세의 계산 및 원천징수(소득령 §202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이연퇴직소득세액의 계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지급·입금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이연퇴직소득세)</li> </ul> <div style="background-color: #e0ffff; padding: 5px; margin: 10px 0;"> <math display="block">\text{이연퇴직 소득세} = \text{퇴직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연금계좌로 지급·이체된 금액}}{\text{퇴직소득금액}^*}</math> </div> <p>* 이미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환급의 방법으로 이연할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p> <p><input type="checkbox"/> 이연퇴직소득세 원천징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 원천징수</li> </ul> <div style="background-color: #e0ffff; padding: 5px; margin: 10px 0;"> <math display="block">\text{원천징수할 이연퇴직소득세} = \text{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times \frac{\text{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text{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math> </div> <p>*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 ① - ②</p> <p>① 연금외수령 전까지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p> <p>② 연금외수령 전까지 인출한 퇴직소득의 누계액에 대한 세액</p> <div style="background-color: #e0ffff; padding: 5px; margin: 10px 0;"> <math display="block">\frac{\text{인출퇴직소득 누계액에 대한 세액}}{\text{인출퇴직소득 누계액}} = \frac{\text{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text{이연퇴직소득 누계액}} \times \frac{\text{인출퇴직소득 누계액}}{\text{이연퇴직소득 누계액}}</math>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연퇴직소득을 지급자는 해당 내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li> </ul>

#### (2) 개정이유

- 이연된 퇴직소득이 추후 연금외수령될 때 적절하게 원천징수 되도록 규정 정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퇴직하여 발생한 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 4. 퇴직소득세 환급절차 개선(소득령 §202의3)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퇴직자에 대한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금 입금 내역 및 연금계좌 등 기재</li> </ul> </li> <li>- 원천징수의무자 폐업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li> </ul>	(좌 동)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받은 환급액은 납부할 원천징수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li> <li>○ 환급액이 환급월의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① or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다음 달 이후 납부세액에서 조정 환급</li> <li>② 관할세무서장에 직접 환급신청</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소득을 이연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에 즉시 통보</li> </ul>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급방식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급액을 연금계좌 이체 방식으로 환급</li> </ul> </li> <li>* 환급세액은 이연퇴직 소득에 포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 (2) 개정이유

-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연금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환급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퇴직소득 분부터 적용

5.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시 세액계산특례 신설  
(소득법 §148, 소득령 §20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구분 계산			<input type="checkbox"/> 퇴직금 중간정산자 등에 대한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 퇴직소득세액 = ① - ②
<b>구분</b>	<b>법정 퇴직금</b>	<b>명예 퇴직금</b>	① 전체 퇴직금* 산출세액
근속연수	잔여기간*	전체기간	* (최종퇴직금 + 기지급퇴직금)
장기공제	전체기간 공제액	중간정산분 공제액	** 전체 근속연수로 연분연승법 등 적용
연분	잔여기간	전체기간	② 기지급퇴직금의 산출세액
산출세액	연분금액 합산 후 산출		* 기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연승	산출세액을 퇴직소득비율로 구분한 후 각각 연승		
* 잔여기간 : 전체기간 - 중간정산기간			

(2) 개정이유

-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는 절차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퇴직소득 분부터 적용



## 7. 퇴직소득 일부 수령시 세액계산 특례 폐지(소득령 §115)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퇴직소득세 정산시 근속연수 : (① + ②) - ③  ①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②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③ ①과 ②에서 중복되는 기간	<삭 제>  ※ 제203조제2항 퇴직소득세액정산 규정으로 이동
<input type="checkbox"/> 일부 수령시 세액계산  <div style="background-color: #e0f7fa;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수령가능 퇴직소득 산출세액           </div> $\times \frac{\text{실제 수령한 퇴직소득}}{\text{수령가능한 퇴직소득}}$	<삭 제>  ※ 세액정산 도입으로 불필요
<input type="checkbox"/> 적용 사유  ① 일시금과 연금의 분할 지급 ② 연금지급 중 일시금 지급 ③ 과세이연계좌에 이체되지 않은 일부 부분이 있는 경우	<삭 제>  ※ 이연방식 변경으로 불필요

### (2) 개정이유

- 퇴직소득 정산방식 도입\*으로 일부 수령시 환산규정 삭제

\* 일부 수령시 해당 소득으로만 세액계산후 추후 잔여 소득 수령시 정산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퇴직소득부터 적용

※ (경과조치) 2013.1.1 전 과세이연(소득이연) 퇴직소득은 종전 규정 적용

## 8. 퇴직판정의 특례 조정(소득령 §43)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함</li> <li>※ 단, 출자법인간 진출은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li> </ul> ①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② 조직변경 또는 사업양도가 있는 경우 ③ 임원이 상근임원이 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퇴직의 범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별로 [1]과 [2]로 구분</li> <li>⇒ [2]를 “퇴직소득중간지급”으로 약칭</li> </ul> [1] 퇴직이지만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 퇴직금을 받지 않을 것</li> </ul> ① (좌 동) ② 법인의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출자법인으로 진출이 있는 경우 ③ (좌 동)
④ 종업원의 중간정산 ⑤ 임원의 연봉제 전환 ⑥ 임원이 무주택자 주택구입 ⑦ 임원의 3개월 이상 질병치료·요양 ⑧ 천재·지변 등 재해	[2] 퇴직이 아니지만 퇴직으로 보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 퇴직금을 받을 것</li> </ul> ① 근퇴법상 중간정산 사유(임원 포함) *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5년내 파산, 임금 피크제, 천재 지변 등 ② 퇴직금 없이 연봉제 전환 ③ 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폐지

### (2) 개정이유

- 퇴직이지만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와 퇴직이 아니지만 퇴직으로 보는 경우(간주퇴직)를 구분하되,
  - 간주퇴직을 “퇴직소득중간지급” 사유로 규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발생하는 퇴직소득부터 적용

## 9. 근속연수의 계산 명확화(소득령 §105)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공적연금 재가입으로 일시금 반납시* 근속연수 계산 * 퇴직소득세 기과세분 <input type="checkbox"/> 근속연수 기산일을 재가입일로 산정 <input type="checkbox"/> 과세이연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 (① + ②) ① 과세이연되기 전 근속연수 ② ①외 발생 퇴직소득 근속연수 <신 설>	<input type="checkbox"/> 근속연수의 정의 ○ (기산일) ① 또는 ② ① 근로제공을 시작한 날 ②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 * 중간지급 신청하여 실제 퇴직소득을 받은 날 ○ (종료일) 현실적 퇴직일 ⇒ 단, 퇴직급여 산정시 근로기간으로 보지 않은 기간 제외 (좌 동)  <삭 제> ※ 이연방식이 세액이연으로 변경되어 필요 없음 <input type="checkbox"/> 퇴직공제금의 근속연수 ○ (공제부금 총납부월수/12) * 1년 미만은 1년으로 간주

### (2) 개정이유

- 퇴직소득중간지급 등에 적용하는 근속연수 기간을 명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퇴직소득부터 적용  
 단, 퇴직공제금은 2013.2.15 이후 발생 퇴직소득부터 적용

## 10.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 특례(소득령 §42)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연금외수령 판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연금수령* 외의 인출 ⇒ 연금외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 :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내 인출</li> </ul> </li> <li>○ (예외)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출액 중 과세대상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판정</li> <li>* 연금소득 분리과세 최대 금액</li> </ul> </li> </ul> <div style="background-color: #e0f7fa; padding: 5px; margin-top: 10px; text-align: center;"> <b>Min(①이연퇴직소득, ②1,200만원 초과금액)</b> </div>
<신 설>	<input type="checkbox"/> 연금외수령 판정 특례가 적용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및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액정산) = [① - ②]</li> <li>① 연금외수령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액</li> <li>② 연금외수령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기원천징수세액</li> <li>○ (신고절차) 수령자가 퇴직소득확정신고를 준용하여 신고</li> </ul>

### (2) 개정이유

- 연금계좌에 이체·입금된 퇴직소득은 인출방법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11. 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 관계 명확화  
(소득령 §184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 대리·위임</p> <p>① 주식·집합투자증권 인수·매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 : 해당 법인과 금융회사간</p> <p>② 신탁계약의 경우 : 신탁업자와 신탁소득 지급자간</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p style="text-align: center;">※ ①·② 법률로 이관</p> <p><input type="checkbox"/>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 관계 명확화</p> <p>① 공적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연금공단 및 연금관리단</p> <p>② 연금계좌취급자(DB 제외)</p> <p><input type="checkbox"/> 퇴직소득세액정산 규정 준용</p> <p>○ 사용자와 위임자가 각각 퇴직 소득 지급하는 경우 정산*</p> <p>* 같은 과세기간에 2회 이상 퇴직 소득 발생의 경우 준용</p>

(2) 개정이유

- 퇴직소득 지급의무자(사용자)와 실제 지급자(연금사업자)가 상이하므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관계를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12.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 사유 추가(소득령 §147①)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보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되는 지급명세서 기재사항 *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하여 확인이 어려울 때 ○ 주소, 성명, 납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등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input type="checkbox"/> 가산세 부과대상 지급명세서 기재사항 추가  ○ (좌 동)  ○ 이연퇴직소득세

### (2) 개정이유

- 퇴직소득 과세이연 방식이 소득이연에서 세액이연으로 전환됨에 따라 연금사업자에게 정확한 과세자료가 전달되도록 지원
- \*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액계산이 잘못되더라도 연금사업자에게 이체하는 과정에서 교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13. 근로·퇴직소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법§1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근로·퇴직소득이 비과세되는 사용자 부담금의 유형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input type="checkbox"/> 「노인장기요양보험법」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대상 정비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삭 제> <input type="checkbox"/> (좌 동)

#### (2) 개정이유

- 연금 성격의 사용자부담분은 납입(적립) 당시 근로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제외
  - 연금의 사용자부담분은 추후 인출시 과세(퇴직·연금)되므로, 비과세된 소득을 다시 과세하는 불합리 개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납입·적립하는 분부터 적용

## 14. 퇴직소득의 소득구분 명확화(소득법 §2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퇴직소득 범위 ○ 법령에 열거하고 있으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구분이 불분명 * 예) 퇴직공로금·위로금 :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시 퇴직소득이나, 이외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 * 일반근로자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퇴직소득 결정	<input type="checkbox"/> 퇴직소득의 범위 개선 ○ 근로대가로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근로대가의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
<input type="checkbox"/> 퇴직소득 한도 ○ 적용대상 : 임원 ○ 적용한도 <div style="background-color: #e0f7fa; padding: 5px; margin: 5px 0;"> <math display="block">\text{퇴직전 3년 연평균 급여} \times \frac{1}{10} \times \text{근속 연수} \times 3</math> </div> * 한도초과분은 근로소득 간주	<좌 동>    <좌 동>

### (2) 개정이유

- 급여지급 규정 유무에 따른 과세불형평(근로소득·퇴직소득) 문제 개선
- \* 다만,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퇴직시 지급하더라도 근로소득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5. 근로·퇴직소득 범위 조정(소득령 §38①·②, §4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가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에 납입하는 보험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다음은 경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보험·퇴직신탁의 보험료 등</li> <li>·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공제부금</li> </ul> </li> </ul> </li> <li>○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위로금·공로금</li> <li>○ 퇴직보험·신탁 등 해지시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신 설&gt;</li> <li>&lt;신 설&gt;</li> </ul> </li> </ul>	(좌 동)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적립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순금불산입액)
<input type="checkbox"/> 퇴직소득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 지급하는 과학기술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신 설&gt;</li> </ul> </li> </ul>	(좌 동)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공제금

## (2) 개정이유

- 사용자의 퇴직금 등 적립은 적립단계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명확화
-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퇴직공로금·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삭제
-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되어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소법§20①3)하므로 이를 명확화
-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 제도는 이미 폐지되었고, 종업원에게 환급될 때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삭제
- 퇴직공제금은 사용자 적립단계에서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령단계에서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소득 분부터 적용  
(단, 퇴직공제금은 2013.2.15 이후 발생 소득 분부터 )

## 16.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범위 조정(소득법 §155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특정금전신탁의 과세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을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로 처리</li> </ul>	<좌 동>
<input type="checkbox"/> 특정금전신탁 소득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7① 각 호의 소득</li> <li>*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소득 등</li> </ul>	<input type="checkbox"/> 소득의 범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한정</li> </ul>

### (2) 개정이유

- 특정금전신탁으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범위는 이자 및 배당 소득으로 한정되므로 관련 조문정리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7. 금전 외의 대가로 지급시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령 §38②, §5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소득세법상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 금액의 계산 * 종합소득 + 퇴직소득 ○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 총수입금액을 금전 외로 수입하는 경우 평가방법 - 판매가액, 시가, 주식액면가액 등 (소득령§51⑤)에 따른 평가방법	(좌 동)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을 금전 외로 수입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규정 준용 (§38②)	<삭 제>

(2) 개정이유

- 총수입금액에는 근로소득도 포함되므로 근로소득만 별도 규정할 필요 없으므로 조문정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V. 근로장려세제

### 1.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조특법 §100의3①)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을 것 <신 설> ※ 무자녀 부부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table border="1" style="margin: 5px auto;">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총급여액 등</th> <th style="text-align: center;">근로장려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600만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총급여액 등 × 7/6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7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9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300만원-총급여액 등) × 7/40</td> </tr> </tbody> </table>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60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70만원	9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	(1,300만원-총급여액 등) × 7/40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다만, 신청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등 기타 사항은 무자녀 부부가구와 동일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60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70만원								
9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	(1,300만원-총급여액 등) × 7/40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 1세대 전원이 무주택(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1주택은 허용) ○ 세대원의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	○ (좌 동)								

#### (2) 개정이유

- 취약계층인 노인 1인 근로가구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2. 탈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적용 확대(조특법 §100의3②)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근로장려금의 신청 제외자  <input type="checkbox"/> 신청일 직전년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주거·생계·교육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자 제외  <input type="checkbox"/>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input type="checkbox"/> 탈기초수급자에 대한 요건 완화  <input type="checkbox"/> 신청년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주거·생계급여를 받은 자  * 다만, '12년도중 동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지 아니한 자는 '13년 3월중 주거·생계급여를 받았더라도 신청 가능하도록 예외 적용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 (2) 개정이유

- 기초수급자의 근로유인 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3. 근로장려세제 사업자 확대적용

#### 3-1 모든 사업소득자에 대한 EITC 적용 확대(조특령§100의2④)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EITC 적용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li> </ul>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사업자</li> <li>- 다만,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제외</li> </ul>

##### (2) 개정이유

- 영세 사업자 지원을 위해 모든 사업자까지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적용
- 다만,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고소득전문직 사업자\*를 제외

\* 「부가령」 제74조 제2항 제7호 간이과세 제외 전문직 사업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3-2 사업자의 연간 총소득합계액 산정방법 변경  
(조특령§100의3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연간 총소득합계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다음의 소득을 합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배당·근로·연금 소득과 기타소득금액</li> <li>○ 사업소득금액</li> </ul> <p>- 다만, 보험모집인 및 방문 판매원은 수입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을 합산</li> </ul> <p>-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업종</th> <th style="text-align: center;">조정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도매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농·임·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매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4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서비스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7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동산임대업, 동산임대업, 인적용역, 가구내 고용활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90%</td> </tr> </tbody> </table>	업종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매업	30%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45%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서비스업	75%	부동산임대업, 동산임대업, 인적용역, 가구내 고용활동	90%
업종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매업	30%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45%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서비스업	75%														
부동산임대업, 동산임대업, 인적용역, 가구내 고용활동	90%														

(2) 개정이유

-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총소득합계액 산정기준 합리화
- 업종별 평균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소득율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조정률 설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3-3 총급여액 등 산정시 제외 대상 소득의 범위 조정  
(조특령§100의6①,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총급여액 등 산정시 제외 대상 소득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input type="checkbox"/> 제외 대상 소득의 범위 조정 i)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ii) 배우자(근로장려세제 적용 배제 사업자인 배우자에 한함)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iii)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획득한 사업소득 - 다만, 인적용역자의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

(2) 개정이유

- 모든 사업자까지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함에 따라 사업자인 배우자(고소득 전문직 제외)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도 총급여액 등 산정시 포함
  - 소득과약이 어려운 미등록사업자의 수급을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4. 근로장려세제 수급요건 개선

##### 4-1 전세금 평가방법 개선(조특령§100의4⑧, §100의7②2호)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제출서류 및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사본의 금액에 따라 평가</li> <li>○ (예외) 사본 미제출시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임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시가의 50/100 이내의 국세청장 고시금액으로 평가</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간주 전세금(기준시가의 60/100 이내의 국세청장 고시금액)으로 평가</li> <li>○ (예외) 신청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금액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신청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 임차 시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li> </ul> </li> </ul>

###### (2) 개정이유

- 근로장려금 신청시 서류제출의무를 완화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미제출시 전세금 간주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
  - 형제자매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세금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4-2 신청요건 보완(조특법 §100의6, 조특령§100의6, §100의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 부부 중 주소득자가 신청 ○ 거주자 사망시 거주자의 상속인이 신청 가능 <신 설>  ○ 주소득자 결정 방법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 총급여액 등이 같은 경우 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 <신 설>  <신 설>	<input type="checkbox"/> 신청기준 명확화 ] ○ (좌 동)  ○ 다만,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신청시 주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 주소득자 변동시 기준 명확화 ] - (좌 동)  - 근로장려금 결정 후 주소득자 변동사유 발생시에도 결정일 현재의 상황에 따름  <input type="checkbox"/> 가구단위 신청 명확화 ○ 1세대 내 2 이상 거주자가 신청시 우선순위에 따른 거주자 1인이 신청한 것으로 봄 1. 상호합의로 신청인으로 정한 자 2.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자 3.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2) 개정이유

-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편의 제고 및 1세대 내 2인 이상 신청시 처리규정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

### 4-3 배우자 사망시 판정기준 보완(조특령 §100의3②)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및 부양자녀 판정기준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여부는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input type="checkbox"/> 부양자녀 여부는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 - 다만,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부양자녀가 사망시에도 근로장려금 지급	<input type="checkbox"/> 판정기준 보완 <input type="checkbox"/> (좌 동) - 다만,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배우자가 사망시에도 근로장려금 지급 <input type="checkbox"/> (좌 동)

#### (2) 개정이유

-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부양자녀 사망시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과의 형평 유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

## Ⅵ. 금융소득

###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소득법 §14③)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 4천만원	<input type="checkbox"/> 기준금액 인하 ○ 4천만원 → 2천만원

#### (2) 개정이유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2. 채권 과세제도 정비

### 2-1 10년이상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개선(소득법§129①1.가)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10년 이상 장기채권 분리과세 ○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30% 분리과세 가능 * 10년 경과전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중도상환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은 제외	<input type="checkbox"/> 보유기간 요건 신설 ○ 3년 이상 보유한 후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30% 분리과세 허용

#### (2) 개정이유

- 채권의 장기투자 유도·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

### 2-2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 이자소득 과세(소득법§22의2③)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물가연동국채의 원금상승분 ○ 과세대상 이자소득에서 제외	<input type="checkbox"/> 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포함

#### (2) 개정이유

- 물가연동국채의 원금상승분은 최초 차입금의 물가상승에 따른 가치하락을 보상한 것으로 금전사용의 대가임을 감안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

### 3. 과세제외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납입한도,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및 종신형 연금보험 요건 등 신설(소득령§25)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p> <p>* 보험금 - 납입보험료</p> <p>○ 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p> <p>○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전 납입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지급받는 경우</p>	<p><input type="checkbox"/>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p> <p>○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가 2억원* 이하인 계약</p> <p>*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종신형 연금보험을 제외한 저축성보험의 합계액</p> <p>- 단,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전 납입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지급받는 경우는 과세</p> <p>○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p> <p>i) 계약기간 10년 이상</p> <p>ii) 적립기간 5년 이상</p> <p>iii) 기본보험료 균등</p> <p>○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p> <p>i) 사망시 계약·연금재원 소멸</p> <p>ii) 55세 이후 연금수령</p> <p>iii) 사망시까지 중도해지 불가</p>

#### (2) 개정이유

- 고액자산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방지, 서민·중산층의 장기저축 유도 및 다른 금융상품간 형평성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4. 저축성보험 계약변경시 계약기간 기산일 변경(소득령§25)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p><input type="checkbox"/> 저축성보험의 계약변경시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의 기산일</p> <p>① (명의변경) 계약자 명의변경시 계약자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각 계약자별로 계약기간 기산*</p> <p>* 단, 사망으로 인한 계약의 이전은 예외 인정</p> <p>② (보장성에서 저축성으로 변경) 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 계약변경시 계약변경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기산</p> <p>③ (보험료 증액) 최초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증액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기산</p>

##### (2) 개정이유

- 금융상품간 과세형평 제고, 명의변경 등을 통한 과세회피 사례 방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단, 보험료증액의 경우는 2013.2.15. 이후 변경되는 계약분부터 적용

5.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조특법§91의14, 조특령§92의13 신설)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형저축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대상)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li> <li>○ (운용대상)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li> <li>○ (세제지원) 이자·배당소득 비과세</li> <li>○ (납입한도)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li> <li>○ (저축기간) 만기 7년 +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기 7년 도래시 1회에 한하여 3년이내의 추가 연장 가능</li> </ul> </li> <li>○ (사후관리) 중도인출·해지시 이자·배당소득 감면세액 추징</li> <li>○ (가입절차)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재형저축 취급기관에 제출</li> <li>○ (소득확인) 국세청장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가입자의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li> <li>○ (적용기한) '15.12.31. 까지 가입분</li> </ul> </li> </ul>

(2) 개정이유

-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신설된 재형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6.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8의5, §89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 대상: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세제혜택: 1인당 1천만원까지 출자금의 배당소득, 이용고 배당(利用高配當) 비과세 ○ 적용기한: '12.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15.12.31.
<input type="checkbox"/>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 대상: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세제혜택: 1인당 3천만원까지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 '12.12.31. ※ '13년 5% '14년 이후 9% 저율 분리과세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15.12.31. ※ '16년 5% '17년 이후 9% 저율 분리과세

(2) 개정이유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유지

## 7. SOC 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SOC 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 만기 7년 이상 SOC 채권의 이자 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 ○ 적용기한: '12.12.31.까지 발행분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14.12.31.까지 발행분

### (2) 개정이유

- SOC 투자 활성화 지원

8. 엔젤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창투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 ○ (공제대상)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 ○ (소득공제율) -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 출자: 투자금액의 10% -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 투자금액의 2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40% ○ (의무보유기간) 3년내 출자 지분 등 이전·회수시 추정 ○ (적용기한) '12.12.31.	<input type="checkbox"/> 소득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소득공제율) - (좌 동) - 투자금액의 20% → 30% ○ (좌 동) ○ (적용기한) '14.12.31.(2년 연장)

(2) 개정이유

-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 유도 및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10. 임대주택 리츠·펀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87의6)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임대주택 리츠·펀드 배당 소득 과세특례 <input type="checkbox"/> (대상) 부동산투자회사(REITs), 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 <input type="checkbox"/> (요건) 자산총액 50% 이상을 임대주택*에 투자 * 기준시가 6억원 이하·주거전용 면적 149㎡이하 임대주택 <input type="checkbox"/> (세제지원) 배당소득세 감면 -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 주식등으로부터 받는 배당 소득은 5% - 액면가액 1억원 초과 보유 주식등으로부터 받는 배당 소득은 14% 분리과세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14.12.31.	<input type="checkbox"/> 액면가액 기준 상향 조정 <input type="checkbox"/> (좌 동) - 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3억원 초과 <input type="checkbox"/> (좌 동)

### (2) 개정이유

- 임대주택 투자 활성화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11. 수협 근로자의 자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88의4⑩)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농협 우선출자지분 취득 근로자에 대한 자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소액주주인 근로자의 우선출자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 인출시 과세 - 액면가액 합계액 1,800만원 이하일 것	<input type="checkbox"/> 농협 → 농협·수협

### (2) 개정이유

- 농·수협 근로자간 과세형평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녹색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의무투자비율 완화  
(조특법 §91의1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녹색저축 과세특례</p> <p>○ (세제지원) 3~5년 만기 녹색저축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p> <p>* 원금한도: (펀드·채권) 1인당 3천만원, (예금) 1인당 2천만원</p> <p>○ (의무투자비율) 녹색저축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자산*에 투자</p> <p>* 정부인증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녹색사업 수익권 등</p> <p>○ (사후관리) 3년 평균 녹색자산 투자비율이 60% 미만인 경우 금융회사가 소득세 비과세액 납부</p> <p>○ (적용기한) '12.12.31</p>	<p>□ 녹색자산 의무투자비율 완화 및 적용기한 2년 연장</p> <p>○ (좌 동)</p> <p>* 녹색예금 취급기관에 우체국 포함</p> <p>○ (의무투자비율 완화) 60%→ 40%</p> <p>○ (사후관리 대상 투자비율 기준 완화) 60% 미만→ 40% 미만</p> <p>○ (적용기한) '14.12.31(2년 연장)</p>

(2) 개정이유

- 녹색저축 및 녹색산업 투자 활성화 지원

### 13.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 연장(조특법 부칙§74③)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실*과 상계가능한 이익의 범위 * '07.6~'09.12 중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만 해당 <input type="checkbox"/> '10.1.1~'12.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input type="checkbox"/> 상계가능한 해외펀드 이익의 범위 확대 <input type="checkbox"/> '10.1.1~'13.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 (2) 개정이유

- 2007.6~2009.12 기간 중 해외주식형펀드의 손실분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 등 감안

14.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비과세 적용 종료(조특법§8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장기주택마련저축 과세특례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납입액 40% 소득공제*(근로자) * 다만, '09년말까지 가입자 중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2012년 납입분까지 공제 허용 ○ 적용기한: '12.12.31 까지 가입분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종료

(2) 개정이유

-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등 감안

15.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종료(조특법 §91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 등: 5% 분리과세 ○ 액면가액 1억원 초과 보유주식등: 14% 분리과세 ○ 적용기한: '12.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종료

(2) 개정이유

- 비과세·감면 정비

## 16. 기업어음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일원화(소득령§190)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업어음 할인액 원천징수 시기 ○ 이자소득을 받는 자가 “할인매출하는 날”과 “만기일” 중 선택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 시기 ○ “할인매출하는 날”로 일원화 ○ 다만, 기업어음이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예탁원에 예탁된 경우는 만기일 선택 허용

### (2) 개정이유

- 기업어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 방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

## 17.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건수 축소(소득령§213③)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이자소득 지급 건별로 제출	<input type="checkbox"/> 계좌별 이자소득 소액지급시 지급명세서 제출건수 축소 ○ 연간 지급된 이자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합산하여 1건으로 제출 ○ 다만, 보유기간과세 적용대상 채권 등은 제외

### (2) 개정이유

- 납세편의 제고 및 행정비용 절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18.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④)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 <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코스닥시장 - 지분율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주주 범위 확대 <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시장 - 3% → 2% - 100억원 → 50억원 <input type="checkbox"/> 코스닥시장 - 5% → 4% - 50억원 → 40억원

### (2) 개정이유

-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주주 범위 확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7.1 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9.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소령 §157④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대주주 판정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주식 합계를 기준으로 함</p> <p>○ (주주 1인)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p> <p>○ (기타주주)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③)에 따른 “주주1인”의 특수관계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li> <li>-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li> <li>-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li> </ul>	<p>○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및 ③1호에 따른 “주주1인”의 특수관계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li> <li>- 본인이 개인인 경우의 경영지배관계</li> </ul>

(2) 개정이유

- 대주주에 해당되는 기타주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과세 대상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 법인분할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기준 보완  
(소령 §157⑧)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 주식의 대주주 요건* 판정기준</p> <p>* 지분율 3%(코스닥 5%) 또는 시가 총액 100억원(코스닥 50억원) 이상</p> <p>○ (원칙)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p> <p>○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의 신주를 합병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p> <p>-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p>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	<p>○ (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 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p> <p>-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분할비율에 의해 안분하지 않음)</p>

(2) 개정이유

- 법인 분할시 대주주 판정 기준일 규정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1. 주식대차거래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기준 보완  
(소득령 §157⑨)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주식 판정시 대차거래 주식 산정방법</p> <p>* 지분율 3%(코스닥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코스닥 50억원) 이상</p> <p>○ 대차주식은 차입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대여자 주식에서 제외(대법원2007두11092, '10.4.29)</p>	<p>○ 대차주식을 대여자 주식으로 보아 대주주 여부 판정</p>

(2) 개정이유

-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회피 방지 및 대차(貸借)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대차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22.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산정방식 변경(소득령 §176의2③)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li> <li>○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매사례가액(주권상장법인 제외),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용</li> </ul> </li> </ul> <p>* 환산가액 = 양도가액 × <math>\frac{\text{취득당시의 기준시가}}{\text{양도당시의 기준시가}}</math></p>	(좌 동)           -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 적용 배제

### (2) 개정이유

- 환산가액을 적용할 경우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 해소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3. 창업자·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다음 주식(출자지분 포함)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창업조합 등이 출자한 창업자·벤처기업 등 주식</li> <li>○ 일정요건을 갖춘 벤처기업 주식(출자후 3년 경과된 것)</li> <li>○ 장외호가증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소액주주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주주 주식(지분율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은 제외</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년 연장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창업조합 등 원천징수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창업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원천별로 원천징수</li> </ul>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12.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14.12.31.

(2) 개정이유

-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 지속 지원

## 24. 기타 제도개선

### 24-1 역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소득령 §26의2②)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배당소득 과세대상 집합투자기구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 기구에 해당 -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 -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 ○ 국외 설정 신탁	<input type="checkbox"/> 역외 집합투자기구 범위 명확화 (좌 동)  ○ 신탁 → 집합투자기구

#### (2) 개정이유

- 국외 설정 신탁 이외의 다른 형태의 역외 집합투자기구가 배당소득 과세대상임을 명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4-2 파생결합사채 과세제도 정비(소득령§26의3)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상법」 §469②3호에 따른 사채*의 이익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포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⑩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사채

### (2) 개정이유

- 「상법」 상 파생결합사채의 이익에 대한 과세 명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4-3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범위에 저축성보험 등 추가  
(조특법§89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다음의 저축취급기관은 저축별 계약내용 등을 세금우대저축 자료집중기관에 즉시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li> <li>○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장기주식형·회사채형저축, 녹색저축, 농어가 목돈마련저축</li> </ul> <p><input type="checkbox"/> 저축취급기관은 다음 사항을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20일 까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 기관에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축자별 가입자 수, 계좌 수, 저축납입금액</li> </ul>	<p><input type="checkbox"/> 자료제출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삭 제(조문 정리)</li> <li>○ 저축성보험*(「소득세법」 §16①9), 연금계좌(「소득세법」 §20의3①2) 추가</li> </ul> <p>* 계약내용, 보험금등 지급금액에 관한 자료를 즉시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축성보험의 보험금등 지급 금액 추가</li> </ul>

(2) 개정이유

- 저축성보험 등 과세특례 저축에 대한 자료 수집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

# 법 인 세 법



# [법인세법]

## 【개정된 주요내용】

### I. 기업경쟁력 강화

1.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법인의 주식처분 및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처분에 따른 과세시 과세이연 요건 신설
2. 적격물적분할 관련 부득이한 사유 및 과세방법 구체화
3.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4.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합리적 조정
5. 제약회사간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한 연장
7.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8.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
9. 주주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0.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1.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2. 기업도시·신발전지역 개발사업구역내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II. 공정과세 및 세원관리 강화

1. 불합리한 접대비 제도 개선
2. 금융회사 등 대손충당금 설정률 인하
3.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신고서의 제출의무
4. 임원의 범위 확대
5. 계열회사간 진출입시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임원의 범위 명확화
6. 농수산물 중도매인·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미교부 가산세 특례 요건 보완
7.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 대상 확대
8. 연결집단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방법 명확화

9.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
10.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적용 조합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11.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12.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13.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14.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15. 벤처기업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16. 행복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17.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 III. 법인 세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1.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2.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취소권자 변경
3.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일원화
4. 지급명세서 제출제도 보완
5.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
6.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
7. 경비 등의 지출증명서류 보관의무 면제 신설
8.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공제사업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추가
9.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승인 기간 변경
10.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추가
11.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대상
1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추가
13.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금 손금산입특례 신설
14.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15.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IV. 기부금 및 비영리법이 세제개선

1. 전공대학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

2.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대상에 추가
3. 국제기구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제도 개선
4. 지정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추가
5. 지정기부금단체 추가
6.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한 변경
7.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 명확화
8. 수익사업의 정의 명확화
9. 소비자생협을 비영리법인에 추가

## V. 기타 제도보완

1. 외국법인 발행 채권 등 관련 원천징수의무자 명확화
2.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규정 개선
3. 자본잉여금의 개념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
4. 법인세 징수규정 명확화
5.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 추징 및 이자상당액 가산사유를 법률로 이관
6.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
7. 리스료의 손익귀속시기 법령화
8. 국세결손처분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금 산입 대상 제외
9. 용역제공의 손익 귀속시기 명확화
10.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방법 명확화
1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원천징수방법 명확화
1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조문 정리
13. 기타 조문정리

###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률: 제11607호(2013.1.1)
- 대통령령: 제24357호(2013.2.15)
- 기획재정부령 : 제325호(2013.2.23)



# I. 기업경쟁력 강화

## 1.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법인의 주식처분 및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처분에 따른 과세시 과세이연 요건 신설 (법인법 §47②, §47의2②)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분할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따른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받은 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할법인이 주식 처분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자산 처분시 분할법인에게 과세(법인법 §47②)</li> <li>○ (과세이연금액 × 처분비율) 만큼 분할법인에 과세</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 단서 신설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예외 인정</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대통령령에서 정함</p>

### (2) 개정이유

- 적격합병·적격분할하는 경우 과세이연해주고 있는 합병(§44), 분할(§46), 물적분할(§47①, ③) 제도와의 형평을 기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분할법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2. 적격물적분할 관련 부득이한 사유 및 과세방법 구체화  
(법인령 §8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부득이한 사유 구체화 (i)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동일한 분할법인 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과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합병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만 해당) (ii)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인적분할(분할합병 제외)하는 경우 ○ 다만,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2회 이상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회만 적용
<신 설>	<input type="checkbox"/>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의 처리방법 ○ 적격합병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유 (i)) : 소멸되는 각각의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적격합병에 따라 새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함 ○ 적격인적분할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유 (ii)) :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새로 적격분할되는 법인에 해당하는 ‘승계자산 중 처분자산 양도차익 비율’(법인령 §84 ③ 2호)을 각각 곱한 금액을 적격분할에 따라 새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함
<신 설>	<input type="checkbox"/> 새로이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과세 ○ 다음의 경우 법인령 §84③*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익금 산입

	<p>(i) 분할법인이 적격합병 또는 적격인적분할의 대가로 새로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p> <p>(ii)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자산을 취득한 재신설법인*이 해당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p> <p>* 부득이한 사유로 적격합병한 합병법인(존속합병법인, 신설합병법인 모두 포함) 또는 적격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p> <p>※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주식과 자산의 처분비율*대로 익금산입(법인세법 §47②, 법인령 §84 ③)</p> <p>* 비율 = <math>\left[ \text{주식처분비율(A)} + \text{자산의 양도차익비율(B)} - A \times B \right]</math></p> <p>* 주식처분 비율(A) : 당기에 처분한 주식등의 장부가액 / 전기말 주식등의 장부가액</p> <p>* 자산의 양도차익 비율(B) : 당기에 처분한 자산의 종전 물적분할시 양도차익 / 전기말 자산의 종전 물적분할시 양도차익</p>
<신 설>	<p><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p> <p>○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분할법인의 익금에 산입</p> <p>i) 재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최초 물적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p> <p>ii) 분할법인이 재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p>

(2) 개정이유

- 기업구조조정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분할신설법인간 적격합병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3.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법인령 §111)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에 대한 원천징수 ○ (원천징수 대상) - 채권이자소득  ○ (원천징수 면제) - 기타 이자소득 - 배당소득 <추 가>	○ (원천징수 대상) - 채권이자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단기 사채 제외)  ○ (원천징수 면제) - (좌 동) - (좌 동) -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 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2) 개정이유

- 기업어음 투명성 제고 및 전자단기사채 활성화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발행하는 전자단기사채부터 적용

#### 4.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합리적 조정(법인치 별표6)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 : 5개 - 5년, 8년, 10년, 12년, 20년	<input type="checkbox"/> 기준내용연수 구간 추가 ○ 5개 → 9개 - 4년, 6년, 14년, 16년 추가	
◇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조정(11개 업종)		
업종	현행(연)	개정안(연)
교육서비스업	5	4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업	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0	6
통신업	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	8
부동산업	5	
종합건설업	5	
수리업	5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8	1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0	16

##### (2) 개정이유

-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취득하는 자산부터 적용(유예기간 1년)

5. 제약회사간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47의4, 조특령 §44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p> <p>○ (대상) 모든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p> <p>○ (요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양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p> <p>○ (특례)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p> <p>○ (적용기한) '12.12.31.</p>	<p>□ 제약회사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한해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p> <p>○ (대상) 제약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내국법인</p> <p>*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p> <p>○ (좌 동)</p> <p>○ (적용기한) '15.12.31.</p>

(2) 개정이유

- 제약회사 구조조정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주식양도차익,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p> <p>○ (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p> <p>*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등</p> <p>**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기술사업자</p> <p>○ (적용기한) '12.12.31.</p>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년 연장</p> <p>○ (적용기한) '14.12.31.</p>

(2) 개정이유

-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투자활성화를 지원

7.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8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내국법인의 주주가 주식의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에 특정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p> <p>○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은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p> <p>○ 적용기한: '12.12.31.</p>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3년 연장</p> <p>○ 적용기한: '15.12.31.</p>

(2) 개정이유

-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설립 유도를 지원

8.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8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시  <input type="checkbox"/> 양도차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12.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3년 연장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15.12.31.

(2) 개정이유

- 내국법인의 해외투자 활성화 및 경영합리화 지원

9. 주주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4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채무 상황을 위해 법인주주가 법인에 자산을 증여시 과세특례</p> <p>&lt; 요건 &gt;</p> <p>① 채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가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p> <p>② 법인은 금전은 증여받은 날, 기타자산은 양도일로부터 3개월이내 부채상환에 사용</p> <p>&lt; 과세특례 &gt;</p> <p>① (법인) 자산가액 중 부채상환 금액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p> <p>② (법인주주) 자산 증여액 중 부채상환금액 상당액을 손금산입</p> <p>&lt; 적용기한 &gt; '12.12.31.</p>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3년 연장</p> <p>&lt; 적용기한 &gt; '15.12.31.</p>

(2) 개정이유

- 부실기업 법인주주의 자구노력과 기업 재무구조 개선노력을 지원

10.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4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 요건 > ○ 회생계획인가 결정, 경영정상화 약정 등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채무면제 < 과세특례 > ① (법인) 채무면제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② (금융회사) 채무면제액 손금산입 < 적용기한 > '12.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 '15.12.31.

(2) 개정이유

- 기업 재무구조 개선노력을 지원

11.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 (조특법 §5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 이전받은 순부채액 (= 부채 - 자산) 손금산입</p> <p>&lt; 요건 &gt;</p> <p>① 적기시정조치 중 계약이전 명령 또는 결정에 따른 이전일 것</p> <p>② 인수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것</p> <p>③ 이전받은 자산과 부채의 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가액일 것</p> <p>&lt; 적용기한 &gt; '12.12.31.</p>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3년 연장</p> <p>&lt; 적용기한 &gt; '15.12.31.</p>

(2) 개정이유

- 부실금융기관 정상화와 예금자 보호를 지원

12. 기업도시·신발전지역 개발사업구역내 토지의 현물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5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기업도시·신발전지역 개발사업구역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p> <p>○ (요건) 내국법인이 기업도시 개발사업구역·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전담기업에 현물출자할 것</p> <p>○ (과세특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토지 양도차익 과세이연</p> <p>○ (적용기한) '12.12.31.</p>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3년 연장</p> <p>○ (적용기한) '15.12.31.</p>

(2) 개정이유

- 기업도시 및 신발전지역의 원활한 개발사업 지원

## II. 공정과세 및 세원관리 강화

### 1. 불합리한 접대비 제도 개선(법인법 §25①, 법인령 §40①)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① 접대비한도액(① + ②)</p> <p>① 기본금액 : 1,200만원 (중소기업 1,800만원)</p> <p>② 수입금액 × 설정률*</p> <p>-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설정률* × (20%)</p> <p>* 설정률</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수입금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설정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0.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500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0.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0억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0.03%</td> </tr> </tbody> </table> <p>② 수입금액의 계산</p> <p>○ 일반기업 : 매출액</p> <p>○ 금융공기업* : 매출액 + 수수료의 6~9배</p> <p>*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자산 관리공사(수수료 등의 9배)</p> <p>* 신보, 기보, 무역보험공사 등 19개 보증기관(수수료 등의 6배)</p>	수입금액	설정률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p>① (좌 동)</p> <p>② (좌 동)</p> <p>- 축소: 20% → 10%</p> <p>○ (좌 동)</p> <p>○ 수수료배율 일원화 : 현행 6~9배 → 6배</p>
수입금액	설정률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 (2) 개정이유

- 접대비 한도의 적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 금융회사 등 대손충당금 설정률 인하(법인령 §61)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 일반법인 -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 은행, 증권, 신탁, 보험, 여신전문금융, 종합금융 - 채권잔액 × Max[2%, 대손실적률,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 ○ 신보, 기보, 무역보험 등 보증·공제 관련 금융회사 - 채권잔액 × Max[2%, 대손실적률]	<input type="checkbox"/> 설정률 인하 - (좌 동) - 2% → 1% - 2% → 1%

### (2) 개정이유

- 법인간 형평성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3.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신고서의 제출의무(법인령 §97)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법인세 신고서 제출시 대표자의 서명날인  ○ (수동신고) 대표자의 서명날인 필요  ○ (전자신고) 대표자의 서명날인 불가 * 전자신고 비율 평균 97%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전자신고시에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신고서를 서면으 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2) 개정이유

- 법인세 신고의 성실성과 책임성 확보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4. 임원의 범위 확대 (법인령 §20)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임원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문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li> <li>○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li> <li style="padding-left: 40px;">&lt;추 가&gt;</li> <li>○ 감사</li> <li>○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li> </ul>	<input type="checkbox"/> 임원의 범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li> <li>○ (좌 동)</li> <li>○ (좌 동)</li> </ul>

##### (2) 개정이유

- 상법의 개정으로 유한책임회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자를 임원의 범위에 추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계열회사간 전출입시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임원의 범위  
 명확화 (법인령 §4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계열회사간 전출입시 퇴직급여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원(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외)</li> <li>- 사용인</li> </ul> </li> <li>○ 처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급여 지급</li> <li>- (예외) 전출법인과 전입법인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 지급 가능*</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원(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외)</li> <li>- 사용인</li> </ul> </li> <li>○ 처리방법 : (좌 동)</li> </ul>

(2) 개정이유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배제한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지배주주인 임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농수산물 중도매인·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미교부 가산세 특례요건 보완(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14, 대통령령 제18706호 부칙 §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중도매인·시장도매인의 계산서미교부 가산세 특례</p> <p>○ (요건) 계산서교부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의무교부비율 이상</p> <p>- (특례) 계산서미교부 가산세 (2%) 면제</p> <p>○ 특례기한 : '13년까지</p> <p>○ 의무교부비율</p> <p>- 중도매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11년</th> <th>'12년</th> <th>'13년</th> </tr> </thead> <tbody> <tr> <td>서울*</td> <td>65%</td> <td>70%</td> <td>75%</td> </tr> <tr> <td>기타</td> <td>45%</td> <td>50%</td> <td>55%</td> </tr> </tbody> </table> <p>*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p> <p>- 시장도매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11년</th> <th>'12년</th> <th>'13년</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65%</td> <td>70%</td> <td>75%</td> </tr> </tbody> </table>	구분	'11년	'12년	'13년	서울*	65%	70%	75%	기타	45%	50%	55%	구분	'11년	'12년	'13년	비율(%)	65%	70%	75%	<p><input type="checkbox"/> 특례요건 보완</p> <p>○ (요건) 계산서교부+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의무교부비율 이상</p> <p>- (특례) 좌동</p> <p>○ 특례연장(3년) : '16년까지</p> <p>○ 의무교부비율 현행유지</p> <p>- 중도매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14년</th> <th>'15년</th> <th>'16년</th> </tr> </thead> <tbody> <tr> <td>서울*</td> <td>75%</td> <td>75%</td> <td>75%</td> </tr> <tr> <td>기타</td> <td>55%</td> <td>55%</td> <td>55%</td> </tr> </tbody> </table> <p>*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p> <p>- 시장도매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14년</th> <th>'15년</th> <th>'16년</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75%</td> <td>75%</td> <td>75%</td> </tr> </tbody> </table>	구분	'14년	'15년	'16년	서울*	75%	75%	75%	기타	55%	55%	55%	구분	'14년	'15년	'16년	비율(%)	75%	75%	75%
구분	'11년	'12년	'13년																																						
서울*	65%	70%	75%																																						
기타	45%	50%	55%																																						
구분	'11년	'12년	'13년																																						
비율(%)	65%	70%	75%																																						
구분	'14년	'15년	'16년																																						
서울*	75%	75%	75%																																						
기타	55%	55%	55%																																						
구분	'14년	'15년	'16년																																						
비율(%)	75%	75%	75%																																						

(2) 개정이유

- 계산서 교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 중도매인·시장도매인의 완전한 계산서 교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의무교부비율의 상향조정 없이 의무교부비율 제도를 3년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 대상 확대  
(법인법 §113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구분경리 대상 ○ 비영리법인 ○ 신탁회사 ○ 적격합병한 합병법인 ○ 적격분할합병(인적분할만 해당)한 분할신설법인	<input type="checkbox"/> 구분경리 대상 보완 ○ (좌 동) ○ (좌 동) ○ 적격합병 → 합병 ○ 적격분할합병 → 분할합병

(2) 개정이유

-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공제하는 것을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합병하거나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8. 연결집단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방법 명확화  
(법인령 §120의19, 법인칙 §60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중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규정 준용</li> </ul> <p><input type="checkbox"/> 준용시 세부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비율 : 각 연결법인이 수입배당금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 합계</li> <li>○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 : 각 연결법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합계(연결법인간 차입금 및 이자 제외)</li> <li>○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 각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li> <li>- 연결법인 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 제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 규정 명확화</li> <li>-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연결집단의 자산 총액의 합계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차감</li> </ul> <p>* 차감 자산(시행규칙):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 연결법인 대상 채권, 연결법인의 주식</p>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법인세법」 §18의2)

$$(수입배당금액 - 지급이자 \times \frac{\text{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text{자산총액} - \text{연결법인간 거래자산}}) \times \text{익금불산입율}$$

(2) 개정이유

- 연결집단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문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9.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  
(조특법 §72, 조특령 §6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과세표준)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아래 사항을 세무조정 - 접대비 - 기부금 <추 가> <추 가> ○ (세율) 9% 단일세율 ○ (복식부기 기장) 의무면제 ○ (적용기한) '12.12.31.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 (과세표준) 세무조정 사항 추가 - (좌 동) - 인건비·복리후생비 등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차입금 지급이자, 퇴직급여충당금 -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대손금 ○ (좌 동) ○ (복식부기 기장) 의무부여 ○ (적용기한) '14.12.31.(2년 연장)

(2) 개정이유

- 일반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과의 과세형평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0.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적용 조합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조특칙 §2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①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법인세법 시행령」 §60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년) 퇴직급여추계액 × 15%</li> <li>○ ('14년) 퇴직급여추계액 × 10%</li> <li>○ ('15년) 퇴직급여추계액 × 5%</li> <li>○ ('16년) 퇴직급여추계액 × 0%</li> </ul>	<p>① (좌 동)</p>
<p>② 위 ①의 한도내로 적립한 퇴직 급여충당금은 향후에 한도가 축소되더라도 익금에 환입하지 않음 (「법인세법 시행령」 §60③)</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② (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적용 법인의 '12사업연도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은 ①에 따라 적립한 것으로 하여 향후 익금에 환입하지 않음</li> </ul>

(2) 개정이유

- 2013년부터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을 하게 됨에 따른 조합  
법인들의 부담 완화
  - 2012사업연도까지 기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익금에 환입  
하지 않고 향후 추가 적립분만 세무조정토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1.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3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매각시  <input type="checkbox"/> 양도차익은 3년 거치, 3년 분할의금산입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12.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종료

(2) 개정이유

- 실효성이 없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

12.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4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요건 > 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양수할 것 ② 주식 양도·양수에 참여한 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없을 것 < 과세특례 >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를 양수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적용기한 > '12.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종료

(2) 개정이유

- 실효성 없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

13.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3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기업의 양도를 위한 법인 주주의 채무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p> <p>&lt; 요건 &gt;</p> <p>① 채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p> <p style="padding-left: 20px;">i) '12.12.31. 이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거나,</p> <p style="padding-left: 20px;">ii) 법인청산계획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13.12.31.까지 청산할 것</p> <p>② 기업 양도 또는 청산을 위하여 주주가 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할 것</p> <p>&lt; 과세특례 &gt;</p> <p>① (법인) 채무감소액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p> <p>② (법인주주) 채무 인수·변제액 손금산입</p>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종료</p>

(2) 개정이유

- 실효성이 없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

14.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4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법인의 감자시 과세특례 < 요건 >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후 소각할 것 < 과세특례 > ① (법인) 자산수증익 익금불 산입 ② (주주) 주식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보유주식 전부를 증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 < 적용기한 > '12.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종료

(2) 개정이유

- 실효성 없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

15. 벤처기업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47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법인세법)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적격합병)시 피합병 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허용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계속 법인간의 합병 ② 합병대가 중 주식 80% 이상 +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당초 지분을 이상 배분 + 지배주주등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주식을 보유 ③ 합병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input type="checkbox"/> (좌동)
<input type="checkbox"/> (조특법) 법인이 벤처기업 합병시 과세특례 ○ 법인세법과는 요건 ① 중 1년의 기산일만 차이 - (법인세법) 1년의 기산일: “수익발생일” - (조특법) 1년의 기산일: 연구·개발 등을 위한 “자산 취득일” 또는 “비용발생일” ○ (적용기한) ‘12.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종료

(2) 개정이유

- 현행 법인세법 상 합병과세특례 규정으로 충분한 세제지원이 가능하므로 제도의 실익이 없음

.16. 행복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85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 공장의 지방 이전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input type="checkbox"/> (요건)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 공장을 지방이전을 위해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것  <input type="checkbox"/> (과세특례) 공장 대지와 건물 양도차익을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12.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종료

(2) 개정이유

- 2012년말로 공장의 양도가 모두 완료될 예정이므로 적용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없음

17.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21의2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에 따른 과세특례  ○ 농업경제지주, 금융지주, 농업은행 등이 분할시 법인세법상 적격 물적분할로 의제하여 분할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농업금융지주회사가 농업중앙회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 조특법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적용기한) '12.6.30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종료

(2) 개정이유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이 완료('12.3.2)되어 적용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없음

### Ⅲ. 법인 세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법인법 §76)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중복 적용  * 법정증명서류 미수취·사실과 다른 수취금액 × 2%  ** 계산서 미발급·가공(위장)수수 : 공급가액 × 2% 계산서 부실기재 등 : 공급가액 × 1%	<input type="checkbox"/> 중복 적용 배제  ○ 중복시 법정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2%)만 부과

##### (2) 개정이유

-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완화
  - ※ 「소득세법」상 법정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중복적용 배제되고 있음(「소득세법」 §81③④)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취소권자 변경(법인법 §76의8 등)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결납세방식 적용승인 및 취소권자  <input type="checkbox"/> 국세청장	<input type="checkbox"/> 국세청장 → 관할 지방국세청장

(2) 개정이유

- 납세자 편의 제고 및 세무행정의 간소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적용을 승인·취소·포기하거나 연결자법인의 변경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3.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일원화(법인법 §109)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법인설립신고서 제출서류 ○ 주주등의 명세서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 사업허가증 등 사본 ○ 임대차계약서	<input type="checkbox"/> 법인설립신고서·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 주주등의 명세서 ○ 사업허가증 등 사본 ○ 임대차계약서

#### (2) 개정이유

- 납세편의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 4. 지급명세서 제출제도 보완(법인법 §120, 법인령 §16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 내국법인에게 -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	-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
<input type="checkbox"/>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대상 ○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 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 <추 가>	○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등 예탁자에 지급하는 의제배당

##### (2) 개정이유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을 명확히 함
  - 예탁결제원이 주주의 주식취득가액 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제출의무자) 2013.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제출면제 대상) 2013.2.15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법인령 §7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 요건 ○ 국세청장의 승인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2) 개정이유

-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 승인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6.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법인령 §45)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복리후생비의 범위 ○ 직장체육비 ○ 직장연예비  ○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기타 경조사비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 ○ (좌 동) ○ 직원회식비 포함  ○ (좌 동)  ○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

### (2) 개정이유

-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내수활성화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7. 경비 등의 지출증명서류 보관의무 면제 신설 (법인령 §158)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다음의 지출증명서류의 경우 보관의무를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영수증</li> <li>○ 신용카드 매출전표</li> <li>○ 전자계산서</li> </ul>

### (2) 개정이유

- 납세편의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8.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공제사업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추가(법령 §5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대상) - 보험회사의 보험사업 - 수협 공제사업 -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사업 - 새마을금고 공제사업  <추 가> <추 가>	<input type="checkbox"/> 대상추가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 건설공제조합의 공제사업

(2) 개정이유

- 법령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다른 보험·공제와의  
형평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9.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승인 기간 변경(법인령 §120의1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승인 기간 <input type="checkbox"/> (신청)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 까지 <input type="checkbox"/> (승인)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input type="checkbox"/> 적용 신청·승인 기간 연장 <input type="checkbox"/> (신청)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input type="checkbox"/> (승인)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2) 개정이유

- 납세자 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연결납세 신청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10.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추가(법인칙 §26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li> <li>○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 부동산</li> <li>○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확정 판결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li> <li>○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 추 가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연장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착공연장기간은 최초 착공연장 승인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li> </ul> </li> <li>※ (경과규정) 규칙시행전에 착공연장 승인을 받은 법인의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착공연장기간은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li> </ul>

(2) 개정이유

- 주택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 추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23 이후 착공연장을 승인(재승인 포함)받는 분부터 적용
  - 규칙 시행 전에 착공연장 승인을 받은 법인의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착공연장기간은 규칙 시행일부터 5년으로 제한

※ 업무무관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기간계산 사례

(사례1) 유예기간(5년) 경과 후 착공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 취득일부터 7년차~8년차에 착공연장 승인  
⇒ 착공연장기간 중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유예기간(과세×)					과세○	착공연장(과세×)	

(사례2) 착공연장 승인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 취득일부터 3년차~8년차에 착공연장 승인  
⇒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최초 착공연장 승인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되므로 7년차까지만 인정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유예기간(과세×)					착공연장(과세×)		과세○

11.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대상  
(조특법 §62, 조특령 §5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p> <p>○ (과세특례)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p> <p>○ (대상 부동산) 수도권에 있는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p> <p>○ (적용기한) '15.12.31.</p>	<p>○ (좌 동)</p> <p>○ 대상 부동산 범위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매각 시기 및 방법이 규정된 건축물과 그 부지</p> <p>○ (좌 동)</p>

(2) 개정이유

- '종전부동산'의 구체적인 범위를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명시된 건축물과 그 부지로 명확화

## 1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추가 (조특법 §74)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수익사업 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대상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학교(초·중·고·대학) 등</li> <li>○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등</li> <li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li> <li>○ 사회복지법인</li> <li>○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치과병원, 국립암센터 등</li> <li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li> <li>○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예술의 전당, 전문예술법인 등</li> <li>○ 국제행사 조직위원회(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조직위, 포물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대상법인 추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좌 동)</li> <li>○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추가</li> <li>○ (좌 동)</li> <li>○ (좌 동)</li> <li>○ 국립대학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추가</li> <li>○ (좌 동)</li> <li>○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추가 및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2개)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 2018 평창동계 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 올림픽대회 조직위</li> <li>- (삭제: 2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수익사업 소득의 8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대상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외 지역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li> </ul>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12.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14.12.31.

### (2) 개정이유

- 공익성이 큰 단체들의 고유목적사업 수행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3.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금 손금산입특례 신설  
(조특법 §104의1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 손금산입  ○ (적용기한) '15.12.31.

(2) 개정이유

-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4.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  
기한 연장 (조특법 §55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input type="checkbox"/> (요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연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미입주 주택)하여 임대  <input type="checkbox"/> (특례)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그 이후 5년간 소득금액의 50% 공제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12.12.31.	<input type="checkbox"/>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소득공제율 50% → 100%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15.12.31.(3년 연장)

(2) 개정이유

- 서민주거 안정 및 부동산 거래정상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주택을 신축·매입하여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 IV. 기부금 및 비영리법인 세제개선

### 1. 전공대학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법인법 §24②)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법정기부금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자체 등</li> <li>○ 국립대학병원(시설비·교육비·연구비)</li> <li>○ 사립학교 등(장학금·시설비·교육비·연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학교(초·중·고·전문대학·대학)</li> <li>-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li> <li>- 산학협력단 등</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li> <li>*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과 같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에서 전환된 시설로서</li> <li>- 지방소재 고등기술학교는 전문대학으로 전환된 반면, 수도권소재 학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으로 전환·인가되었음</li> </ul>

#### (2) 개정이유

- 사립학교인 전문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과의 과세형평을 감안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대상에 추가  
(법인령 §36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지정기부금 단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학교, 의료법인 등</li> <li>○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법인</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지정기부금 단체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법인</li> </ul> <p>※ 지정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열거된 공익 사업을 수행할 것</li> <li>② 나머지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지정요건과 동일</li> </ul>

(2) 개정이유

- 지역사회 재생,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협동조합의 공익적 측면을 감안하여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대상법인으로 추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3. 국제기구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제도 개선  
(법인령 §36, 법인칙 별표 6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국제기구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p> <p>1) 목적요건 - 별도의 요건 없음</p> <p>2) 운영요건 -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동일  &lt;추 가&gt;</p> <p>4) 지정방법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6년 마다 재지정)</p>	<p>1) 목적요건 신설 -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lt;삭 제&gt;</p> <p>3) 가입요건 -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p> <p>4) 지정방법 - 기획재정부령으로 지정*</p> <p>* 국제기구인 지정기부금단체 ○ 유엔난민기구(UNHCR) ○ 세계식량계획(WFP) ○ 국제이주기구(IOM)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p>

(2) 개정이유

- 국제기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23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4. 지정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추가 (법인령 §36)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지정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아동복지시설 <input type="checkbox"/> 노인복지시설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시설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신 설>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설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 개정이유

-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 및 다문화가족의 조속한 사회통합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지정기부금단체 추가 (법인칙 별표 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 국립대학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 <신 설>	<input type="checkbox"/> 범위 추가 ○ (좌 동)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신 설> <신 설>	○ (좌 동)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후남북자피해가족연합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회중앙회	○ (좌 동)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안전공제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li> <li>○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font-size: 2em; margin-right: 10px;">]</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법인령§3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li> </ul>

(2) 개정이유

-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23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6.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한 변경(법인칙 §18⑤)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한 ○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전 까지	<input type="checkbox"/> 추천기한 변경 ○ 20일 전까지 → 1개월 전까지

### (2) 개정이유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건수의 증가에 따른 검토기간, 관보게재 의뢰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간을 변경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4.1 이후 추천하는 분부터 적용

## 7.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 명확화(법인법 §76⑩)

###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input type="checkbox"/>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0.2% <input type="checkbox"/> 사실과 다르게 기재: 2% ※ 백지 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 논란	<input type="checkbox"/> 기준 명확화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사실과 다르게 기재 또는 기부금액 및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 (2) 개정이유

- 백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지 등 기부문화 투명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수익사업의 정의 명확화(법인법 §3, 법인령 §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li> <li>○ 이자소득, 배당소득</li> <li>○ 주식 등 양도소득</li> <li>○ 고정자산 처분소득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li> </ul>

(2) 개정이유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이익(profit)’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수익”을 “수입” 으로 변경하여 수익사업의 정의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소비자생활협을 비영리법인에 추가(법인령 §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법령상 비영리법인으로 정한 조합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li> <li>○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li> <li>○ 산림조합 및 중앙회</li> <li>○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li> <li>○ 중소기업협동조합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li> <li>○ 신용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li> <li>○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li> <li>○ 대한염업조합</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li> </ul>

(2) 개정이유

- 농협, 수협 등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V. 기타 제도보완

### 1. 외국법인 발행 채권 등 관련 원천징수의무자 명확화 (법인법§73⑥ 신설)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 의무자 ○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투자 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등의 소득을 대리하여 지급하는 자  <추 가>	○ (좌 동)  ○ (좌 동)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등의 소득을 국내에서 대리하여 지급하는 자

#### (2) 개정이유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규정(§127⑤)과 동일하게 규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소득지급분부터 적용

## 2.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규정 개선(법인령 §89)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상장주식의 시가계산 방법</p> <p>○ (원칙)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최종시세가액</p> <p>○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 주식)</p> <p>-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을 준용하여 평가</p> <p>: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동안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 (상증법 §63①)</p>	<p>-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최종시세가액</p>

### (2) 개정이유

- 법인세법상의 상장주식의 평가원칙과 통일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3. 자본잉여금의 개념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법인법 §17)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익금불산입되는 자본잉여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발행액면초과액</li> <li>○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li> <li>○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li> <li>○ 감자차익</li> <li>○ 합병차익</li> <li>○ 분할차익</li> </ul> <p>※ 자본잉여금의 명칭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자본잉여금의 구체적인 개념은 시행령에 규정</p>	<input type="checkbox"/>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본잉여금의 개념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

#### (2) 개정이유

- 상법상 자본잉여금 개념이 개정됨에 따라 세법상 익금불산입되는 자본잉여금의 범위를 법인세법에서 명확히 규정

#### 4. 법인세 징수규정 명확화(법인법 §71, §89)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법인세 징수 ○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또는 3개월 이내에 징수	<input type="checkbox"/> 미납된 법인세액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 납세고지 → 독촉 → 압류 → 매각 → 청산

##### (2) 개정이유

- 미납된 법인세 징수를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함을 명확히 규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 추징 및 이자상당액 가산사유를 법률로 이관(법인법 §7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 가산사유  <input type="checkbox"/>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환급 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

(2) 개정이유

-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6.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 (법인칙 §6)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요율 : 4.0%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요율을 적용	<input type="checkbox"/> 요율 조정 (4.0→3.4%)

### (2) 개정이유

- 정기예금 이자율 하향 추이를 간주임대료 산정 요율에 반영하여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7. 리스료의 손익귀속시기 법령화 (법인칙 §35)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리스료의 손익귀속시기 ○ 리스료: 기업회계기준 준용 ○ 리스개설직접원가: 법인세법의 손익귀속시기 적용 (재법인-257, '12.4.3)	<input type="checkbox"/>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으로 명확화

### (2) 개정이유

- 현재 예규를 법령에 명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8. 국세결손처분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금 산입 대상 제외  
(법인령 §19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손금산입 가능한 대손금 ○ 상법 등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등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20만원 이하 채권 등	<input type="checkbox"/> 대손금 범위 조정 ○ (좌 동) ○ (좌 동) ○ (좌 동) <삭 제> ○ (좌 동)

(2) 개정이유

- 「국세징수법」 개정(국세 결손처분제도 삭제, 국기법 §86)에 따라 대손금의 범위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9. 용역제공의 손익 귀속시기 명확화 (법인령 §69)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용역제공등의 손익귀속시기 ○ 목적물의 인도일  <추 가>	<input type="checkbox"/> 손익귀속시기 명확화 ( 좌 동 )  ○ 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

### (2) 개정이유

- 용역제공의 경우에는 인도일의 개념을 용역제공 완료일로 명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0.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방법 명확화 (법인령 §74)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 ○ 재고자산평가방법 신고법인 : 사업연도종료일 3개월전 까지 신고 ○ 재고자산평가방법 未신고법인 : 규정없음 * 법인세과-1586, 2008.7.15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신고한 경우 변경신고로 인정	○ 변경방법 명확화 : 사업연도종료일 3개월전 까지 신고

### (2) 개정이유

- 종전 예규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원천징수방법 명확화  
(법인령 §111⑤, §113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율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colspan="2">원천징수 대상</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이자소득금액</td> <td>비영업대금이익</td> <td>25</td> </tr> <tr> <td>기타 이자소득</td> <td>14</td> </tr> <tr> <td colspan="2">투자신탁이익</td> <td>14</td> </tr> </tbody> </table>		원천징수 대상		세율(%)	이자소득금액	비영업대금이익	25	기타 이자소득	14	투자신탁이익		14		
원천징수 대상		세율(%)												
이자소득금액	비영업대금이익	25												
	기타 이자소득	14												
투자신탁이익		14												
<input type="checkbox"/> 이자의 지급으로 간주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li> <li>○ 교환사채의 주식 교환</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시 대용납입*</li> </ul> <p>* 신주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납입</p>												

(2) 개정이유

-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서 인수대금을 신주인수권부 사채로 대용납입하는 것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1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조문 정리 (법인령 §2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관련 매입세액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매입세액

### (2) 개정이유

- 원인용조문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개정('12.12.13)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조문을 정리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3. 기타 조문정리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법인세법 시행령 §12 ①</p> <p>3. 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을 한 경우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3</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 법 제17조제1항제5호</p> <p>⇒ (개정이유) 상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p>
<p>4. 법 제46조제2항에 대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p>	<p style="text-align: center;">4</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 법 제 1 7 조 제 1 항 제 6 호</p>

<p>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 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p>	<p>----- ----- ----- ----- ----- ----- ----- -----</p> <p>⇒ (개정이유) 상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p>
<p>□ 법인세법 시행령 §110⑤</p> <p>⑤ 법 제7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p> <p>1.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액</p> <p>2. (생략)</p>	<p>1. 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p> <p>⇒ (개정이유)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은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인 반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경우는 결손금 감소 이외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등 법 제72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p>

<p>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u>이 경우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lt;후단 삭제&gt; ⇒ (개정이유) 해당 규정을 법 제72조 제5항으로 이관</p>
<p>□ 법인세법 시행령 §114의2</p> <p>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u>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u>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를 적용한다.</p>	<p>② ----- ----- ----- -----이----- ----- ----- ----- <u>자소득에</u>----- ----- -----</p> <p>⇒ (개정이유)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및 채권대차거래 보상액은 이자소득임('12.2월 동일한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기개정)</p>

<p>□ 법인세법 시행령 §158</p> <p>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p> <p>1·2. (생략)</p> <p>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제3호·제5호 또는 제1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p> <p>② ~ ④ (생략)</p>	<p>3. -----제1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p> <p>-----.</p> <p>-----.</p> <p>⇒ (개정이유)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p>
<p>□ 법인세법 시행규칙 §2의2</p> <p>①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승인을 받으려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법인이 분할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45</p>	<p>① -----</p> <p>-----</p> <p>-----</p> <p>-----</p> <p>-----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청서를 본</p>





## 양도소득세분야



## [양도소득세분야]

### 【개정된 주요내용】

1.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중과유예 일몰 연장
2. 투기지역내 양도세 추가과세 제도 일몰 연장
3.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제도 항구화
4.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 일몰 종료
5.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6.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기준 완화
7.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기준 완화에 따른 조문정리
8. 양도소득세 감면을 세액감면과 소득공제 방식으로 이원화
9.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10.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주택 제한
11.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등 적용 후 사후관리 규정 위반시 신고 납부기한 신설
12.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의 지분변경시 과세방법 변경
13.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명확화
14. 혼인 또는 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선
15.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16.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판정기준 변경
17. 이월과세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시기를 증여자의 취득시기로 합리화
18.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직계존속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재촌·자경요건 완화
19. 주택일부 수용후 잔존 주택·부수토지의 양도기한 연장
20. 주택일부 수용후 잔존 주택·부수토지의 양도기한 연장에 따른 조문정리
21. 중과 배제 임대주택 요건 중 면적기준 폐지

22. 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요건 완화
2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따른 조문 정비
24.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향구화 및 사후관리제도 강화
  - 24-1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향구화 및 사후관리제도 도입
  - 24-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향구화 및 사후관리 보완
  - 24-3 중소기업 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사후관리 강화
25. 세제지원에 따른 사후관료요건 위반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규정 보완
26.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부세 과세특례 향구화
27.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특례 요건 명확화
28. 8년 자경농지 등의 양도세 감면대상 중 비거주자 제외
29.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 등의 양도세 감면 자경농지 대상 명확화
30. 8년 자경농지 등 양도세 감면 대상에 세종시 포함 명확화
31.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면제 등 일몰 연장
32.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면제 일몰 연장
33.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일몰 연장
34.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35.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일몰 연장
36.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
3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
38.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일몰 연장
39.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40.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1.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중과유예 일몰 연장 (소득법§104⑥)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양도소득세 중과 ○ 1세대 2주택 : 50% ○ 1세대 3주택 이상 : 60% ○ 비사업용 토지 : 60% <input type="checkbox"/> '12.12.31까지 중과유예	<input type="checkbox"/> '13.12.31까지 중과유예 1년 연장

### (2) 개정이유

-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

## 2. 투기지역내 양도세 추가과세 제도 일몰 연장 (소득법§104④)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양도세 10%p 추가과세 ○ 대상 - 1세대 3주택 이상 - 조합원 입주권 포함한 1세대 3주택 - 비사업용 토지 ○ 적용기한 : '12.12.31	○ (좌 동) ○ '13.12.31까지 적용기한 1년 연장

### (2) 개정이유

-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의 적용유예를 1년 연장하되,  
 - 국지적 개발수요에 따른 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투기지역내 추가과세 제도 1년 연장

**3.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제도 항구화  
(법인세법§55의2⑧)**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법인이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 ○ 주택 : 30%(미등기시 40%) ○ 비사업용 토지 : 30% (미등기시 40%)	
<input type="checkbox"/> '12.12.31까지 추가과세 유예	<input type="checkbox"/> 일몰 종료

(2) 개정이유

- 재정건전성 제고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제고

**4.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 일몰 종료  
(법인세법§55의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10%p 추가과세 ○ 대상 - 주택 - 비사업용 토지 ○ 적용 기한 : '12.12.31	<input type="checkbox"/> 일몰 종료

(2) 개정이유

-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가 재시행됨에 따라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 제도 일몰 종료

5.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소득령§15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 소득세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2년 이상 보유로 완화

(2) 개정이유

-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기준 완화  
(소득령 §155①, ⑩)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주택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p> <p>○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155①)</p> <p>○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이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5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155⑩)</p>	<p>○ 2년 이내 → 3년 이내*</p> <p>* 단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p> <p>○ (좌 동*)</p> <p>*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p>

(2) 개정이유

- 기존 주택보유자의 신규주택 매수여건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기준 완화에 따른 조문정리  
(소득령§155⑰, §156의2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55⑰)</p> <p>*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한함</p> <p>○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p>	<p>○ 2년 이내 → 3년 이내</p>
<p>□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156의2③)</p> <p>○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p>	<p>○ 2년 이내 → 3년 이내*</p> <p>* 단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p>

(2) 개정이유

-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중복보유기간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양도소득세 감면을 세액감면과 소득공제 방식으로 이원화  
(소득법 §90②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양도소득세 과표 및 세액계산</p> <p>○ 양도소득 과세표준(§92)</p> <p>-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를 한 금액</p> <p>*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p> <p>○ 양도소득세 결정세액(§93)</p> <p>- 산출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p> <p>-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p> <p>* 감면세액(§90)</p> <p>▪ 소득세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된 감면소득금액에 대해 아래 산식으로 감면세액을 계산</p> $\frac{\text{감면대상 소득금액} - \text{양도소득기본공제}}{\text{양도소득과세표준}}$ <p>▪ 조특법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소득금액도 위 감면세액 계산방식(§90) 적용 (우리부 재산-617('09.3.27) 외)</p>	<p>○ 조특법*에 따른 소득공제 감면방식*은 소득세법상 감면세액 계산방식(§90)에 우선하여 적용됨</p> <p>* 조특법 §43, §98의3, §98의5, §98의6, §99, §99의3</p> <p>* 소득공제 감면방식 : 감면소득을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직접 차감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조특법상 소득공제)</p>

## (2) 개정이유

- 일부 조세특례제한법 조문(§43, §98의3, §98의5, §98의6, §99, §99의3)에서 소득공제방식으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 소득세법(§90, §92)에서 조특법을 포함한 모든 감면소득의 계산시 안분방식\*으로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감면세액 계산시 혼선이 있어 왔는바 이를 명확히 함
- \* 먼저 산출세액을 구한 후 그 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세액으로 계산
- ⇒ 안분방식은 산출세액 계산시 양도소득금액 전부에 대해 누진세율을 일단 적용하므로 소득공제 방식에 비해 산출세액이 크게 계산됨
- 조특법(§99)을 문리해석하여 소득공제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반영

\* 대법원 판결(2010두3725, 12.6.28)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제1항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6.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9.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소득법 §95②, 소득령 §166⑤)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대상 ○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대상 추가 ○ (좌 동) ○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부분(승계 취득분 제외)
<input type="checkbox"/>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 신 설 >	○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

(2) 개정이유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건물 양도시만 적용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시점에서 주택을 보유한 자가 추후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멸실 전 주택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 제한 (소득령 §155②, §156의2⑥, 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p> <p>○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p> <p>* 현 규정상으로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하여도 매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p>	<p>○ 상속받는 시점에서 상속인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 적용</p>

(2) 개정이유

- 상속 받은 주택(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하는 경우 매번마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불합리를 개선
- ※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상속주택'(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해도 비과세 적용 가능 (소득세법시행령 §155⑦)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등 적용 후 사후관리 규정 위반시  
신고납부기한 신설 (소득령 §155<sup>12</sup>·<sup>21</sup>, §156조의2<sup>13</sup>, §167조의3<sup>5</sup>)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등을 적용받고 그 요건을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과세표준 신고의무 발생</p> <p>* 단, 신고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p>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	<p>○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p>

(2) 개정이유

- 비과세·감면, 중과제의 등 적용 후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시 신고납부기한 및 과세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 추정사유 발생일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신고납부기한(2개월 내)과 동일하게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최초로 신고의무 발생 분부터 적용

12.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의 지분변경시 과세방법 변경  
(소득령 §155⑱)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주택+상속주택(공동상속)에 대한 과세제도</li> <li>○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간주</li> <li>○ 추후 협의분할 등기시 최대 지분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분 변경에 따라 양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자가 협의분할내용에 따라 신고</li> <li>* 협의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li> </ul>

(2) 개정이유

- 세무서장이 협의분할등기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납세자의 편의에 따라 당초 상속지분과 다르게 협의분할 등기한 것이므로
  - 납세자에게 신고·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납세자가 누리는 혜택과 의무간 형평을 맞추는 측면에서 바람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최초로 신고의무 발생 분부터 적용

13.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명확화  
(소득령 §155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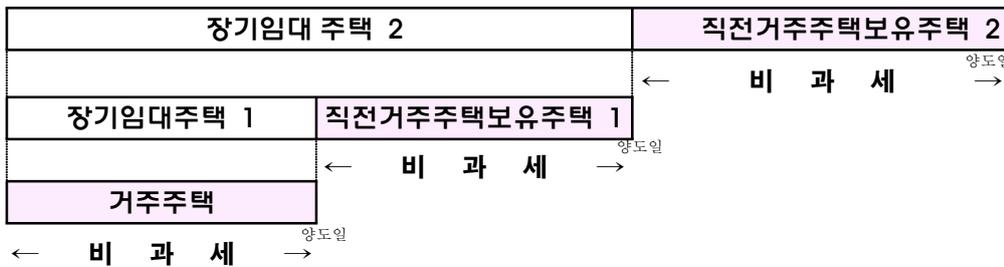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 ○ 거주기간 : 2년 이상일 것 ○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등록·임대하고 있을것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요건 명확화 ○ 양도일 현재 각각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거주주택 : 2년 이상 거주 - 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등록·임대

(2) 개정이유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거주주택 요건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각각 구분하여 비과세 요건을 명확화

〈 참고 : 거주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사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4. 혼인 또는 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선 (소득령 §156의2⑧,⑨)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혼인·동거봉양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p> <p>* 혼인 또는 동거봉양 후 5년내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p> <p>○ 적용대상: 혼인·동거봉양 당시 보유하던 주택</p>	<p>○ 적용대상 확대: 혼인·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 포함</p> <p>- 주택 완공 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혼인·동거봉양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p>

(2) 개정이유

- 혼인 또는 동거봉양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주택이 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하여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혼인·동거봉양을 오히려 저해하는 불합리 초래
  - 다만, 혼인합가주택, 상속주택의 경우와 형평을 맞추어 주택으로 완공된 후 비과세 요건(2년 보유)을 갖추고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5.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소득령 §161②, ③, ④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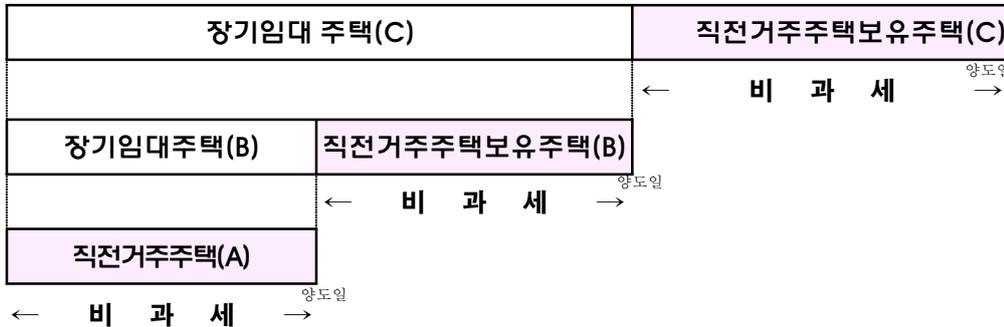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임대기간에 대한 양도 소득금액 계산시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적용(표2) 배제  *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거주기간분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2) 개정이유

- 직전거주주택 보유당시에는 임대주택이 있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연 8% 최대 80%)는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확화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의의〉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B) 양도시 : 직전거주주택(A) 양도일 이후 시점부터 B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소득법§95②)

보유기간	<표1> 공제율	<표2> 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10%	24%
4년이상 5년미만	12%	32%
5년이상 6년미만	15%	40%
6년이상 7년미만	18%	48%
7년이상 8년미만	21%	56%
8년이상 9년미만	24%	64%
9년이상 10년미만	27%	72%
10년이상	30%	80%

\*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전·후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6.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판정기준 변경 (소득령 §167의7)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p> <p>○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은 중과(60% 세율 적용)</p> <p>○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를 기준으로 비사업용토지여부 판정</p> <p>*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p> $\frac{\text{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의 가액}}{\text{법인의 자산총액}} \geq 50\%$	<p>○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로 변경</p> <p>*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p> $\frac{\text{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의 가액}}{\text{법인의 자산총액}} \geq 50\%$

### (2) 개정이유

-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여부는 법인세법에 따른 판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7. 이월과세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시기를 증여자의 취득 시기로 합리화 (소득령 §168의14③)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 토지  <input type="checkbox"/> 수용·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input type="checkbox"/> 이월과세 적용받는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일 보완  <input type="checkbox"/> 증여자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경우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2) 개정이유

- 이월과세제도는 증여자와 양도자(수증자)를 경제적 동일체로 보아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임을 고려하여
  - 이월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도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양도자의 취득시기로 보아 판정하도록 명확화

<참고> 이월과세 제도 (소득세법§97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및 특정시설물 이용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의 금액으로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8.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직계존속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재촌·자경요건 완화 (소득령 §168의14③,④신설)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p>□ 토지취득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토지</p> <p>○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 및 목장 용지로서 상속·증여받은 토지</p>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	<p>○ 직계존속이 재촌·자경한 기간 산정시 그 배우자가 재촌·자경한 기간도 포함</p> <p>○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p>

(2) 개정이유

- 부·모 모두 직계존속에 포함되므로 부·모의 재촌·자경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합리적\*
  - \* '12.10.26 예규심 반영(우리부 재산세제과-898)
-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하여 충분히 사업용으로 활용하였고, 상속·증여받은 경우는 직접 매입한 것과 달리 부득이한 취득임을 고려하여 배우자로부터 상속 증여받는 경우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9. 주택일부 수용후 잔존 주택·부수토지의 양도기한 연장  
(소득령 §15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1세대 1주택 일부 수용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기한</p> <p>○ 수용일부터 <u>2년 이내</u>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시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p>	<p>○ 양도기한 연장</p> <p>· 2년 이내 → 5년 이내</p>

(2) 개정이유

-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이 일부 수용된 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의 비과세 양도기한을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 주택일부 수용후 잔존 주택·부수토지의 양도기한 연장에 따른  
조문정리 (소득칙 §72②)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p>□ 1세대1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으나,</p> <p>○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과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p>	<p>○ 양도기한 연장</p> <p>· 3년 이내 → 5년 이내</p>

(2) 개정이유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맞추어 시행규칙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기한을 5년으로 일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1. 중과 배제 임대주택 요건 중 면적기준 폐지  
(소득령§167의3, 법인령§9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양도세 중과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요건					○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면적기준 폐지  * 건설임대주택은 현행유지
구분	호 수	기 간	면 적	가 액 기준 시가	
수도권	1호	5년	149㎡ 이하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2) 개정이유

- 임대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면적제한을 폐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2. 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요건 완화  
(소득령 §155①, §156의2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p> <p>*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포함</p> <p>○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p>	<p>○ 다음의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p> <p>* 1)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은 경우 2) 종전주택이 수용된 경우 3)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p>

(2) 개정이유

-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고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 투기 목적의 주택보유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따른 조문 정비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06.7.1.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되었고, '12.7.1.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될 예정이나 <input type="checkbox"/> 소득세법상 행정구역 등과 관련된 조문이 미정비	<input type="checkbox"/> 관련 조문 정비 * 소득세법 시행령 §153③1호, 2호, §153④1호, §155⑨, §155⑩, §167의5①3호, §167의6③4호, §168의3⑨, §168의8②, §168의9② * 조특법 시행령 §63④, §64③, §74① * 소득세법 시행규칙 §71③, §72⑦, §75의2①, §83⑥
<input type="checkbox"/> 소득령 §164⑨1 <input type="checkbox"/> 보상금액	<input type="checkbox"/> 보상액
<input type="checkbox"/> 소득령 §178의4③,④ <input type="checkbox"/> 법 제118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input type="checkbox"/> 법 제118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input type="checkbox"/> 법 제118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input type="checkbox"/> 법 제118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input type="checkbox"/> 소득령 §168의3③4, 소득칙 §82① <input type="checkbox"/>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input type="checkbox"/>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4호 나목의

#### (2) 개정이유

- 타법 개정시 미반영된 조문 등 단순 조문 정비

24.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항구화 및 사후관리제도 강화

24-1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항구화 및 사후관리제도 도입 (조특법 §3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해 소멸되는 기업이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적용기한) '12.12.31.</p>	<p>○ 주주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 추징</p> <p>○ 주식처분 및 폐지 판정기준 : 통합 후 5년내 50%이상 주식 처분 또는 5년내 사업폐지</p> <p>○ (적용기한) 삭제</p>

(2)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및 조세회피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분부터 적용

24-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항구화 및 사후관리  
보완(조특법 §3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p> <p>○ 법인이 유상감자*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 소득세 추징</p> <p>* 5년내 자본금 50%이상 감자 또는 5년내 폐지</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적용기한) '12.12.31.</p>	<p>○ 주주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 추징</p> <p>* 5년내 50%이상 처분</p> <p>○ (적용기한) 삭 제</p>

(2)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및 조세회피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분부터 적용

24-3 중소기업 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사후관리 강화(조특령 §28⑨·⑩, §29⑥·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p><input type="checkbox"/> 통합법인·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p> <p>○ 통합법인·신설법인이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50%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80의2⑥ 준용)</p> <p>○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80의2①2 준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산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li> <li>-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li> <li>- 「조특법」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한 경우</li> <li>-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산을 처분한 경우</li> </ul> <p><input type="checkbox"/>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통합법인·신설법인 주식의 50%이상 처분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취득한 주식의 취득일 부터 5년간 유·무상이전, 유·무상감자 등 으로 거주자가 처분한 주식가액이 취득한 주식가액의 50% 이상인 경우</li> <li>○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80의2①1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li> <li>- 적격합병, 적격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li> <li>- 자산의 포괄적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주식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li> <li>-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한 경우</li> <li>-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주식을 처분한 경우</li> </ul> </li> </ul>
--	--

(2)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및 예외규정을 신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최초로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분부터 적용

**25. 세제지원에 따른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규정 보완 (조특법 §77조의2, 조특령 §73조④·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등을 적용받고 사후관리요건 미충족시 과세표준 신고의무 발생 * 단, 신고기한에 대한 규정 미비	<input type="checkbox"/>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2) 개정이유

- 양도소득세 감면 사후관리 제도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6.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부세 과세특례 항구화 (조특법 §104의13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부세 과세특례 제도 ○ 주택·토지 등기 ‘명의’가 향교 재단 또는 종교단체라도, - ‘실제 소유’하고 있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를 납세의무자로 간주 ○ 단, “05.1.4. 이전에”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등기에 한함	○ “05.1.4. 이전에” 삭제

(2) 개정이유

-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 명의의 재산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를 정상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최초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

27.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특례 요건  
 명확화 (조특법 §104의19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p> <p>○ 주택건설사업자(i~iv)가 취득</p> <p style="padding-left: 20px;">i)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한자</p> <p style="padding-left: 20px;">ii)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p> <p style="padding-left: 20px;">iii)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사업*시행자</p> <p style="padding-left: 40px;">*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등</p> <p style="padding-left: 20px;">iv) 「법인세법」에 따른 프로                      젝트금융투자회사(PFV)</p> <p>○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p>	<p><input type="checkbox"/> 대상 주택건설사업자 명확화</p> <p>○ 주택건설사업자(i~iv)가                      보유중이거나 새로이 취득</p> <p style="text-align: center;">(좌동)</p>

(2) 개정이유

- 주택건설사업자로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경우에도  
 종부세 과세특례가 적용 가능토록 조문상 명확히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최초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

28. 8년 자경농지 등의 양도세 감면대상 중 비거주자 제외  
(조특령 §66, §66의2, §6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8년 이상 자경 농지 등을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p> <p>&lt;농업인 요건&gt;</p> <p>○ (자경) i)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 또는 ii)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p> <p>○ (재촌) 농지 소재 또는 인접 시·군·구, 농지로부터 직선 거리 20km 내에서 거주·경작</p>	<p>○ 자경·재촌하였더라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는 배제</p> <p>*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두지 않은 개인 (소득세법 §1의2)</p> <p>- 다만,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는 감면 허용</p>

(2) 개정이유

- 농업생활 안정 지원이라는 본래 입법 취지에 맞게 비거주자는 감면대상에서 배제
  - 다만,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과 동일하게 양도 유예기간(2년)을 두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시행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시행후 2년 이내 양도시 감면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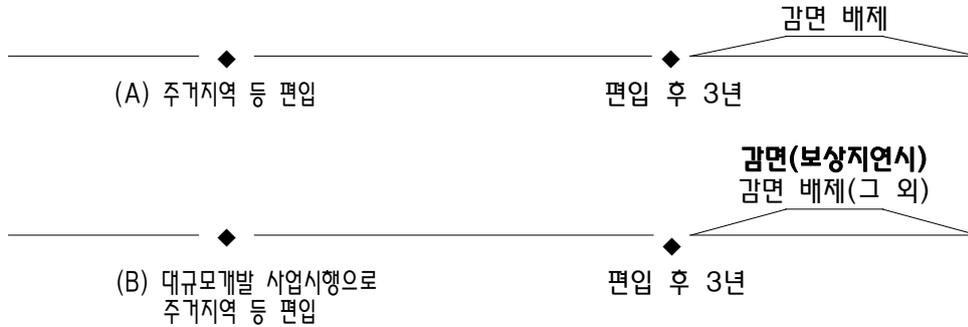
29.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 등의 양도세 감면 자경농지 대상  
 명확화(조특령 §66①·④, §66의2①·③ §67①·⑦)

(1) 개정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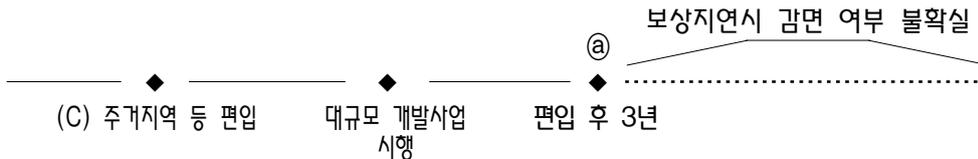
증 전	개 정
<p>□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양도(3년 이상 대토)하는 경우 양도세 100% 감면</p> <p>○ 단, 8년 이상 자경 농지라도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 후 3년 이상 지난 농지는 감면배제</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현재는 감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 [(재재산 46014-130('99.4.19), 우리부 재산세제과-166('11.3.18)]하여 운영중</p> <p>○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p> <p>-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된 후 3년 이상 지난 농지는 감면 적용</p>	<p>○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 후 3년 이상 지난 농지라도</p> <p>- 주거지역 편입 후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해 3년이 경과한 경우는 감면 적용</p>

(2) 개정이유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 이내 양도 농지(A)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보상 지연 등으로 3년 경과 양도한 농지(B)에 대해서는 조문상 감면 적용이 명확하나,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 이내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되는 경우, 최초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 경과 양도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농지(㉔ 이후)의 감면 여부가 불확실



- 현재 해석상(예규)\*으로 동 농지에 대해서도 감면을 적용하는바, 이를 조문상 명확히 함

\* 자경농지-재산세제과 46014-130('99.4.19), 대토농지-재산세제과 166('11.3.18) 특히, 11년 예규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결과('11.2.25) 반영

-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지자체 등이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전에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이후에는 타인 등에 양도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0. 8년 자경농지 등 양도세 감면 대상에 세종시 포함 명확화  
(조특령 §66①, §66의2①, §67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조특령 §66①, §66의2①, §67①)</p> <p>○ 농지(토지·축산용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내 행정시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연접지역 포함) 등에 거주</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시’에 세종특별자치시 포함하고,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개정</p>

(2) 개정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12.7.1)에 따라 조특령 §66①, §66의2①, §67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요건에 세종시 포함
  - ※ 개정된 거주자 요건이 각 조 전체에 적용되므로 조특령 §66④, §66의2③, §67⑦의 ‘시’에도 세종시 포함
- 이 경우 세종시 소재 농지(축산용지 포함)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 세종시 소재 농지(축산용지 포함)의 경우 편입 여부 및 편입 기간과 무관히 감면대상에 포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1.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면제 등 일몰 연장(조특법 §66·§6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면제 등</p> <p>○ 자경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 또는 초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p> <p>- 단,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현물출자전 자경기간과 합하여 8년 미만) 양도시 적용 배제</p> <p>○ 자경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작물재배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초지 제외)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p> <p>○ 적용기한: '12.12.31</p>	<p>○ 적용기한 연장: '15.12.31</p>

(2) 개정이유

- 농규모화를 통한 농업경영 효율화 촉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해당 없음

32.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면제 일몰 연장  
(조특법 §6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면제</p> <p>○ 자경 어업인이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어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p> <p>- 단,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시 적용 배제</p> <p>○ 적용기한: '12.12.31</p>	<p>○ 적용기한 연장: '15.12.31</p>

(2) 개정이유

- 영어규모화를 통한 어업경영 효율화 촉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해당 없음

33.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일몰연장  
(조특법 §6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p> <p>○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인 농업인이,</p> <p>* 고령의 농업인이 쌀농사 등을 그만두고자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p> <p>-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p> <p>○ 적용기한 : '12.12.31</p>	<p>○ 적용기한 연장 : '15.12.31</p>

(2) 개정이유

- 영농규모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은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해당 없음

34.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조특법 §7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p> <p>○ 공익사업시행자 등에게 토지*등을 양도(협의매수·수용)하는 데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p> <p>*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이상 보유</p> <p>- 양도소득세 감면율: (현금보상)20%, (채권보상)25% · 3년만기: 40%, 5년만기: 50%</p> <p>○ 단, 해당 공익사업시행자가 3년 이내 사업 착수, 채권만기 보유 특약 준수 등</p> <p>○ 적용기한 : '12.12.31</p>	<p>○ 적용기한 연장 : '15.12.31</p>

(2) 개정이유

- 공익사업 용지확보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 특히, 채권보상 및 보상채권 만기 보유시 감면율을 높게 함으로써 공익사업시행자의 사업진행 과정 내 유동성 확보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해당 없음

### 35.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일몰 연장(조특법§77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p> <p>○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고 다른 토지로 보상받은 경우 발생하는 양도세에 대해 해당 토지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p> <p>*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이상 보유</p> <p>- 과세이연금액: (기존 부동산 양도차익- 장기 보유특별공제액)×대토보상 상당액/총 보상액</p> <p>○ 단, 해당 대토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후 3년 이후 대토 양도</p> <p>○ 적용기한 : '12.12.31</p>	<p>○ 적용기한 연장 : '15.12.31</p>

#### (2) 개정이유

-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 공익사업시행자의 사업진행 과정 내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 거주자의 경우 현금보상에 따른 과세로 인한 이주 부담 최소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해당 없음

36.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조특법 §85의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지방* 이전시 과세특례</p> <p>* 공익사업 시행지역 외로 수도권과밀 억제지역, 광역시(산업단지 제외), 행복 도시·혁신도시 제외</p> <p>○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공장*의 대지·건물에 대한 양도세 3년거치 3년 분할납부</p> <p>*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가동</p> <p>- 분할납부 양도세액: 기존공장 양도차익 × (신공장취득가액 /기존공장양도가액)</p> <p>○ 단,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내 기존공장양도 또는 기존공장 양도일 3년(또는 6년) 이내 지방공장 사업개시</p> <p>○ 적용기한: '12.12.31</p>	<p>○ 적용기한 연장: '15.12.31</p>

(2) 개정이유

- 공익사업 수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장을 이전하더라도 공장의  
자산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해당 없음

3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조특법 §85의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지방* 이전시 과세특례</p> <p>* 공익사업 시행지역 외로 수도권과밀억제지역, 광역시(산업단지 제외), 행복도시·혁신도시 제외</p> <p>○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물류시설*의 대지·건물에 대한 양도세 3년거치 3년 분할납부</p> <p>*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가동</p> <p>- 분할납부 양도세액: 기존시설양도차익× (신시설취득가액/기존시설양도가액)</p> <p>○ 단, 신시설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내 기존시설양도 또는 기존시설 양도일 3년(또는 6년)이내 지방시설 사업개시</p> <p>○ 적용기한: '12.12.31</p>	<p>○ 적용기한 연장: '15.12.31</p>

(2) 개정이유

-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물류시설 이전시 기업의 생산 및 유통 활동에 대한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해당 없음

38.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일몰 연장  
(조특법 §85의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 국가의 국유림의 확대 등을 위해 매수 대상이 되는 산지*에 대한 양도세 20% 감면  * 도시지역 외, 2년 이상 보유  ○ 적용기한: '12.12.31	○ 적용기한 연장: '14.12.31

(2) 개정이유

- 사유림 등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산림 보호 및 녹색 성장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해당 없음

39.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4의2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세 과세 특례</p> <p>*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p> <p>○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자*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은 이주택지** 양도에 대해 단기양도 중과세 배제</p> <p>* 사업실시계획승인 현재 2년이상 사업을 위해 제공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p> <p>** 분양가: 1억원 이하</p> <p>○ 적용기한: '12.12.31</p>	<p>○ 적용기한 종료</p>

(2) 개정이유

- 각종 개발사업 중 산업단지 개발사업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과세특례로 적용의 실효성이 적음
- \* 이주택지 분양 : 개발사업으로 인해 소유주택이 수용된 자(거주한 자에 한함)에게 보상액과는 별도로 이주할 택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는 것을 말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해당 없음

40.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8의7, 조특령 §98의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조특법 §98의7</span></p> <p><input type="checkbox"/>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주택) '12.9.24 현재 미분양주택</li> <li>○ (대상자) 거주자</li> <li>○ (취득기간) '12.9.24 ~ '12.12.31 취득</li> <li>○ (감면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시 : 100% 세액감면</li> <li>- 취득 후 5년 경과 후 양도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li> </ul> </li> <li>○ (기타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대1주택자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li> <li>-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에 있어 일반주택 양도시 미분양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조특령 §98의6</span></p> <p><input type="checkbox"/> 미분양주택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12.9.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li> </ul>

종 전	개 정
<신 설>	<p><input type="checkbox"/> 미분양주택의 공급자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사업주체</li> <li>○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아래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li> <li>- 공사대금을 미분양주택으로 대물변제받은 시공사</li> <li>-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 REITs)</li> <li>- 신탁업자</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미분양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거래가액(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등 부대비용 제외)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li> <li>○ 매매계약일 현재 임차인 등이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li> <li>○ '12.9.23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12.9.24일 이후 해제된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9.23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12.9.23일 이전에 해제된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li> </ul> </li> <li>○ 계약자가 '12.9.23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12.9.24일 이후 계약체결한 미분양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자의 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이 당초의 사업주체와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을 포함</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양도소득금액 × <math>\frac{\text{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날의 기준시가} - \text{취득당시의 기준시가}}{\text{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text{취득당시의 기준시가}}</math></li> </ul>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사업주체는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현황(별지 제63호의7 서식)을 '12.11.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input type="checkbox"/>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분양주택현황(별지 제63호의7 서식)을 '12.12.31까지 주택 소재지 세무서장에 제출 <input type="checkbox"/> 사업주체는 매매계약 체결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날인(별지 제63호의5 서식)을 받아 계약자에 교부하고 미분양주택확인대장(별지 제63호의6 서식)을 작성·보관 <input type="checkbox"/>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날인 후 미분양주택 확인대장(별지 제63호의6 서식) 작성·보관 <input type="checkbox"/>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자는 각각 미분양주택 확인대장(별지 제63호의6 서식)을 '13.3.31까지 각각 주택 소재지 세무서장에게 제출 <input type="checkbox"/> 양도세 감면신청시 미분양주택으로 확인날인된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

(2) 개정이유

-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 도입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0.2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개정안 주요내용】

1.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합리화
  - 1-1 지배주주 선정 보완
  - 1-2 동일주주간의 증여세 과세제
  - 1-3 수혜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 1-4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개념 보완
  - 1-5 간접출자법인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 특례 폐지
  - 1-6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 1-7 간접보유비율 계산의 합리화
  - 1-8 지배주주 선정 시 자기주식 제외
2. 성실공익법인 요건 강화
3.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확인 의무화
4.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절차 등
5.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 신설
6.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신설
7. 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의 개선
8. 공익법인 공시대상서류 확대
9.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10. 차명계좌 증여추정 적용 명확화
11.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12.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개선 :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원칙 별도 조문화
13.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개선에 따른 증여재산범위 규정 등
14.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일반원칙 신설에 따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보완
15.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신설에 따른 이익계산방법규정
16.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17.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시 연대납세의무 면제
18.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보완
19. 상속세과세가액 범위 명확화
20.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 적용대상 확대
21. 상속세 비과세대상 금액기준 규정
22.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범위 확대
23.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과세
24. 물납제도의 개선
  - 24-1 연부연납시 물납 신청 금지
  - 24-2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축소
25. 연부연납 신청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방법 개선
26. 평가심의위원회 임원의 임기 등 개선
27.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근거 개정
28. 상속분쟁으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특례 명확화
29. 공익법인 등의 범위 확대
30.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배제 적용기한 연장

**【상속증여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률: 제11609호(2013.1.1)
- 대통령령: 제24358호(2013.2.15)
- 기획재정부령 : 제327호(2013.2.23)

1.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합리화  
(상증령§34의2)

1-1 지배주주 선정 보완(상증령 §34의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 합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 <input type="checkbox"/>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외	<input type="checkbox"/>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현행과 동일) <input type="checkbox"/> 수혜법인 및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외 * 최대주주등 중에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서의 법인

(2) 개정이유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1-2 동일주주간의 증여세 과세제외(상증령 §34의2⑩)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법인의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주주 甲에게 과세 ⇒ 자기증여 문제 발생 가능</p>	<p><input type="checkbox"/> 수혜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일치하는 경우 증여의제이익산정시 배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 출자한 경우만 과세 제외</li> </ul>

(2) 개정이유

- 일감물어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1-3 수혜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상증령 §34의2⑪)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수혜법인이 국내외법인인 경우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p>	<p><input type="checkbox"/> 수혜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p>

(2) 개정이유

-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과세관청에서 세원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1-4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개념 보완  
(상증령 §34의2⑧)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세후영업이익 계산 : ① - ②</p> <p>①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세법상 영업손익</p> <p>*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차감</p> <p>② 법인세액 × (세법상 영업손익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p>	<p>□ 세후영업이익 계산 : ① - ②</p> <p>① 영업손익에 다음의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세법상 영업손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23)</li> <li>-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33)</li> <li>- 퇴직보험료 등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44의2)</li> <li>-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34)</li> <li>-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법인세법 §40)</li> <li>- 자산의 취득가액(법인세법 §41)</li> </ul> <p>② (현행과 동일)</p>

(2) 개정이유

- 세후영업이익계산의 편의를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1-5 간접출자법인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 특례 폐지  
(상증령 §34의2⑪)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간접출자법인의 범위 ① 지배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② 지배주주 등과 ①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③ ①과 ②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개재된 모든 법인 ④ 다만, 지주회사는 지배주주 등이 50% 미만 출자한 경우 제외	(현행과 동일)    <삭 제>

(2) 개정이유

- 동일한 이익에 대해 기업의 지배구조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불합리 제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영 시행일(2013.2.15)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 연도 분부터 적용

1-6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상증법 §45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증여의제이익 계산 ○ 정상거래비율(30%) 공제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text{정상거래비율}) \times (\text{수혜 법인주식보유비율} - 3\%)$	<input type="checkbox"/> 증여의제이익 과세 강화 ○ 정 상 거 래 비 율 ( 3 0 % ) 의 1/2(15%)만 공제

(2) 개정이유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7 간접보유비율 계산의 합리화(상증령 §34의2⑨)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지배주주 선정시(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한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된 경우 각 “모든 단계(법인)”의 직접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li> </ul> <p><input type="checkbox"/> 지배주주의 친족 선정시(제5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1항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한 간접보유비율과 직접보유비율이 3% 초과하는 자</li> </ul> <p><input type="checkbox"/>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제9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1항에 해당하는(①~③)” 간접출자법인을 통한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간접출자법인의 범위(제1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배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li> <li>② 지배주주 등과 ①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li> <li>③ ①과 ②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개재된 모든 법인</li> </ul> </div>	<p><input type="checkbox"/> 간접보유비율 계산 합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③의 법인을 포함한 간접보유비율이 0.01% 미만인 되는 경우, 해당 출자관계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은 제외</li> </ul>

### (2) 개정이유

-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 계산시 간접보유비율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납세편의를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1-8 지배주주 선정 시 자기주식 제외(상증령 §34의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지배주주 선정시 지분을 산정 ○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으로 나눔 * 자기주식 제외 여부 불분명	<input type="checkbox"/> 지배주주 선정시 지분을 산정 ○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함을 명백히 규정

(2) 개정이유

- 수혜법인이 특정목적에 의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지배주주의 지분을 산정이 크게 왜곡될 수 있으므로,
  - 의결권 없는 주식인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등에서 제외하여 정확한 지분율에 근거하여 지배주주 선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2. 성실공익법인 요건 강화 (상증법§16, 상증령§13③)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 시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	<input type="checkbox"/> 성실공익법인 요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감사, 전용계좌, 결산서류 공개</li> <li>○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이사의 1/5이하</li> <li>○ 운용소득의 80%이상을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과 동일)</li> </ul>
<신 설>	○ 장부작성 · 보관의무(10년간)
<신 설>	○ 계열기업 홍보금지
<신 설>	○ 출연자에 대한 출연재산 사용 수익 금지
	* 신설되는 요건은 현재도 공익법인의 의무(가산세 부과)이나 향후에는 의무위반시 성실공익법인 지정에서 제외

### (2) 개정이유

- 성실공익법인의 공익성을 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4) 경과조치

- 2013.2.15 이전 성실공익법인이었던 경우에는 13.1.1이후 최초로 개시된 과세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 3.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확인의무화(상증령§13⑤)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를 법인이 신고(확인절차 없음)</p> <p>○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별지 제23호 서식)에서 성실공익법인여부 체크</p> <p><small>&lt;취소사유&gt;</small></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li> <li>2. 목적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li> <li>3.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li> <li>4.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li> </ol>	<p><input type="checkbox"/>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확인 의무화</p> <p>○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확인받을 것</p> <p>○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 확인되면 그 결과를 통보</p> <p>○ 매 5년마다 재확인 요청</p>

#### (2) 개정이유

-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시 즉시 성실공익법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증여세 등을 추징할 수 있도록 요건충족여부 확인을 의무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 4.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절차 등(상증규칙 §4 신설)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p><input type="checkbox"/> 주무관청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확인요청 절차</p> <p>○ 요건충족여부 확인요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 요청</p> <p>*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해당법인의 설립허가서, 등기 사항증명서, 정관</li> <li>② 영 제43조제7항 감사보고서</li> <li>③ 전용계좌개설신고서</li> <li>④ 결산서류공시내역</li> <li>⑤ 장부의작성비치의무 이행내역</li> <li>⑥ 운용소득 사용명세서</li> <li>⑦ 이사 등 선임명세서</li> <li>⑧ 특수관계인 수익명세서</li> <li>⑩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li> </ol> <p><input type="checkbox"/> 기획재정부장관의 확인절차</p> <p>○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반기부터 60일 이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해당 공익법인 및 주무관청에 통보</p> <p><input type="checkbox"/> 재확인요청절차</p> <p>○ 성실공익법인으로 재확인받 고자 하는 성실공익법인은 5년 간의 이행내역을 제출</p>

##### (2) 개정이유

- 성실공익법인 요건의 충족여부를 엄격하게 사후관리하기 위한 확인절차 마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23 이후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5.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 신설(상증령§38<sup>15</sup>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경우 사후관리 예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 5% 초과보유 가능</li> <li>○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li> <li>○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 곤란한 경우 기한 연장</li> <li>○ 수혜자를 특정하여 혜택제공 가능</li> </ul>	<p>(현행과 동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허가</li> </ul>

(2) 개정이유

- 공익법인등 중 법인이 아닌 단체의 출연재산 사후관리 주무관청을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6.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신설  
(상증령§39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자기내부거래 증여세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상사용 : 출연재산가액 전액</li> <li>○ 저가사용 : 정상적인 대가와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li> <li>○ 정상적인 대가의 산정 방법 없음</li> </ul>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font-size: 2em;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동일)</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상적인 대가 산정방법 규정 : 영 §31의9⑧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임대용역 : 부동산가액 × 기재부령이 정하는 율(2%)</li> <li>- 부동산임대용역 외의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li> </ul> </li> </ul>

(2) 개정이유

- 공익법인의 자기내부거래시 증여재산 가액 산정을 위한 정상적인 대가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영 시행일(2013.2.15)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7. 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의 개선(상증령 §43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회계감사대상 공익법인에서 제외 ○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법인	○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

(2) 개정이유

- 세무상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외부감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

## 8. 공익법인 공시대상서류 확대(상증령§43의3③)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결산서류 등 공시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현황</li> <li>○ 주식 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 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li> <li>○ 주식 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 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동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인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수행 여부 등</li> </ul>

### (2) 개정이유

-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영 시행일(2013.2.15)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9.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증법 §18)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	○ 직전년도 매출액 2,000억원 이하

### (2) 개정이유

- 중견 장수기업 육성 등을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 10. 차명계좌 증여추정 적용 명확화(상증법 §45)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추정 과세</p> <p>* 차명금융재산의 경우 재산 취득시기는 명의자가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차명계좌 증여추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li> <li>-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li> </ul>

### (2) 개정이유

-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해 과세강화
- \* 대법원 판례 적용(대법 96누3272, 97.2.11선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11.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상증법 §23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40%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5억원 한도)</p> <p>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p> <p>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일 것</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10년 중 무주택기간이 있는 경우 공제 제외</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규정 없음</p> <p>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일 것</p> <p>-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인 경우로서 10년 기간 중 피상속인이 무주택인 경우에도 공제 허용</p> <p>- 주택부수토지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지역: 주택면적의 5배</li> <li>· 기타지역: 주택면적의 10배</li> </ul> <p>③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거중인 무주택자가 상속</p>

### (2) 개정이유

-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거봉양한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12.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개선 :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원칙 별도 조문화(상증법 §2④ 삭제, §4의2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증여세 과세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 과세</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p><input type="checkbox"/>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원칙 (별도 조문화, §4의2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거래의 형식이나 목적 등에 관계 없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li> <li>② 제3자 통해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직접거래로 보아 과세</li> </ul>

(2) 개정이유

- 현행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원칙이 상속세에도 적용되는 점과, 현행 조문제목(과세대상)과 조문내용(실질과세원칙)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점을 감안, 상속·증여세 모두 적용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원칙 별도 조문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상속개시 또는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3.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개선에 따른 증여재산범위 규정 등  
(상증법 §31 개정, §32 신설, 상증령§24의2, §24③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증여재산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이익 추가</li> </ul> <input type="checkbox"/> 증여재산가액 산정 일반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의 무상이전: 재산가액</li> <li>○ 재산의 유상이전: 시가 - 대가</li> <li>○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 재산의 평가차액*</li> </ul> <p>*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시점 재산가액 - (취득가액+통상적 가치상승분+가치상승기여분)</p> <input type="checkbox"/> 과세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유형의 증여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행위 등으로 인해 이전된 이익이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li> <li>○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세 제외</li> </ul> <p>* 상증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p> <input type="checkbox"/> 구체적 적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예시규정(동법 §33§2) 우선 적용</li> <li>○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포함</li> <li>○ 연대납세의무 배제</li> </ul>

(2) 개정이유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실효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5.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신설에 따른 이익계산방법규정  
(상증법§43, 상증령§31의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합산*하여 금액기준을 계산하는 이익 * 합산대상: 거래일 등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동일거래 있는 경우 해당 거래 <input type="checkbox"/> 고·저가양도에 따른 이익,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 <input type="checkbox"/>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input type="checkbox"/>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 <input type="checkbox"/>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input type="checkbox"/> 합산하여 금액기준을 계산하는 이익 추가  <input type="checkbox"/> 법 제32조 제3호 가목의 저가양수 및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2) 개정이유

-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1년간 동일거래에 따른 이익은 합산하도록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16.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상증법 §2, 상증령 §2의3)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 ○ 거주자: 국내외 모든 재산 ○ 비거주자 - 국내소재 재산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 확대 ○ (현행과 동일) ○ 비거주자 - 국내소재 재산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①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 ② 국내소재재산을 50%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

### (2) 개정이유

- 해외 재산유출을 통한 변칙적인 증여에 과세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7.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시 연대납세의무 면제(상증법 §4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증여세 전부 또는 일부 면제 <input type="checkbox"/> 연대납세의무 면제	(현행과 동일)  ○ §36(채무면제) 추가
○ §35(고저가양도), §36(채무면제), §37(부동산무상사용), §41의4(금전무상대출) ○ §35, §37~§41, §41의3~§41의5, §42, §45의3, §48	

(2) 개정이유

- 재산의 고가·저가 양도, 채무면제, 부동산 무상사용,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서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까지 과세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당초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 이 같은 입법취지에 따라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경감 또는 면제하는 재산의 고가·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등에 대하여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를 배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이익도 연대납세의무 배제대상에 추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18.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보완(상증법 §5)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상속·증여재산의 소재지 <input type="checkbox"/> 대출금채권 : 채무자의 소재지	<input type="checkbox"/> 금전채권 : 채무자의 소재지 * 금전채권 : 금전의 금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2) 개정이유

- 현행 규정상 대출금채권을 제외한 금전채권은 소재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 없음. 금전채권은 대출금채권을 포함하므로 금전채권을 대출금채권과 동일하게 채무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소재지를 판단하도록 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상속개시 또는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19. 상속세 과세가액 범위 명확화(상증법 §13)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상속세 과세가액</p> <p>○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뺀 후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가산</p> <p>* 공과금 등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p> <p>- 사전증여재산가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li> <li>·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li> </ul>	<p>○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뺀 후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가산</p> <p>- 공과금 등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제외</p> <p>(현행과 동일)</p>

### (2) 개정이유

- 공과금 등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과금 등을 차감하고 사전증여세액을 가산하는 경우, 기납부한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커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문제점 발생
-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99년 동 조항을 현행처럼 개정\*한 바 있으나,
  - \* (개정전) 상속재산의 가액 + 사전증여재산 - 채무 및 공과금 등  
→ (개정후) 상속재산의 가액 - 채무 및 공과금 등 + 사전증여재산
  - 최근 대법원에서 현행 조문을 근거로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등을 차감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도 그 부수 잔액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는 것으로 판결한 바 있어 이를 명확화하기 위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20.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 적용대상 확대(상증법 §41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증여 적용대상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특수관계여부와 무관하게 1억원 이상의 모든 금전무상대출 - 특수관계자 이외의 경우에는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2) 개정이유

-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증여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간 대출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없는 자간 대출에도 적용하도록 함
  - 다만,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용을 배제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1. 상속세 비과세대상 금액기준 규정(상증령8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상속재산 ①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② 분묘에 속한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 ③ 족보와 제구 ④ ①과 ②의 합계액이 2억원 초과시 2억원 한도	(현행과 동일)
	⑤ ③은 1천만원 한도로 비과세

(2) 개정이유

- 족보와 제구를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 22.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범위 확대(상증령§16①)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영농상속재산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에 따른 농지</li> <li>○ 「초지법」에 따른 초지</li> <li>○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조립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li> <li>○ 「어선법」에 따른 어선</li> <li>○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동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영농: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li> </ul> <p>*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p>

### (2) 개정이유

- 농업법인 등을 장려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허용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 23.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과세(상증령§29의3①,②)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현물출자시 증여세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가발행: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li> <li>○ 고가발행: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li> </ul> <p>* 상장회사의 유상증자(현금)시 모집에 의해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를 제외(상증법 §39)하나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예외가 없음</p>	<input type="checkbox"/> (현행과 같음)  <input type="checkbox"/> 상장회사가 일반공모*에 의해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제외 <p>*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6</p>

#### (2) 개정이유

- 자본거래시 증여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상장회사가 50인 이상의 다수인에게 “모집”에 의해 주식을 배정하여 현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 불특정다수인에게 청약의 기회가 제공되고 법령에 따라 발행가액이 결정되는 일반공모방식에 의한 현물납입도 동일하게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24. 물납제도의 개선

### 24-1 연부연납시 물납 신청 금지(상증령 §70)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부연납시 물납 신청·허가 ○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해 물납신청 가능	○ 첫 회분 분납세액에 한해 물납 허용 -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허용

#### (2) 개정이유

- 연부연납과 물납제도를 병행하려던 납세자의 기대를 일정 수준 보호하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첫 회분의 분납세액에 한해서만\* 물납을 허용
- \* 일시적으로 거액의 조세부담이 발생한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물납제도의 취지 감안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4-2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축소(상증령 §7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물납재산의 범위 ○ 국내소재 부동산 ○ 국채, 공채, 증권 등 유가증권 - 상장주식 제외 * 상장주식 허용하는 경우 ① 다른 상속·증여재산 없거나 ② 『자통법』에 따라 처분 제한된 경우 - 비상장주식 제외	○ (현행과 동일) - 상장주식 물납 가능한 경우 축소 : ① 삭제 - (현행과 동일)

(2) 개정이유

- 상장주식은 현금화가 용이한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5. 연부연납 신청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방법 개선  
(상증규칙 §24 11호 서식)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부연납 신청 ○ 상속인 전부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인 전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일부 상속인이 자기분에 한해 연부연납 신청 가능

(2) 개정이유

- 상속세는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하므로 일부 상속인에게만 연부연납을 허용하는 것은 어려움
  - 다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상속재산을 회복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협의를 받아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전부 신청의 예외 사유 등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23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6. 평가심의위원회 임원의 임기 등 개선(상증령 §56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임기 등 ○ (임기) 1년 -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겸임위원) 3명	○ (임기) 2년 ○ (겸임위원) 2명

### (2) 개정이유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임명 및 운영의 용이성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최초로 임명하는 위원부터 적용

## 27.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근거 개정(상증령 §69)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

### (2) 개정이유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내용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상속개시 또는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8. 상속분쟁으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특례 명확화(상증령 §81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 상속회복청구소송 확정판결 <신 설>	○ (현행과 동일)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2) 개정이유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상속재산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29. 공익법인 등의 범위 확대 (상증규칙 §3)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p> <p>○ 한국전파연구원이 운영하는 기술교육 등</p> <p>○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집장중소기업지원사업 등</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가 시행하는 노사상생협력증진에 관한 교육·상담 사업 등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p>

### (2) 개정이유

- 선진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노동조합 사업을 지원할 필요
- \* 2013년 12월 31일까지 출연받는 분까지 적용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2.30 이후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 【개정된 주요내용】

1.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 요건 중 면적기준 폐지
2.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 범위 확대
3. 국토부장관 및 국세청장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요구 근거 신설
4. 국토부장관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권한 부여

### 【종합부동산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일자】

- 대통령령 : 제24392호(2013.2.22.)
- 기획재정부령 : 제328호(2013.2.23.)



1.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 요건 중 면적기준 폐지 (중부령 §3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 요건					○ 면적기준 폐지  * 건설임대주택은 현행유지
구분	호 수	기 간	면 적	가 액 (기준 시가)	
수도권	1호	5년	149㎡ 이하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2) 개정이유

-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임대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면적제한을 폐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22 이후 도래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부터 적용

2.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 범위 확대 (종부령 §13, §15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납부할 종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물납 가능</p> <p>○ 물납에 충당 가능한 재산은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p>	<p>○ 물납에 충당 가능한 재산 확대</p> <p>- 국내 소재 부동산*</p> <p>*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 포함</p>

(2) 개정이유

- 종부세의 물납 가능 재산을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22 이후 납부기간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

3. 국토부장관 및 국세청장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요구 근거 신설  
(중부령 §17⑥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자료요구 권한</p> <p>○ 국토부 장관 및 국세청장은 관련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전산자료*의 제출 요구 가능 (중부법§21⑥)</p> <p>*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가족 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자료로서 법원 행정처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유</p> <p>- 관련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할 의무</p>	<p><input type="checkbox"/> 요구가능 자료 추가</p> <p>-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p> <p>*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포함하는 자료로서 행안부장관이 「주민등록법」에 의해 보유</p>

(2)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11.9.30) 시행으로 법령의 근거 없이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불가능하여 법령상 근거를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22 이후 최초로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4. 국토부장관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권한 부여  
(중부령 §17⑦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국토부장관에게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권한 부여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19) <input type="checkbox"/> 국토부장관은 납세의무자별 중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 필요

(2) 개정이유

- 국토부장관이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재산세 부과자료 등을 활용하여 중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2 이후 최초로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 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된 주요내용】

### I.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 조세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확대
3.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등
5.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 및 알뜰주유소 감면을 확대

### II.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R&D 비용 세액공제 제도 합리적 조정
2. 중견기업에 대한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 구간 신설
3.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R&D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신약 연구개발 추가
4. 정부 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5.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이익처분 성과급 제외
6.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위탁연구개발비의 범위 명확화
7.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분야 R&D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8. R&D 세제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9.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III. 투자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일부시설 공제율 인상
3.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 명확화
4.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
5.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 시설 추가
6.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합리적 개선
7.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8. 고용창출투자 추가세액공제시 우대되는 청년근로자의 범위 확대
9. 합병·분할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명확화

10.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11.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IV. 기타 조세특례

1. 사업전환·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2.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3.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4.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5.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6.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7. R&D시설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학교 추가
8. 해외 사업장 철수방식 U턴지원 세제 보완
  - 8-1 해외사업장 유지방식 추가 및 해외사업장 철수기한 연장
  - 8-2 국내복귀대상 사업자의 범위
9.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율 인상
10. 제주개발관련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1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12. 금융중심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13. 기업도시 등 지역개발 세액감면 대상지역 추가
14. 기업도시·신발전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등
15.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간 중복지원 배제 기준 명확화
16. 법인·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 조정
17.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18. 조세지출 종합평가 대상 및 조세지출예산서 작성방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률: 제11614호(2013.1.1)
- 대통령령: 제24368호(2013.2.15)
- 기획재정부령 : 제322호(2013.2.23)

# I.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1.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대상업종) - 제조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관광사업, 출판업, 광고업, 음식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등 ○ 적용기한 : '12.12.31	○ 적용기한 : '15.12.31(3년 연장)

### (2)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지원

## 2. 조세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확대(조특령 §2①)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조세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p> <p>*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등</p> <p>○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전문디자인업 등 41개 업종</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좌 동)</p> <p>○ 일반도시가스사업</p>

### (2) 개정이유

- 지방 중소도시 도시가스 보급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3.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5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출연금*을 다음 설비에 투자한 경우 손금산입 허용(익금불산입)</p> <p>*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 기술혁신촉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연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li> <li>- 전자상거래설비</li> <li>-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 는 소프트웨어 설비</li> </ul> <p>○ 적용기한 : '12.12.31</p>	<p>○ 적용기한 : '15.12.31(3년 연장)</p>

#### (2) 개정이유

- 정보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유도

#### 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등(조특법 §6)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대상 - 과밀억제권역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후 3년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창업후 3년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감면업종 :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 추 가 > ○ 적용기한 : '12.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기간 : 4년 →5년  (현행과 같음)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적용기한 : '15.12.31(3년 연장)

##### (2) 개정이유

-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의 창업을 유도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창업·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창업(창업중소기업)하거나, 지정(창업보육센터사업자)·확인(창업벤처중소기업)받는 분부터 적용

5.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 및 알뜰주유소 감면율 확대  
(조특법 §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p> <p>○ 감면율(소매업의 경우)</p> <p>- 소기업: 10%</p> <p>- 지방 소재 중기업: 5%</p> <p>※ 수도권 소재 중기업은 감면 없음</p> <p>○ 감면대상 업종</p> <p>- 제조업, 건설업, 출판업 등 &lt;추 가&gt;</p>	<p>○ 일반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시 2년간** 20% 감면 (수도권 소재 중기업도 포함)</p> <p>* 한국석유공사와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알뜰 주유소 상표로 영업</p> <p>** '12년 · '13년 발생소득분</p> <p>○ 사회복지 서비스업</p>

(2) 개정이유

- 알뜰주유소의 조기정착과 확산을 통한 유류 가격 안정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알뜰주유소) 2013.1.1 이후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II.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1. R&D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 산식 조정(조특법 §10)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증가분방식 R&amp;D 비용 세액공제</p> <p>○ 증가분 산식 : 당해연도 R&amp;D 비용 - 직전 4년 평균 R&amp;D 비용</p> <p>○ 공제세액 : 증가분 × 공제율</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소기업 (유예기간 포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기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r> </tbody> </table>	구 분	공제율(%)	중소기업 (유예기간 포함)	50	일반기업	40	<p><input type="checkbox"/> 증가분 산식의 조정</p> <p>○ 증가분 산식: 직전 3년 평균 R&amp;D 비용 ('13) → 2년 평균('14) → 직전 연도('15 이후)</p> <p>○ 단, 직전연도 R&amp;D비용이 직전 4년평균 R&amp;D비용보다 적은 경우 증가분방식 적용 배제</p>
구 분	공제율(%)						
중소기업 (유예기간 포함)	50						
일반기업	40						

#### (2) 개정이유

- R&D비용 증가분방식의 세액공제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중견기업에 대한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 구간 신설  
(조특법 §10, 조특령 §9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당기분 방식* R&amp;D비용 세액 공제</p> <p>* 당해연도 R&amp;D 비용 × 공제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공제율(%)</th> </tr> <tr> <th>일반</th> <th>신성장·원천기술</th> </tr> </thead> <tbody> <tr> <td>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25</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이후 1~3년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이후 4~5년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일반기업</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3~6 **</td> </tr> </tbody> </table> <p>** 3%(기본공제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 금액에서 R&amp;D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1/2</p> <p style="text-align: center;">&lt;중견기업의 범위 신설&gt;</p>	구 분	공제율(%)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25	30	이후 1~3년차	15	20	이후 4~5년차	10	일반기업	3~6 **		<p><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에 대한 별도 공제율 구간 신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공제율(%)</th> </tr> <tr> <th>일반</th> <th>신성장·원천기술</th> </tr> </thead> <tbody> <tr> <td>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25</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이후 1~3년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이후 4~5년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중견기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FFFF;">8</td> <td></td> </tr> <tr> <td>일반기업</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3~6</td> </tr> </tbody> </table> <p>○ 중견기업의 범위(아래 i, ii, iii 요건 모두 충족)</p> <p>i)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p> <p>ii)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아닐 것</p> <p>iii)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p>	구 분	공제율(%)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25	30	이후 1~3년차	15	20	이후 4~5년차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	3~6	
구 분		공제율(%)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25	30																																		
이후 1~3년차	15	20																																		
이후 4~5년차	10																																			
일반기업	3~6 **																																			
구 분	공제율(%)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25	30																																		
이후 1~3년차	15	20																																		
이후 4~5년차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	3~6																																			

(2) 개정이유

- 중견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을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3.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R&D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신약 연구개발 추가(조특령 별표 7·8)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R&amp;D비용 세액공제</p> <p>○ (공제대상)</p> <p>-신성장동력(11개 분야 62개 기술) *그린카, 바이오의약품, 신재생에너지 등</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원천기술(18개 분야 28개 기술) *연료전지·2차전지, 원자력 등</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좌 동)</p> <p>- 백신*</p> <p>*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 향원에 대한 기술을 접목한 치료 및 예방목적의 백신 제조 기술</p> <p>- 임상평가 기술*</p> <p>*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신약 후보물질의 초기 안정성, 잠재적 치료효과 추정 등을 위한 평가기술</p> <p>*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 시험): 신약 후보물질의 용량 및 투여기간 추정 등을 위한 평가기술</p> <p>- 혁신형 개량신약*</p> <p>* 혁신형 개량신약 개발 및 제조 기술: 기존 신약보다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 효능 등을 현저히 개선시킨 개량 신약을 개발·제조하는 기술</p>

#### (2) 개정이유

-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 과제연도 분부터 적용

4. 정부 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조특령§8①, §9①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조특법」 §10의2에서 규정한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에 대하여 R&amp;D 비용 세액공제 배제</p> <p>*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p>- 「조특법」 §10의2에 근거하지 않은 출연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R&amp;D 비용 세액공제 배제</p>

(2) 개정이유

- 과도한 조세지원을 축소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손금으로 인정 되는 이익 처분 성과급 제외(조특령 별표 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R&amp;D 비용 세액공제 대상</p> <p>○ 인건비. 다만, 다음 항목은 제외</p> <p>-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p> <p>-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p>-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이익처분 성과급*</p> <p>* 차액보전형 주식매수선택권, 성과배분상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p>

(2) 개정이유

- R&D 비용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을 축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위탁연구개발비의 범위 명확화  
(조특령 별표 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 ○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재위탁함에 따른 비용	○ (좌 동)  - 다만, 전담부서 등에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함

(2) 개정이유

- 비전담부서에서 발생한 R&D 비용은 세액공제 적용 배제

7.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분야 R&D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일반 R&D보다 우대 적용) ○ 공제율 : 당해연도 발생액×20%(중소기업 30%) ○ 세액공제 대상 - 신성장동력(11개 분야 62개 기술) *그린카, 바이오의약품, 신재생에너지 등 - 원천기술(18개 분야 28개 기술) *연료전지·2차전지, 원자력 등 ○ 적용기한 : '12.12.31	○ 적용기한 : '15.12.31(3년 연장)

(2) 개정이유

-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

8. R&D 세제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의2, §11, §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수령시 익금으로 보지 않고, 지출시 손금으로 보지 않음 * 「기술개발촉진법」, 「정보화촉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연금	
<input type="checkbox"/>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10%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사업화 설비 등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의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기술 취득금액의 7%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12.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15.12.31

(2) 개정이유

-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 9.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대전, 대구,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 ○ 적용기한 : '12.12.31	○ 적용기한 : '15.12.31(3년 연장)

### (2) 개정이유

- 연구개발특구 조성을 지원

### Ⅲ. 투자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1.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4)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 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첨단기술시설, 지식관리시스템 등</li> <li>○ 공제율 : 3% (중소기업 7%)</li> <li>○ 적용기한 : '12.12.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기한 : '14.12.31(2년 연장)</li> </ul>

##### (2) 개정이유

- 첨단기술설비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

2.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일부시설 공제율 인상  
(조특법 §2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 시설 : - 산업재해예방시설, 유통산업 합리화시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시설, 광산보안시설, 위해 요소방지시설 등 - 기술유출방지시설  ○ 공제율 : 3% <신 설>  ○ 적용기한 : '12.12.31	○ 공제율 : 3%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시설 투자 : 7%  ○ 적용기한 : '14.12.31(2년 연장)

(2) 개정이유

- 산재예방 등 안전설비 투자를 지속 유도
-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해 기술 유출방지시설 적극 투자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3.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 명확화(조특규칙 별표 3)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온보관고 등</li> <li>○ 탱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함)</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출 → 반입·반출</li> <li>-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하고, 탱크 시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li> </ul>

#### (2) 개정이유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를 명확화

#### 4.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규칙 별표 8의3)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 시설 *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LED조명, 무정전 전원장치, 프리미엄 전동기 등 <추 가>  <추 가>	○ (좌 동)  ○ 지식경제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한 전력저장장치 ○ 지식경제부장관이 대기전력저감우 수제품으로 인증한 자동절전제어 장치

##### (2) 개정이유

- 전기절약시설 투자 확대 및 전력 소비절감 유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규칙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5.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 시설 추가  
(조특령 §22의3, 조특규칙 §13의3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p> <p>○ 대상시설 - 대기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lt;추 가&gt;</p> <p>○ 공제율 : 10%</p> <p>○ 적용기한 : '13.12.31</p>	<p>○ 대상시설 추가</p> <p>- 온실가스 감축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산화탄소(CO2) 저장, 수송, 전환 및 포집기술</li> <li>· 메탄(CH4) 포집, 정제 및 활용기술</li> <li>· 아산화질소(N2O) 재사용 및 분해기술</li> <li>· 불소화합물(HFCs, PFCs, SF6) 처리, 회수 및 대체물질 제조기술</li> </ul>

(2) 개정이유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6.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합리적 개선(조특법 §26)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자세액 공제율				○ 공제율 조정			
구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구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 <sup>1</sup> (고용감소시배제)	3%	4%	4%	기본공제	2% 고용감소시 배제	3%	4% 허용 <sup>1</sup>
추가공제 <sup>2</sup> (고용증가비례)	2%	2%	3%	추가공제 <sup>2</sup> (고용증가비례)	3%	3%	3%
합 계	5%	6%	7%	합 계	5%	6%	7%
<p>1<sub>1</sub> 기본공제: 전년대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 3%~4%의 공제율 적용</p> <p>2<sub>1</sub> 추가공제 한도: 마이스터고 2천만원, 청년 1,500만원, 기타 1천만원</p>				<p>1<sub>1</sub> 기본공제: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감소시에도 투자금액에 기본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 인원당 1,000만원 공제금액 축소</p> <p>2<sub>1</sub> (현행 유지)</p>			

### (2) 개정이유

- 일반기업에 대해 기본공제율은 인하하고 고용증가와 관련 있는 추가공제율은 인상하여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 대기업 등 일반기업이 고용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기본공제를 배제하여 일자리 창출기능 강화하되,
  - 중소기업의 경우는 고용감소 인원수에 따라 기본공제를 축소하여 1명이라도 고용이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 전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불합리 해소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7.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조특령 §23①)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업종 (총 32개 업종)</li> <li>-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 (재활용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업종 확대 (15개)</li> <li>○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그외 기타 정보서비스업</li> <li>○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li> <li>○ 사회복지 서비스업</li> <li>○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li> </ul>

### (2) 개정이유

-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액공제대상 서비스 업종의 범위를 확대
  - 도시가스 공급시설\* 투자를 통한 지역주민의 에너지 사용료 부담경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
- \*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8. 고용창출투자 추가세액공제시 우대되는 청년근로자의 범위 확대  
(조특령 §23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추가공제대상 청년근로자 범위 ○ 15세 이상 ~ 29세 이하인 자	<input type="checkbox"/> 청년근로자 범위 확대 ○ 15세 이상 ~ [29세 + 군 복무기간(최대 6년)]

(2) 개정이유

- 군 복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공제시 우대되는 청년 근로자 연령기준에 군 복무기간 합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9. 합병·분할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명확화  
(조특령 §23⑩3, §27의4⑥3)

(1) 개정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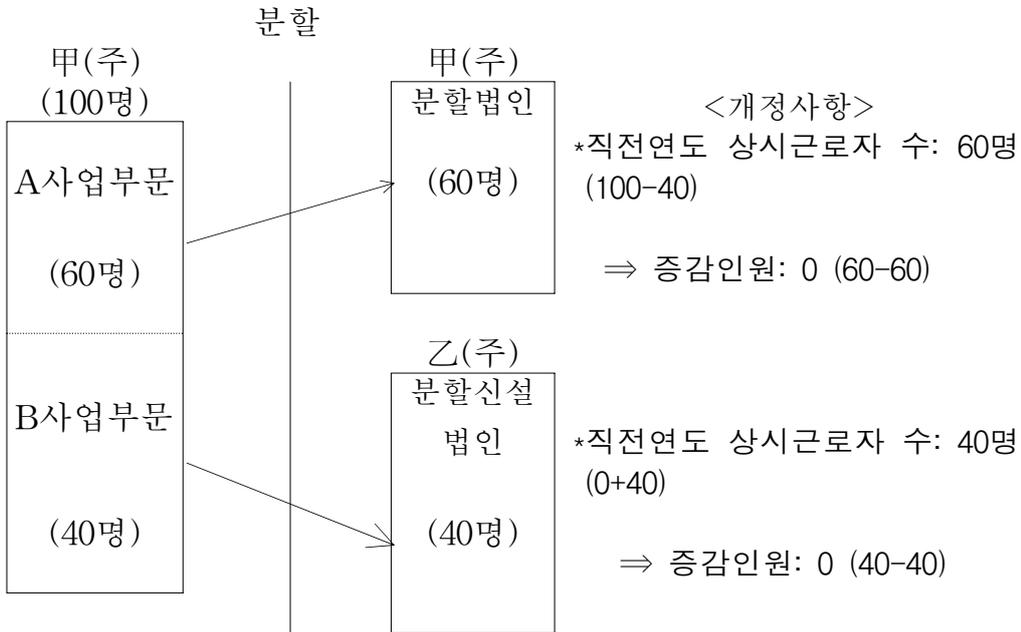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증감된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0</li> <li>○ 법인전환, 폐업 후 재개업: 종전사업의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li> <li>○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li> <li>- 종전사업을 승계한 기업: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전사업을 승계시킨 기업: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li> </ul>

(2) 개정이유

- 합병·분할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에 증감이 없음을 명확화

**참고**

**분할에 따른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



10.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p><input type="checkbox"/>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신청자) 중소기업</li> <li>○ (고용·복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일반고등학교 졸업일 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닌한 자를 고용</li> <li>- (복직) 상기 고용된 자가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복직</li> </ul> </li> </ul> <p>*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액공제) 복직 후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10%</li> </ul> <p>* 근로대가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비용 (퇴직소득 및 퇴직급여총당금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기한) '17.12.31.</li> </ul> <p>※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amp;D비용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p>

(2) 개정이유

- 병역이행 후 복직시키는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군 미필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

11.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0의3)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고용유지 중소기업* *매출액 또는 생산량 10%이상 감소 또는 재고량 50%이상 증가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input type="checkbox"/> 소속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소득 공제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 '12.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 '15.12.31(3년 연장)

(2) 개정이유

- 경영상 어려움에도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를 지속 지원

## IV. 기타 조세특례

### 1. 사업전환·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3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5년이상 영위한 업종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다른 지원업종으로 전환 ** FTA피해업종을 다른 지원업종으로 전환 ○ 소득세·법인세 4년간 50% 세액감면 ○ 적용기한 : '12.12.31	○ 적용기한 : '15.12.31(3년 연장)

#### (2) 개정이유

-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

2.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64)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 4년간 50% 감면  * 인구 20만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 개발촉진지구,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 적용기한 : '12.12.31	○ 적용기한 : '15.12.31(3년 연장)

(2) 개정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지원

### 3.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조특법 §85의6)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장애인표준사업장 : 장애인수 10인 이상(고용비율 30%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 등의 기준을 갖춘 사업장	<input type="checkbox"/> 감면 확대 ○ 4년간 50% → 5년간 50%

#### (2) 개정이유

-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및 인정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부터 적용

#### 4.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4)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 세액공제  ○ 시설 : 종업원용 기숙사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국민주택 직장어린이집, 장애인·노인· 임산부 편의증진시설, 종업원용 휴게실·체력단련실 등  ○ 공제율 : 7%*  * 지방 미분양 기숙사·임대주택과 직장 어린이집 : 10%  ○ 적용기한 : '12.12.31	           ○ 적용기한 : '15.12.31(3년 연장)

##### (2) 개정이유

- 주거 안정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자 복지증진시설투자 유도

5.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2)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감면대상 소득: 산림경영계획,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에 의한 산림, 채종림, 산림보호구역 산림을 10년 이상 조림한 후 벌채·양도한 소득 * 산림자원의 조림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면액 : 벌채, 양도소득의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 적용기한 : '12.12.31	○ 적용기한 : '15.12.31(3년 연장)

(2) 개정이유

-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저탄소·녹색성장을 지원

6.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 : 직전연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분</li> <li>- 단, 직전연도 제3자 물류비 중이 30% 미만이나 당해연도 제3자 물류비중이 30% 초과시 그 30% 초과분</li> <li>○ 공제율 : 3%</li> <li>○ 적용기한 : '12.12.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기한 : '15.12.31(3년 연장)</li> </ul>

(2) 개정이유

- 전문물류기업 육성을 통한 물류비 절감 지원

7. R&D시설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학교 추가  
(조특법 §104의1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R&amp;D시설*의 학교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p> <p>*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p> <p>** 기부금액의 10% 세액공제</p> <p>○ 기부받는 학교의 범위</p> <p style="padding-left: 20px;">- 대학교</p> <p style="padding-left: 40px;">&lt;추 가&gt;</p>	<p style="padding-left: 20px;">-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p> <p style="padding-left: 40px;">*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p>

(2) 개정이유

- 특성화고 등의 직업훈련시설 확충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시설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104의24, §118의2, 조특령 §104의21, 제115조의2)

8-1 해외사업장 유지방식 추가 및 해외사업장 철수기한 연장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해외사업장 철수방식에 대한 세액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요건 (a) 또는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先복귀-後폐쇄) 국내사업장 개설 후 2년 이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li> <li>② (先폐쇄-後복귀)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1년내 국내사업장 개설</li> </ul> </li> <li>○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해외사업장 철수기한 연장 (2년 → 4년)</li> <li>② (좌 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 중소기업의 자본재 수입에 대해 5년간 100%감면</li> </ul> <p><input type="checkbox"/> 해외사업장 유지방식*에 대한 세액감면</p> <p>* 부분매각, 생산물량 감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요건) 국내생산시설이 없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일 것</li> <li>○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li> <li>- 관세: 자본재 수입에 대해 5년간 50% 감면</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12.12.31</p>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15.12.31(3년 연장)</p>

(2) 개정이유

- 해외사업장의 국내 복귀를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 8-2 국내복귀대상 사업자의 범위(조특령 §104의21)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내복귀대상 사업자 ○ 내국인	<input type="checkbox"/> 사업자의 범위 조정 ○ 해외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 포함) 또는 내국법인(외국인투자기업 포함)

###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 8-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신설 (조특령 §115조의2 신설)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국내복귀기업의 관세감면 대상 기준 등 규정 ○ 감면대상 자본재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자본재 - 국내복귀기업 선정 후 5년 이내 수입되는 자본재 ○ 추정 기준, 감면신청 절차 등

###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 9.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104의25)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p> <p>* 다수의 판매자(정유사 등)와 수요자(대리점, 주유소 등)가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한국거래소 온라인 사이트</p> <p>○ 공제대상자 :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한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유 등) 공급자</p> <p>○ 공제율 : 공급가액의 0.3% (산출세액의 10% 한도)</p> <p>○ 적용기한 : '13.12.31</p>	<p>○ 공제율 인상 (0.3%→0.5%)</p>

### (2) 개정이유

- 석유제품 경쟁촉진 및 거래투명성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제주개발관련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121의8, §121의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p> <p>* 제주특별자치도에 생물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p> <p><input type="checkbox"/>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p> <p>* 관광산업 등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제주도 내에 지정된 투자진흥지구</p> <p>○ 적용기한 : '12.12.31</p>	<p>○ 적용기한 : '15.12.31(3년 연장)</p>

(2) 개정이유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조성 지원

1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1의2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아시아 문화의 연구 등 일련의 활동이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도시(광주시 지정) ○ 적용기한 : '12.12.31	○ 적용기한 : '15.12.31(3년 연장)

(2) 개정이유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지원

12. 금융중심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1의2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국제금융허브 조성을 위해 국가적 지원이 실시되는 곳으로 금융위가 지정하는 지역(부산 문현동)  ○ 적용기한 : '12.12.31	○ 적용기한 : '15.12.31(3년 연장)

(2) 개정이유

- 금융중심지 조성을 지원

13. 기업도시 등 지역개발 세액감면 대상지역 추가  
(조특법 §121의1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업도시 등 지역개발을 위한 세액감면 ○ 대상지역 - 기업도시 - 신발전지역 <추 가> ○ 감면내용 :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2012 여수Expo 조성사업구역 ○ (좌 동)

(2) 개정이유

-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시설 등의 사후활용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14. 기업도시·신발전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등 (조특법 §121의17, 법률 제9921호 부칙 §7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업도시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 적용기한 : '12.12.31 ○ 입주기업 경과조치* * '12.12.31까지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이 '14년말까지 입주시 세액감면	○ 적용기한 : '15.12.31(3년 연장) ○ 입주협약·양해각서 체결시기에 대한 경과조치 기한 1년 연장 ('12.12.31 → '13.12.31) - 다만, '13년에는 수도권 기업이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

(2) 개정이유

- 기업도시 조성지원

15.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간 중복지원 배제 기준 명확화  
(조특법 §127⑩)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간 중복 지원의 배제</p> <p>○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요건을 둘 다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사업장을 구분 경리하여 세액 감면과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 하는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 하지 않음을 명확화</p>

(2) 개정이유

- 사업장 구분경리시의 중복지원 배제기준을 명확화
-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법령에 반영(조세특례제도과-284, '10.3.23)

## 16. 법인·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 조정(조특법 §13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일반법인 최저한세율</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과세표준 규모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억원~ 1000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억원 초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11%</td> <td style="text-align: center;">14%</td> </tr> </tbody> </table> <p>○ 중소기업 : 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예기간 이후 1~3년간 : 8%</li> <li>- 그 후 2년간 : 9%</li> </ul> <p>○ 개인 사업소득자 최저한세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전 산출세액의 35%</li> </ul>	과세표준 규모별			100억원 이하	100억원~ 1000억원	1000억원 초과	10%	11%	14%	<p>○ 일반법인 최저한세율 조정</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과세표준 규모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억원~ 1,000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억원 초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 style="text-align: center;">16%</td> </tr> </tbody> </table> <p>○ (좌 동)</p> <p>○ 개인 사업소득자 최저한세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전 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분: 현행과 같음</li> <li>- 감면전 산출세액 3천만원 초과분: 45%</li> </ul>	과세표준 규모별			100억원 이하	100억원~ 1,000억원	1,000억원 초과	10%	12%	16%
과세표준 규모별																			
100억원 이하	100억원~ 1000억원	1000억원 초과																	
10%	11%	14%																	
과세표준 규모별																			
100억원 이하	100억원~ 1,000억원	1,000억원 초과																	
10%	12%	16%																	

### (2) 개정이유

- 납부여력이 있는 대기업 등의 과도한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17.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조특법 §142, §142조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조세지출예산서 ○ 근거법규: 「국가재정법」 <추 가>	<input type="checkbox"/> 「조세특례제한법」 상 근거마련 - 소관부처, 정책목표, 목표 달성도, 세출예산과의 연계내용 등 성과정보 추가
<input type="checkbox"/>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각 부처에 통보(3.31.까지) <추 가>	<input type="checkbox"/>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심의
<input type="checkbox"/> 각 부처는 조세감면 건의서 및 평가서를 작성하여 매년 5.31.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input type="checkbox"/> 제출기한 단축 ○ 5.31. → 4.30.
<input type="checkbox"/> 조세감면평가서* 내실화 * 적용기한 종료대상, 시행후 2년 미경과, 감면확대 사항 등 <신 설>	<input type="checkbox"/> 각 부처의 조세감면평가서 전담기관 등에서 작성지원 및 평가 검증
<신 설>	<input type="checkbox"/> 주요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전담기관 등에 조사·연구 위탁

### (2) 개정이유

- 조세지출에 성과관리 요소 도입

18. 조세지출 종합평가 대상 및 조세지출예산서 작성방법  
(조특령 §135, 135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조세지출 종합평가 대상 (i) 분야별로 일괄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ii) 향후 지속적 감면액 증가가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 (iii)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층적인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조세지출예산서 세부작성사항 ○ 작성 내용 및 자료제출 요청 대상 기관 등 ※ 조세지출예산서 근거법규 이관(국가재정법→조특법)에 따른 위임규정 이관

(2) 개정이유

- 조세지출 성과관리 신설에 따른 종합평가 대상 규정 및 조세지출예산서 작성방법 상세화



## 국제조세 분야



## [국제조세 분야]

### 【개정안 주요내용】

#### I.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개선
  - 1-1 특수관계 판정기준 보완
  - 1-2 배당간주 적용대상 확대
  - 1-3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보완
2.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정 기준 보완
3. 장비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
4. 외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정보교환을 위한 금융정보 요구권 신설
5.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 5-1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 5-2 보유계좌잔액 계산 기준 변경
  - 5-3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 5-4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
6.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반환금액의 귀속 사업연도 명확화

#### II. 비거주자 · 외국인 관련

1. 국외 공동사업체(외국단체)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 1-1 외국인 판정기준 명확화
  - 1-2 외국단체에 대해 동업기업 조세특례 허용
  - 1-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상 구분 및 과세방법 명확화
2. “국내사업장 - 국외 본(지)점간 거래(“내부거래”)에 대한 독립기업 원칙 적용 명확화
3.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
4. 외국교육기관 운영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5. 거주자가 내국법인·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 지급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6.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연금소득 신설 등
7.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확대
8. 비거주자에 대한 근로·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정
9. 외국법인의 국내자산 수증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명확화
10. 외국법인의 부동산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세지 명확화
11.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동업기업과세특례 개선
12. 양도시 과세가 면제되는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 Ⅲ. 외국인투자 등 조세감면 관련

1.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일몰연장
2. 소득세감면 외국인기술자 범위확대
3.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4. 외국인투자지역 감면대상 업종 확대
5. 외국투자자의 배당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식 개선
6.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외국투자자에 대한 부당한 대여금 제외
7.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규정 합리화
8. 비거주자의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9.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 접수창구 확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률: 제11606호(2013.1.1)
- 대통령령: 제24365호(2013.2.15)
- 기획재정부령 : 제336호(2013.2.23)

# I.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 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개선

### 1-1 특수관계 판정기준 보완(국조법 §17①, 국조령 §30의2 신설)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는 내국인(거주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p> <p>○ 특수관계 판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li> <li>- 제3자가 내국법인·외국법인의 주식을 각각 50% 이상 소유 또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법인</li> </ul>	<p>○ 특수관계 판정기준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인과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가 직·간접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하여 50% 소유여부 판정</li> <li>*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기목 및 니목</li> <li>** 비거주자가 해당 내국인을 통하여 외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소유하는 경우에는 미포함</li> <li>- (좌 동)</li> </ul>

#### (2) 개정이유

- 내국인이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와 합하여 외국법인에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한 경우에도 동 제도가 적용되도록 개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2 배당간주 적용대상 확대(국조법 §17②, 국조령 §34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배당간주가 적용되는 내국인 ○ 가족소유지분*을 포함하여 외국 법인의 지분을 10%이상 직·간접 보유한 주주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내국인 범위 확대 ○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소유지분*을 포함하여 10% 소유 여부 판정 *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가목 및 나목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2) 개정이유

- 외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인이 특수관계인과 분산 출자한 경우에도 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 다만, 그 주식의 법적 소유권자는 특수관계인이므로 내국인의 배당간주액 산정시에는 합산하지 아니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3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보완  
(국조법 §18의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배제 요건</p> <p>① 자회사*의 주식등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p> <p>* ①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40% 이상 소유, ② CFC 과세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p> <p>② 같은 지역 또는 국가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배당소득이 지주회사 전체 소득금액의 90% 이상일 것</p> <p>- 다만,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지주회사 전체 소득금액에서 제외</p>	<p>- 자회사*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도 지주회사 전체 소득금액에서 제외</p> <p>* 영 제36조의3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회사</p>

(2) 개정이유

- 주식등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득수취 비율 요건 판정시 주식양도소득을 고려하여 판정하도록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정 기준 보완  
 (국조령 §4③, §6의2③~⑤ 신설, 국조규칙 §2의3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지급보증 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p> <p>* 국세청에서는 자체 개발한 모형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                      (재무비율에 따른 신용등급 산정 후 이에 따른 부도율, 회수율 등을 기초로 산출한 가산금리 차이 등을 활용)</p>	<p>□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별도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규정하여 명확화</p> <p>○ 정상가격 산출방법</p> <p>① 비용접근법 : 보증인이 지급보증 거래로 부담하는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산출</p> <p>② 편익접근법 : 피보증인이 지급보증 거래로 얻는 기대편익을 기초로 산출</p> <p>* 재무정보 외에 비재무적 정보를 추가하고 합리적인 자료를 이용한 부도율·회수율 등 산정 허용</p> <p>③ 비용·편익접근법 :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 편익을 기초로 산출</p> <p>○ 납세자가 적용한 다음 가격은 정상가격으로 간주</p> <p>- 지급보증 계약 체결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에 의한 수수료</p> <p>* 산정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인정</p> <p>-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p> <p>* 편익접근법</p>

(2) 개정이유

-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지급보증 하는 분부터 적용

### 3. ‘장비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 (국조법 §29①)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장비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세율</p> <p>○ 소득세법·법인세법</p> <p>- 선박·항공기 임대소득과 함께 임대소득으로 구분</p> <p>- 세율: 2%</p> <p>○ 대다수 조세조약(63개국)</p> <p>- 사용료소득으로 구분</p> <p>* 소득구분은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 (국조법 §28)</p> <p>- 세율: 제한세율 0~15%</p> <p>* 소득세법·법인세법: 20%</p> <p>⇒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된 장비 사용대가에 대한 세율적용 방법 불명확(2% or 제한세율)*</p>	<p>□ 장비의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방법 명확화</p> <p>○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된 경우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0~15%) 적용</p>

#### (2) 개정이유

- 장비의 사용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체약 상대국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과세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외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정보교환을 위한 금융정보요구권 신설  
(국조법 §31③신설, 국조령 §47②, ⑤, ⑥)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자동금융정보교환을 위한 금융정보 요구 ○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정보교환을 위해 필요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금융정보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
<input type="checkbox"/> 금융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 ○ 표준양식에 명의인의 인적사항등을 기재하여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	<input type="checkbox"/> 자동금융정보교환에 대한 특례 ○ 자동금융정보의 경우 명의인의 인적사항 미기재
<신 설>	<input type="checkbox"/> 요구내용 및 요구대상 금융회사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기간동안 최초 1회 요구로 이후 요구를 같음
<신 설>	<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제공명세서를 개별 점포별로 작성하여 제출 ○ 요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최초의 요구서로 같음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날까지)에 제출* * 정보통신망 또는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

(2) 개정이유

- 현행 정보교환협정 및 OECD 조세행정공조협약에 규율된 자동정보교환 이행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체약상대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 5.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개선

### 5-1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국조법 §34③, 국조령 §49③, §50④)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다음 계좌 - 은행업무 관련 개설 계좌 - 증권 거래 관련 개설 계좌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신고대상 확대 ○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금융자산 관련 계좌로 확대 ] (좌 동) - 채권, 파생상품, 보험 등 추가
<input type="checkbox"/> 타인명의 계좌에 대한 신고의무 ○ 다음의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여 신고의무를 면제 - 국내 또는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 - 국내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해외증권에 투자한 자	<input type="checkbox"/>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는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 - (좌 동)

#### (2) 개정이유

- 효과적인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계좌를 확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4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

5-2 보유계좌잔액 계산 기준 변경(국조법 §3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연중 최고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좌내역*을 신고 * 계좌보유자 성명·주소 등 신원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연중 최고잔액 등 ○ 연중 최고잔액 계산기준 : 계좌별 1일 보유계좌 잔액 합산	○ 연중 최고잔액 계산기준 변경 : 계좌별 월말 계좌잔액 합산

(2) 개정이유

-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4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

5-3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국조법 §34의2, 기본법 §85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형사처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미신고 금액 등의 10%이하 벌금</li> <li>○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li> <li>○ 형사처벌시 과태료는 미부과</li> </ul>
<input type="checkbox"/> 명단공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li> <li>○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li> <li>○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 조세범</li> </ul>	<input type="checkbox"/> 명단 공개 대상에 추가  (좌 동)
< 추 가 >	<input type="checkbox"/>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개정이유

- 제재 강화를 통한 제도 실효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형사처벌) 2013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4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명단공개) 2012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3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

5-4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  
(기본령 §65의4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포상금 지급기준 ○ 과태료금액의 일정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도 1억원)		<input type="checkbox"/>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 ○ 신고의무 위반 제재방법에 따라 지급기준을 구분(한도 10억원) ① (과태료, 벌금형) 과태료, 벌금액의 일정 금액	
과태료금액	지급률	과태료금액등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5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b>100분의 15</b>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b>3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b>
5억원 초과	1천9백만원+5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2	5억원 초과	<b>6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b>
○ 과태료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포상금 지급 제외		② (징역형)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금액을 산정한 후 ①의 기준을 적용	
<input type="checkbox"/> 포상금 지급시기 ○ 해당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 - 과태료금액이 납부되고 불복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 처분이 확정된 날 <추 가>		<input type="checkbox"/> 형사처벌 지급시기 추가 -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	
○ (좌 동)		○ (좌 동)	

(2) 개정이유

-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과 형사처벌이 도입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율을 변경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정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6.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반환금액의 귀속 사업연도 명확화(국조령 §15의2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익금에 산입된 금액 반환시 반환 금액의 귀속 사업연도  <input type="checkbox"/>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한 이전소득금액 익금산입액 중 일부만을 반환받은 경우 - 반환금액의 귀속 사업연도 적용순서에 관한 규정 없음	<input type="checkbox"/> 일부 반환금액의 귀속 사업연도 명확화  <input type="checkbox"/> 먼저 발생한 이전소득금액을 우선하여 반환받은 것으로 간주

(2) 개정이유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이전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그 중 일부만을 반환받은 경우,
  - 반환금액의 과세연도 적용순서에 따라 소득처분 및 반환이자의 금액이 달라지므로 적용순서를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반환받는 경우부터 적용

## Ⅱ. 비거주자·외국법인 관련

### 1. 국외 공동사업체(외국단체)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 1-1 외국법인 판정기준 명확화 (법인법§1[3]·법인령 §1②)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외국단체에 대한 과세기준 ○ 외국법인 : 법인세 과세 * '법인'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이 없음  ○ 기타 외국단체 : 소득세 과세  < 신 설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외국단체의 과세기준 명확화 ○ '법인'의 기준 신설 -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외국단체 (i)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ii)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단체 (iii)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IV) 그밖에 해당 외국의 단체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국내 사법상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의 단체  ○ 위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 외국단체로 분류  <input type="checkbox"/> 국세청장이 외국단체의 유형별 목록을 고시하도록 근거마련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인 기준의 적용은 조세조약상 실질귀속자 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2) 개정이유

- 외국단체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투자자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안정성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전에 국내에 사업장등록을 한 외국단체가 법인판단기준 적용에 따라 사업자등록한 내용이 판정결과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

1-2 외국단체에 대해 동업기업 조세특례 허용

(조특법 §100의15① · §100의26 · 조특령 §100의15② · §100의16 · §100의2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 민·상법상 조합 등 국내 사업체 <추 가>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확대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단체 * 외국 단체의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특례적용 (i) 동 특례를 적용받는 국내 사업체(PEF제외)와 유사한 단체 (ii)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단체 (iii) 외국단체의 설립지국에서 동업기업 과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 받는 외국단체
<input type="checkbox"/>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조합)의 경우 ○ 그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사업연도등 관련 규정을 적용 * 과세연도, 납세지, 사업자등록, 세액공제·세액감면, 원천징수·가산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input type="checkbox"/> 외국단체가 동업기업인 경우 ○ 그 동업기업을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 * 국내단체의 경우: 내국법인 외국단체의 경우: 외국법인

(2) 개정이유

- 국내 사업체와의 형평을 기하고 다양한 형태의 외국투자 유치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적용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상 구분  
 및 과세방법 명확화 (소득법 §2③, 소득령 §3의2·§180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의 과세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의 구분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과세</li> <li>○ 과세방법(소득칙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익의 분배방법·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 공동사업으로 보아 과세* * 1비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과세</li> <li>- 이익의 분배방법·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li> </ul> </li> </ul>	<p>□ 단체의 구분 및 과세방법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단체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에 따라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소재) 거주자</li> <li>□ (국외 소재) 비거주자</li> </ul> </li> </ul> </li> <li>○ 시행령으로 규정하여 상향 입법화하고 과세방법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사업장이 있는 단체 : 거주자와 동일하게 공동사업 과세방식 적용</li> <li>· 국내사업장이 없는 단체 : 구성원별로 과세</li> </ul> </li> <li>- 이익의 분배방법·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li> </ul> </li> </ul>

(2) 개정이유

- 법인 아닌 단체의 과세방법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2. “국내사업장 - 국외 본(지)점간 거래(‘내부거래’)”에 대한 독립  
기업원칙 적용 명확화(소득령 §181의2, 법인령 §13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내부거래에 따른 소득의 인식 및 정상가격 적용 여부 불명확</p>	<p>□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도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해 계산된 소득*이 과세표준 계산시 포함됨을 명확화 * 국조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정방법 준용</p>
<p>□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의 손금 산입에 관한 규정</p>	<p>○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약정 등에 따라 실제 지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p>
<p>○ 자금대차거래: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서만 인정</p>	<p>- 다음의 비용은 손금등에 산입하지 아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대차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li> <li>·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li> </ul>
<p>○ 본점 및 국외의 다른 지점의 공동경비: 국내사업자에 배분</p>	<p>○ (좌 동)</p>

(2) 개정이유

- 국제기준의 내용에 따라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3.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

(소득법 §57, 소득령 §117⑩, 법인법 §57, 법인령 §94⑧·⑮)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원천소득은 각 항목의 총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직·간접경비를 차감한 금액 * 서식으로 규정</li> <li><input type="checkbox"/> 외국자회사가 외국 손회사등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중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50%) 공제를 적용받는 대상 * 외국 손회사(원천징수세액), 제3국 지점(지점세)</li> <li>○ 공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자회사가 자회사 소재지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금액     &lt;추 가&gt;</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명확화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좌 동)</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원천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직·간접 비용을 차감한 금액 * 국내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용의 차감에 따른 한도액 감소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 불가</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공제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외국자회사가 손회사등 소재지국 원천소득에 대해 자회사 소재지에서 비과세·면제 받는 경우의 해당 세액</li> </ul> </li> </ul>

#### (2) 개정이유

-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명확화 및 이중과세 조정방식의 차이에 따른 과세불형평 해소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 외국교육기관 운영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법인령§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p> <p>○ 수익사업의 범위</p> <p>- 사업소득</p> <p>· 다만, 「초·중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 등*은 제외(법인령§2①)</p> <p>*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상 학교,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p> <p>-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p>	<p>○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 서비스업의 범위 확대</p> <p>-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도 제외</p> <p>· 다만, 국내 분교가 정관등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의 국외 본교송금이 가능하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 과세대상</p>

(2) 개정이유

-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5. 거주자가 내국법인·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 지급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소득법§81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지급명세서 제출의무</p> <p>①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p> <p>②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p> <p>③ 내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p> <p>④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p> <p>□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p> <p>○ 부과대상: 제출기한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경우 2% 가산세 부과</p> <p>- 거주자·비거주자가 미제출 : ①, ②</p> <p>※ ③, ④ 미규정</p> <p>- 내국법인·외국법인이 미제출 : ①~④</p> <p>* (참고) 재국조-474('11.10.7) : 비과세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 불가</p>	<p>○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p> <p>- ①~④</p> <p>- 좌 동</p>

(2) 개정이유

- 거주자·비거주자도 내국법인·외국법인과 동일하게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과세대상소득 지급시 후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6.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연금소득 신설 등  
 (소득법 §119[8] · [8의2신설] · [12], §121②, §122, §126, 소득령 §179⑨삭제)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소득법 §1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소득(1호) ...</li> <li>○ 퇴직소득(8호) ※ 국내근로에 따른 연금소득 포함 ⇒ 거주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 ...</li> <li>○ 기타소득(12호) ※ 국내 연금저축 가입후 지급 받는 연금 ※ 연금계좌의 중도해지하거나 만기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li> </ul> <p><input type="checkbox"/> 과세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소득, 부동산양도소득 : 거주자의 과세방법 준용</li> <li>○ 그 밖의 소득: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 종합과세</li> <li>- 그 밖의 비거주자: 분리과세</li> </ul> </li> <li>※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과세방법 준용</li> </ul>	<p><input type="checkbox"/> 연금소득 신설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소득(8호의2)</li> <li>○ 연금소득(8호의2)</li> <li>○ 기타소득에 포함</li> </ul> <p><input type="checkbox"/>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신설 (제121조 제2항, 제122조, 제12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거주자의 과세방법 준용</li> </ul>

(2) 개정이유

- 거주자와 동일하게 비거주자가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에 연금소득으로 구분하고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확대(소득령§216의2①[7], 법인령§162의2①[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과세·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비과세·면제신청서 미제출시 제외) (제1호)</li> <li>○ 이자·배당·선박등임대·사용료·유가증권양도·기타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제2호)</li> <li>○ 부동산임대소득 (제3호)</li> <li>○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제4호)</li> <li>○ 복권, 슬롯머신 등 당첨금 품등 기타소득 (제5호)</li> <li>○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한 국내원천소득 (제6호)</li> <li>○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제7호)</li> <li>○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금등 잔액 30만원미만으로서 1년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등</li> </ul> </li> </ul>	<p>□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소득 축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양도소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li> </ul> </li> </ul>

(2) 개정이유

- 과세관청의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거래에 대한 세무상 적정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8. 비거주자에 대한 근로·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정  
(소득법§164의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기</p> <p>○ 일반적인 경우 :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p> <p>※ 근로소득·퇴직소득 포함</p> <p>* 거주자의 근로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p> <p>○ 휴·폐업의 경우 :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p>	<p>○ 근로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정 :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p>

(2) 개정이유

- 비거주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거주자와 동일하게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9. 외국법인의 국내자산 수증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명확화  
(법인법 §98①[3], 법인령 §137⑨)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외국법인의 기타소득 과세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종합과세 신고·납부</li> <li>- (과세표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li> <li>○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분리과세 원천징수(20%)</li> <li>- (과세표준) 지급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법인의 국내자산 수증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시 세율 적용 대상금액 명확화</li> <li>- 국내자산 수증이익은 “취득 당시(증여일)의 시가”</li> </ul>

(2) 개정이유

-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자산 수증이익의 경우 증여자산 가액의 평가방법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10. 외국법인의 부동산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명확화 (법인령 §7②[1])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p> <p>○ 원천징수의무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p> <p>* (개인) 주된 사업장 소재지등 (법인)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등</p> <p>○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된 사업장 소재지 등을 가지지 않은 경우</p> <p>- 유가증권 양도소득: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p> <p>- 그 밖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p>	<p>○ 납세지 보완</p> <p>-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을 추가</p>

### (2) 개정이유

- 부동산주식의 경우에도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해당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장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로 규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1.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동업기업과세특례 개선  
(조특법 §100조의18, 조특령 §100의18 ⑨, ⑫)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국내 PEF에 수동적 동업자로 투자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과세</p> <p>○ PEF에서 배분받는 소득을 원천에 관계없이 모두 배당 소득으로 과세</p> <p>┌ 조세조약 체결시 : 5~15% 세율 └ 조세조약 미체결시 : 20%</p> <p>※ 국외 PEF를 통해 국내 투자시 소득 원천에 따라 과세 :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주식양도소득은 대부분 거주지국에서 과세되므로 우리나라에서 비과세</p>	<p>□ 국내 PEF에 투자한 외국 연·기금 등에 대한 특례 인정</p> <p>○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기금 등*으로서 배분 받는 소득이 해당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p> <p>┌ 이자·배당소득 : 5~15% 세율 └ 주식양도소득 : 조약상 거주지국 과세 채택시 비과세</p> <p>*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조약 체결국에서 설립된 다음중 하나의 기관</li> <li>• 정부, 지자체, 중앙은행, 한국투자공사법에 준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투자기관</li> <li>• 「국민연금법」등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의 연금</li> <li>•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li> </ul> <p>- 분배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비과세 등으로 실질적 조세부담이 없을 것</p>

(2) 개정이유

- 외국 연·기금 등이 국내PEF에 투자할 때와 국외 PEF에 투자할 때의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내 PEF의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12. 양도시 과세가 면제되는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조특령 §18④[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이 발행한 다음 유가증권을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p> <p>○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중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외화증권</p> <p>- 다만, 과세대상 주식 등을 기초로 발행된 예탁증서를 양도하는 일정한 경우 제외</p> <p>○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해당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것</p> <p>- 다만,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양도하는 것은 제외</p>	<p>□ 면세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p> <p>○ 비거주자등이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주식분산요건 충족을 위해 모집·매출되는 주식 등 취득·양도시 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양도한 것으로 간주</p>

### (2) 개정이유

- 내국법인의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Ⅲ. 외국인투자 등 조세감면 관련

#### 1.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일몰연장(조특법§2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면제한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면제</p> <p>* 농·축·수·임산물 및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사업(가공업 포함)</p> <p>○ (적용대상) 내국법인</p> <p>○ (감면대상)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자원 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p> <p>※ (선택적용) ①과 ②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적용 가능</p> <p>①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 §22)</p> <p>②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법인세법 §57③)</p> <p>○ 일몰기한: '12.12.31</p>	<p>○ 일몰연장: '15.12.31</p>

##### (2) 개정이유

- 투자위험이 높은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지원
  - 현재 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체결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동 특례유지를 통한 수익성 보전 필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2. 소득세감면 외국인기술자 범위확대(조특령 §16①)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특정 경력 및 학위*를 소지하고 다음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 2년간 근로소득세 50%감면 * 경력 5년 or 경력 3년 + 학사 학위 이상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추 가>	<input type="checkbox"/> 대상추가  (좌 동)  ○ 연구개발서비스업, 의료업(국제의료 관광코디네이터에 한정)

### (2) 개정이유

- 연구개발서비스업 및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산업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조특법 §85의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지원 ○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내국법인에게 보유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 상당액을 신주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일몰기한: '12.12.31	○ 일몰 2년간 연장: '14.12.31

(2) 개정이유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유치 및 개발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4. 외국인투자지역 감면대상 업종 확대(조특령 §116의2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조세 감면*대상 업종 및 최소투자 금액</p> <p>* 법인세 등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 3천만불</li> <li>○ 관광업 : 2천만불</li> <li>○ 물류업, SOC : 1천만불</li> <li>○ R&amp;D : 2백만불</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감면대상 추가</p> <div style="margin-left: 20px;"> <p>○ (좌 동)</p> <p>○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 3천만불</p> </div>

(2) 개정이유

- 고부가가치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5. 외국투자자의 배당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식 개선  
(조특령 §116의2⑬, 조특칙 별지 서식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p> <p>○ 총배당액을 과세소득분과 감면소득분으로 각각 구분하고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 산출 (예규)</p> <p>○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 서식 부재</p>	<p>□ 배당소득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식 개선</p> <p>○ 감면후 배당세액과 총배당액을 기준으로 제한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적은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산출</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납부세액= Min[①, ②]</p> <p>① 감면후 배당세액= (총배당액-감면대상배당액)×국내세율</p> <p>② 총배당액×제한세율</p> </div> <p>○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 신설</p>

(2) 개정이유

-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적용방법 명확화
  - 국내세율을 적용한 감면후 배당세액과 총배당액에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

6.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외국투자자에 대한 부당한  
대여금 제외 (조특법 §121의2①, 조특령§116의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다음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 금액에서 제외</p> <p>○ 내국인이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시 내국인지분상당 투자액</p> <p style="text-align: center;">&lt; 추 가 &gt;</p>	<p><input type="checkbox"/> 외국투자자에 대한 대여금을 추가</p> <p>○ (좌 동)</p> <p>○ 외투기업 및 외투기업의 내국인 주주*가 외국투자자에게 대여한 금액</p> <p>*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내국인 주주에 한정</p> <p><input type="checkbox"/> 제외대상 대여금이 존재하는 경우 감면대상 대여금 배제방법</p> <p>*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비율 ×</p> $\frac{\text{외국투자자의 투자금액 적수} - \text{제외대상 대여금 적수}}{\text{외국투자자의 투자금액 적수}}$

(2) 개정이유

- 형식적인 외국인투자에 의한 부당한 조세감면을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7.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규정 합리화  
(조특령§116의7, §116의8, §116의11③)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외국인투자 감면후 감면세액 추징사유 및 추징세액 <input type="checkbox"/> 외국투자자의 주식 양도 (감면개시후 3년내 양도시) : 법인세, 관세 감면세액* × (1-경과월수/36) × 주식양도비율 <input type="checkbox"/>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폐업, 조세감면기준 불충족, 시정명령 불이행 : 소급하여 5년(관세 3년)이내 감면세액 <input type="checkbox"/> 2이상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방법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외투기업 폐업에 의한 감면세액 추징시 폐업일 기준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 <추 가>	<input type="checkbox"/> 추징강화 및 추징사유 구체화 <input type="checkbox"/> 주식양도시 추징강화 - (법인세): 감면기간(5~7년)내 양도시 소급하여 5년내 감면세액 × 주식양도비율 - (관세): 소급하여 3년내 감면세액 중 양도후 외국투자자의 잔여출자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자본재에 대한 감면세액 <input type="checkbox"/> 조세감면기준 불충족 사유 구체화 : 투자금액, 업종, 시설설치, 고용인원 기준 위배시 적용 <input type="checkbox"/> 2이상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세액 한도내에서 순차적으로 추징사유 적용 <input type="checkbox"/> 다음 중 빠른 날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세무서장이 직권말소한 경우 등록말소일

(2) 개정이유

- 감면세액 추징방법을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8. 비거주자의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조특법 §21의2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과세대상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비거주자, 외국법인</li> <li>-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금융 감독원의 약관승인을 얻은 외화정기예금</li> <li>-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계약기간까지 원금·이자의 인출이 없을 것</li> <li>-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li> </ul> </li> <li>○ 감면추징 : 계약의 해지나 중도 인출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도에 인출 및 해지한 경우라도 1년 동안 인출없이 예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li> </ul> </li> <li>○ 계약갱신시 간주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과세요건을 갖춘 예금으로 갱신하는 경우 갱신일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간주</li> </ul> </li> <li>○ 일몰 : 비거주자가 '15년 12. 31. 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li> </ul>

(2) 개정이유

- 외화조달구조의 안정화 및 외화조달비용 절감을 위해 비거주자의 1년 만기 이상 외화예금에 대한 세제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정기외화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9.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 접수창구 확대(조특령 §116의13)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조세감면신청서 접수기관  ○ (원칙) 기획재정부장관 ○ (예외)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관리위원장* * 감면결정·통지 권한까지 보유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input type="checkbox"/> 감면신청 접수창구 추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 외국환은행의 장 * 접수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2) 개정이유

-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활성화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 【개정된 주요내용】

### I. 과·면세 및 영세율 범위 조정

1. 채권추심업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종료
2.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기관에 산학협력단 추가
3. 산학협력단의 학교시설 무상임대에 대한 부가세 면제
4. 은행법령 개정에 따른 면세대상 은행업 명확화
5.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교육용역 등 부가세 면제
6. 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7. 국립대학병원이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 명확화
8. 유방재건술을 과세대상 진료용역에서 제외
9. 개인택시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 국내개최 국제대회에 대한 세제지원
11.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범위 추가
12. 국제대회가 종료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삭제
13. 지방공기업의 정부업무대행단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범위 조정

### II.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계산의 합리화

1.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겸영시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기준 명확화
2. 사업자등록 하기 전의 매입세액공제 확대
3. 수용시 부가가치세 절차 편의 제고
4. 예정고지 산정 기준금액의 합리적 개선
5. 용역대가를 건물 등으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명확화

### III. 농·어민 및 중소기업 등 지원

1. 구내식당(공장·학교 등)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2. BTO 방식으로 건설한 학교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학교시설의 범위 명확화

3.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4. 부가가치세 등이 감면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5. 농어업 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6.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 개선
7. 농·수협 등의 소비대차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일몰 연장
8. 천연가스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9.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10.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영세율 일몰 연장
11.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 연장
12.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1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
14. 중소기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
15. 영세율 적용대상 임업인의 범위 조정

#### IV.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제도 보완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가공 및 위장 발급·수취 가산세 신설
2. 세금계산서 관련 규제 완화
3.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간 보완
4.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기준금액 조정
5. 세금계산서 선발급 요건 간소화
6.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낮은 가산세 적용기한 연장

#### V. 납세편의 제고 및 기타 과세제도 보완

1. 금지금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일몰 연장
2.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몰 연장
3. 면세유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4. 저유소를 제조업의 사업장 범위에서 제외
5. 폐업신고서 송부 방법 추가
6. 한국석유공사 비축용 석유를 외국법인에 소비대차로 공급시 재화공급 범위에서 제외
7. 국외 위탁가공을 위한 재화 반출시 수출 규정 적용 합리화

8.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대상 재수입재화의 범위 개선
9.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및 용역 공급규정 보완
10. 구매확인서 발급기관 추가
11. 영세율매출명세서
12. 납부의무면제자의 환급조문 정비
13. 동물진료 매출대장 관련 조문정비
14. 세종시 설치 등에 따른 조문정비
15. 세금계산서합계표 개별명세 작성의무 면제 범위 명확화
16. 100% 자료상 가산세 징수장소 일원화
17. 농·어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18. 면세유 한도량 신청시기 및 첨부서류 등 신설
19. 출고지시서 등 교부요건 명확화
20.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확대
21.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 명확화
2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변경에 따른 유형전환 시기 조정
23.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에 따른 절차규정 마련
24. 면세점 이용 편의 제고
  - 24-1 VAT 시내환급창구 허용 관련
  - 24-2 VAT 환급관련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반출확인방법 변경
  - 24-3 면세판매자의 VAT 신고 및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
  - 24-4 전자판매확인서를 통한 환급등의 특례
  - 24-5 제주도여행객 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를 미화기준으로 조정

**【부가가치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률: 제11608호(2013.1.1)
- 대통령령: 제24359호(2013.2.15)
- 기획재정부령: 제329호(2013.2.23)



# I. 과·면세 및 영세율 범위 조정

## 1. 채권추심업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종료(부가령 §33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12.12.31까지 공급하는 채권 추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input type="checkbox"/> 일몰 종료

(2) 개정이유

- 금융 본래의 기능(자금중개)과 거리가 멀고, 국제적 관례(과세)와도 맞지 않아 예정대로 부가세 면제적용 종료

## 2.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기관에 산학협력단 추가(부가령 §3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부가세 면제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 등</li> <li>○ (추 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산학협력단</li> </ul>

(2) 개정이유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공공성 감안  
 \*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이미 부가가치세 면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산학협력단의 학교시설 무상임대에 대한 부가세 면제  
(부가령 §19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용역은 VAT 과세  <input type="checkbox"/> (단서 신설)	<input type="checkbox"/> 대학과 산학협력단은 특수 관계자간 부동산 무상 임대 용역으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

(2) 개정이유

-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연구·교육 활동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은행법령 개정에 따른 면세대상 은행업 명확화(부가령 §33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VAT 면세대상 은행업의 범위</p> <p>○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p>	<p>○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p> <p>○ 「은행법」에 따른 부수업무 중 일부</p> <p style="margin-left: 20px;">-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상호부금, 팩토링,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 등</p>

(2) 개정이유

- 「은행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면세대상 은행업 범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교육용역 등 부가세 면제  
(부가령 §29 및 §3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부가세 면제대상 의료용역 <추 가>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 산후도우미, 아이돌보미 등의 용역
<input type="checkbox"/> 부가세 면제 대상 교육기관 <input type="checkbox"/>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 <추 가>	

(2) 개정이유

- 사회적기업 경영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부가령 §24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사업자가 재화 공급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해외원조·구호단체(해당 단체의 사업을 위해 해외로 무상 반출하는 경우에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국제협력단</li> <li>○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적십자사</li> </ul>

(2) 개정이유

- 해외구호사업을 위한 재화 공급시 영세율을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국립대학병원이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 명확화(부가령 §41)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학교, 박물관 등이 수입하는 교육·과학·문화용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감면</p>	<p>○ 국립대학병원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p>

(2) 개정이유

- 국립대학병원이 의대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8. 유방재건술을 과세대상 진료용역에서 제외(부가령 §2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래 진료용역은 VAT 과세 <input type="checkbox"/> 코성형수술, 쌍꺼풀수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input type="checkbox"/> 유방확대·축소술	(좌 동)  <input type="checkbox"/> (단서신설)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제외

(2) 개정이유

- 환자 치료비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9. 개인택시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①)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일몰 : 2015.12.31일까지

### (2) 개정이유

- 개인택시 사업자의 열악한 경영여건 감안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국내개최 국제대회에 대한 세제지원  
(조특법 §106②, §116①②, 조특령§106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 대회 관련 수입물품 부가세 면제 ○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 대회조직위원회 작성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일몰 : 2013.12.31  <input type="checkbox"/>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 대회조직위원회 작성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일몰 : 2018.12.31  <input type="checkbox"/>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 일몰 : 2013.12.31  <input type="checkbox"/> 2013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 대회관련 수입물품 부가세 면제 ※ 일몰 : 2013.12.31  <input type="checkbox"/>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 일몰 : 2016.12.31

(2) 개정이유

-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부가세) 2013.1.1 이후 수입·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인지세) 2013.1.1 이후 과세문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11.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범위 추가  
(조특규칙 별표10)

< 시행령 개정내용(§106⑦)>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포물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추가
-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41개 정부업무대행 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규정  <p style="text-align: center;">&lt; 추 가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등 3개 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li> </ul> </li> </ul>

(2) 개정이유

-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23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국제대회가 종료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삭제(조특규칙 별표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사업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여수세계박람회, 2012세계 자연보전총회의 조직위원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삭 제>

(2) 개정이유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여수세계박람회(2012.5.12~8.12) 및 2012세계자연보전총회(2012.9.6.~9.15) 종료

### 13.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범위 조정 (조특규칙 별표10)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지방공사의 면세사업 범위</p> <p>○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도매 시장관리사업 및 그 부대사업</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lt;좌 동&gt;</p> <p>○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제78조의2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합병되어 지방공단 업무가 지방공사로 이전되는 경우</p> <p>- 기존 지방공단의 면세사업*</p> <p>*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p>

#### (2)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간 통합정책 지원을 위해 지방공단의 통합전 기 면세되는 업무에 대해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
  - 통합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23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Ⅱ.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계산의 합리화

### 1.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겸영시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기준 명확화 (부가령 §61①)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공동매입세액 : 공급가액 기준 안분계산 <대상 추가>	○ (좌 동) ○ 과세·비과세사업 겸영사업자

#### (2) 개정이유

-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부분도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면세사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

### 2. 사업자등록 하기 전의 매입세액공제 확대(부가령§60)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안됨 ○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 것은 공제	<input type="checkbox"/> 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

#### (2) 개정이유

- 사업을 시작하는 납세자 편의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3. 수용시 부가가치세 절차 편의 제고(부가령 §14④)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input type="checkbox"/> 소유자가 건물을 직접 철거하는 경우 외에는 과세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범위 확대  <input type="checkbox"/> 수용 후 철거될 재화의 경우 철거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 (2) 개정이유

- 소유자의 직접 철거여부에 따라 부가세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4. 예정고지 산정 기준금액의 합리적 개선(부가법§18)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예정고지세액 :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아래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의 1/2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발행공제 <input type="checkbox"/> 전자신고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 <추 가>	<input type="checkbox"/>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input type="checkbox"/>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

##### (2) 개정이유

- 예정고지 세액계산 방식 합리화 및 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5. 용역대가를 건물 등으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명확화  
(부가령 §48⑮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BOT 방식의 사업수행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방식  ○ 시설물 등을 설치한 후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계약 만료시점에 시설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설치시점의 가액을 계약 기간동안 월별로 안분하여 과세표준 계산

(2) 개정이유

- BOT 방식의 사업수행시 설치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Ⅲ. 농·어민 및 중소기업 등 지원

#### 1. 구내식당(공장·학교 등)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조특법 §106①)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에게 제공하는 직영급식 또는 위탁급식</li> <li>○ 대학교의 경우 학생에게 제공하는 직영급식</li> <li>○ 공장, 광산, 건설사업장 등의 경우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직영급식</li> </ul> <input type="checkbox"/> 일몰 : '12.12.31	<input type="checkbox"/> 일몰 3년 연장 : '15.12.31

##### (2) 개정이유

- 학생·근로자의 식비부담 경감을 통한 복지 지원

2. BTO 방식으로 건설한 학교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학교시설의 범위 명확화(조특법 §106①8, 조특령 §106⑨)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학교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 면세  <input type="checkbox"/> 사업자가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면세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	<input type="checkbox"/> 학교시설의 범위: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시설 중,  - 교육기본시설: 강의실 등 - 지원시설: 체육관, 기숙사 등 - 연구시설: 실험실 등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 '12.12.31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	<input type="checkbox"/> 일몰 2년 연장 : '14.12.31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

(2) 개정이유

- 대학의 민자사업 유치를 통한 학교시설 확충을 지원하여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등을 완화

3.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조특법 §106의2③, 농림특례 §15  
 ①, §15의3①·②·⑤, 농림특례 시행규칙 별표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 선박 ○ 시설(김, 오징어 건조시설 등) <신 설>	○ (좌 동) ○ (좌 동) ○ 어업기계 - 어업용 화물자동차(1톤이하) - 어업용 경운기 - 어업용 트랙터

(2) 개정이유

-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23. 이후 공급하는 석유류부터 적용

4. 부가가치세 등이 감면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농림특례 별표4,5,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 <추 가>	○ 착색제* *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면세유(휘발유) 착색제
<input type="checkbox"/> 사후환급 농업용 기자재 <추 가>	○ 유해동물(해충 포함) 포획기
<input type="checkbox"/> 사후환급 어업용 기자재 <추 가>	○ 어업용 산소발생기 ○ 양식장용 액화산소

(2) 개정이유

-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 또는 수입신고(사후환급 기자재)하는 분  
부터 적용

5. 농어업 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조특법 §106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농어업 경영 등 대행용역 부 가가치세 면제  ○ 일몰 : '12.12.31	○ 일몰 3년 연장 : '15.12.31

(2) 개정이유

-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노동력 부족문제  
해소 및 농가부담 경감 지원

6.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 개선  
(부가법 §32의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  ○ 우대 공제율 - 음식·숙박업영위 간이과세자 : 2.6% ('13년부터 2.0%) - 기타 개인사업자 : 1.3% ('13년부터 1.0%)  ○ 우대 공제한도 : 700만원 ('13년부터 500만원)  ○ 일몰 : '12.12.31	<input type="checkbox"/> 우대공제율은 일몰연장, 우대공제한도는 일몰종료  ○ 일몰연장('14.12.31)     ○ 일몰종료 (공제한도 : 500만원)

(2) 개정이유

-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상당부분 정착된 점과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 등을 감안하여 우대 공제율은 일몰연장하되, 우대 공제한도는 적용 종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급·결제하는 분부터 적용

7. 농·수협 등의 소비대차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일몰 연장  
(조특법 §116①, 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인지세 면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과 조합원의 소비대차증서, 예금, 적금증서 및 통장</li> <li>○ 농어촌정비·농지은행·농촌주택 개량·농지조성사업 등 관련 서류</li> <li>○ 중소기업 창업관련 용자증서, 통장, 계약서 등</li> </ul>	
<input type="checkbox"/> 일몰 : 2012.12.31	<input type="checkbox"/> 일몰 3년 연장('15.12.31)

(2) 개정이유

- 농·어민 등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지원

**8. 천연가스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조특법§106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 일몰 : '12.12.31	○ 일몰 3년 연장 : '15.12.31

(2) 개정이유

- 친환경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 보급확대 지원

**9.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조특법§106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임산물 중 목재펠릿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일몰 : '12.12.31	○ 일몰 3년 연장 : '15.12.31

(2) 개정이유

-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 확대 및 농산촌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 지원

10.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영세율 일몰 연장  
(조특법 §105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input type="checkbox"/>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 <input type="checkbox"/> 일몰 : '12.12.31	<input type="checkbox"/> 일몰 3년 연장 : '15.12.31

(2) 개정이유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지원

11.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 연장  
(조특법 §105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가 및 지자체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국가·지자체, 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민간사업시행자 <input type="checkbox"/> 일몰 : '12.12.31	<input type="checkbox"/> 일몰 3년 연장 : '15.12.31

(2) 개정이유

- 대중교통인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 확대 지원

## 12.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부가령 §74의3④)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20% (단, 소매업은 '14까지 15%)	전기·가스·증기·수도	5%
농·임·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40% (단 음식점업·숙박업은 '14.까지 3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 (2) 개정이유

- 2004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경제현실 등에 맞게 조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1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부가법§27)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 일반적인 경우 - (제1기) 1.1~6.30 - (제2기) 7.1 ~12.31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 (제1기) 1.1~6.30 - (제2기) 7.1~12.31  ○ 간이과세자 - 1.1~12.31(1년)  <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신설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차감 납부 세액 1/2를 7.25까지 납부

#### (2) 개정이유

- 간이과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1회로 축소
  - 납세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예정부과(7월)를 신설(연 2회 납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4. 중소기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  
(부가령 §62①, §74의5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유흥장소 : (개인, 법인) 4/104 ○ 음식점 : (개인) 8/108, (법인) 6/106  ○ 기타 : 2/102	○ (좌동) ○ (좌동)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4/104  ○ (좌 동)

(2) 개정이유

- 중소기업에 대하여 공제율을 상향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15. 영세율 적용대상 임업인의 범위 조정 (농림특례 §2③)

###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p>□ 영세율 적용대상 임업인 범위</p> <p>○ 영림업 또는 벌목업 종사자 (법인 제외)</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좌 동)</p> <p>○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임업인에 대한 임대용으로 임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분에 한함)</p> <p>* 임업용 원치, 트랙터부착형 또는 굴삭기부착형 집재기 및 타워야더</p>

### (2) 개정이유

- 임업인의 경비절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하는 해당 임업용기자재부터 적용

## IV.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제도 보완

###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가공 및 위장 발급·수취 가산세 신설 (부가법 §2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의 가공 및 위장 발급·수취 가산세 신설  <input type="checkbox"/> 가산세율 : 해당 공급가액의 2%

#### (2) 개정이유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가공 및 위장 발급·수취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 2. 세금계산서 관련 규제 완화(부가법§17②, 부가령 §60②)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p> <p>*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세액, 거래일자 등</p> <p>○ 매입세액 불공제</p>	<p><input type="checkbox"/>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p> <p>① 실제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속하는 사업자단위 과세 또는 총괄납부 범위내의 다른 사업자 중 하나로 잘못 기재(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대로 기재)</p> <p>② 공급하는 자가 당초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p> <p>○ ①+②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p>
<p><input type="checkbox"/> 면세(비과세포함)대상 거래에 대하여 일반세율 적용한 세금 계산서 수취시</p> <p>○ 매입세액 불공제</p> <p>○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후 공급한 자는 경정청구, 공급받은 자는 수정신고 (공급받은 자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p>	<p>○ 공급하는 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공급하는 자가 신고액을 모두 납부하였음이 확인)에는 매입세액 공제</p> <p>○ 수정 세금계산서 및 경정청구, 수정신고 불필요</p>

### (2) 개정이유

- 세금계산서 관련규제 완화로 납세자 부담 완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3.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간 보완 (부가령 §53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간</li> <li>○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에 의해 1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정일 등이 속하는 과세 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의무발급</li> </ul> </li> </ul>

#### (2) 개정이유

- 결정 및 경정 등에 의해 의무발급 대상자가 된 경우 의무 발급 기간을 명확히 함

#### 4.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기준금액 조정(조특령 §121의3⑧2호)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에 따른 세액공제 기준금액 ○ 건수당 22원을 기준으로 $\pm 30\%$ 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 기준금액 하향조정 - 건수당 18원

##### (2) 개정이유

- 현금영수증 발급·전송에 소요되는 적정원가를 감안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7.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 5. 세금계산서 선발급 요건 간소화(부가령 §54)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특례 ○ 7일 경과 후 대가를 수령한 선세금계산서 적법 요건 -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 공급받는자가 ERP시스템에 보관할 것 -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 (삭 제)

### (2) 개정이유

- 선발급 세금계산서 적법 요건 간소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낮은 가산세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22)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가산세율 ○ 미전송 가산세율 - (법인) '12년까지 0.3%, '13년부터 1.0% - (개인) '13년까지 0.3%, '14년부터 1.0% ○ 지연전송 가산세율 - (법인) '12년까지 0.1%, '13년부터 0.5% - (개인) '13년까지 0.1%, '14년부터 0.5%	<input type="checkbox"/> 미전송 및 지연 전송에 대한 낮은 가산세율 적용 기한 1년 연장 -(법인) '13년까지 -(개인) '14년까지

(2) 개정이유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

## V. 납세편의 제고 및 기타 과세제도 보완

### 1. 금지금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일몰 연장(조특법§106의3)

#### (1) 개정내용

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금지금 거래에 대한 부가세 면제 ○ 일몰: '12.12.31	○ 일몰 1년 연장 : '13.12.31

#### (2) 개정이유

- 금거래소를 통해 금지금이 거래될 때까지는 현행 면세 금지금제도 유지 필요

### 2.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몰 연장(조특법 §106의5)

#### (1) 개정내용

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 금은방 등이 개인 등으로부터 고금 취득시 취득가액의 3/103 매입세액 공제 ○ 일몰 : '12.12.31	○ 일몰 1년 연장 : '13.12.31

#### (2) 개정이유

- 고금 거래 양성화 유도 및 귀금속산업 발전 지원

### 3. 면세유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조특법 §106의2⑬)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면세유 판매지정 취소된 석유 판매업자의 면세유 취급제한기간 ○ 3년	○ 5년

#### (2) 개정이유

-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면세유 취급제한기간을 확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4. 저유소를 제조업의 사업장 범위에서 제외(부가령 §4①2호)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제조업의 사업장 장소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 다만, 제품 포장 및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	○ 단서 추가 - 석유제품의 단순 보관을 위한 저유소는 사업장에서 제외

#### (2) 개정이유

- 저유소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

**5. 폐업신고서 송부 방법 추가 (부가령 §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폐업신고서를 세무서 이외에 주무관청에도 하여야 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세무서 또는 주무관청 중 한 곳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제출받은 기관이 다른 기관에 신고서를 송부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방법 추가

(2) 개정이유

- 행정효율성 및 납세자 편의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13.2.15 이후 송부하는 분부터 적용

**6. 한국석유공사 비축용 석유를 외국법인에 소비대차로 공급시 재화 공급 범위에서 제외(부가령 §14② 4.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다음은 재화 공급에서 제외 <div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div>	<input type="checkbox"/> 한국석유공사가 보세구역내 비축용 석유를 외국법인 등에게 무위험차익거래 조건으로 소비대차 형식 공급

(2) 개정이유

- 보세구역내 외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7. 국외 위탁가공을 위한 재화 반출시 수출 규정 적용 합리화  
(부가령 §2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의 수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물품의 외국반출</li> <li>○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계무역방식의 수출</li> <li>- 외국인도수출</li> <li>- 원자재를 국외의 위탁가공 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li> </ul> </li> <li>·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li> <li>· 양수한 사업자가 외국인도 수출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재를 국외의 위탁가공 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li> <li>·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초 반출한 <b>원자재</b>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외국인도수출방식으로 수출” 요건 삭제)</li> </ul>

(2) 개정이유

- 사업자가 원재료를 국외로 반출·가공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반출하는 원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8.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대상 재수입재화의 범위 개선(부가령§44)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감면 대상 재수입재화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시 영세율을 적용받지 않은 재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li> </ul>

### (2) 개정이유

-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시키지 않는 등 재화의 특성상 재수입이 불가피한 경우를 감안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 9.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및 용역 공급규정 보완(부가규칙§9)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중간지급조건부 개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이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계약금과 잔금지급시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li> <li>○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이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계약금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완료시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좌 동&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제73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li> </ul>

### (2) 개정이유

- 인도일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완료 시점과 잔금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급완료시점 등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화
- 국고금관리법과 대응되는 규정인 지방재정법상의 선급규정도 중간지급조건부에 포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23 이후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

## 10. 구매확인서 발급기관 추가(부가규칙§9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구매확인서 발급기관  ○ 외국환은행의 장 <추 가>	<좌 동> ○ 전자무역기반사업자
<input type="checkbox"/> 구매확인서의 내용  ○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이 기재	<삭 제>

### (2) 개정이유

- 대외무역관리규정상 구매확인서 관련 개정내용과 일치

#### \* 대외무역관리규정(지경부고시)

제2조(정의) 18. "구매확인서"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라 한다)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구매한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신청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증서에 한한다)를 말한다.

별지서식 13-1의 확인서에 수출신용장의 번호 및 선적기일 기재란 삭제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23 이후 구매확인서 발급분부터 적용

## 11. 영세율매출명세서식 신설(부가규칙§20<sup>19</sup> 신설)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영세율매출명세서(별지서식 제17호의3)

### (2) 개정이유

- 예정·확정신고시 원활한 영세율 첨부서류 확인·검토 및 관련 조세지출실적 통계과약 등을 위해 도입 필요
  - 다만, 신규 납세협력의무 부과에 따른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 등을 정비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 '13년 제2기부터 적용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해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2. 납부의무면제자의 환급조문 정비(부가규칙§23의6)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납부의무면제자의 자진납부세액 환급청구서	〈삭 제〉

### (2) 개정이유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단서조항 삭제에 따른 조문정비

## 13. 동물진료 매출대장 관련 조문정리(부가규칙§25)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동물진료용역 매출대장을 별지 서식 21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  ○ 다만, 진료부를 매출대장으로 같음 가능	〈단서삭제〉

### (2) 개정이유

- 2012.6월 시행령 개정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된 조문 정리

#### 1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따른 조문 정비(§23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간이과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 범위</p> <p>○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 지역을 제외) (§23의2②)</p> <p>○ 특별시·광역시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 (§23의2③)</p>	<p>○ 세종특별자치시·제주행정시* (읍·면 지역 제외)추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항에 따라 설치</p> <p>○ 세종특별자치시·제주행정시 추가</p>

##### (2) 개정이유

- 2006.7.1. 제주특별자치도, '12.7.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조문 정비

15. 세금계산서합계표 개별명세 작성의무 면제 범위 명확화  
(부가법 §2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예정·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는 합계표 제출 의무 면제	<input type="checkbox"/> 제출의무 면제요건 명확화  ○ 발급명세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합계표 제출 면제

(2) 개정이유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혼란 방지
  - 현행 규정은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단순히 발급일의 다음날 까지 전송할 경우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6. 100% 자료상 가산세 징수장소 일원화(부가법 §2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100% 자료상* 가산세 *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2% ○ 징수관할 :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input type="checkbox"/> 징수관할 변경  ○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장

### (2) 개정이유

-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장소 등을 일일이 확인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감안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17. 농·어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농림특례 §15의3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농업기계 보유현황 신고주기 ○ 2년 <단서 추가>	<input type="checkbox"/> 농·어업기계 보유현황 신고주기 ○ (좌 동) ○ 1년(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계*) * 2톤이상 4톤미만 농업용로더, 농업용·어업용 화물자동차

(2) 개정이유

- 농·어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보유현황 신고 주기를 단축하여 사후관리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2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면세유 한도량 신청시기 및 첨부서류 등 신설(농림특례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면세유 한도량 신청 및 관리 ○ 농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연간 한도량 신청(산출근거, 전년도 사용량 첨부) ○ 결정된 한도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가신청 가능

(2) 개정이유

- 법에서 구체적 내용을 위임함에 따라 한도량 신청 시기, 신청시 첨부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19. 출고지시서 등 교부요건 명확화 (농림특례 §20②)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수협이 출고지시서 등 교부 ○ 최근 어업영위사실 확인서류를 제출받은 후 출고지시서 등을 교부할 수 있음	○ 최근 어업영위사실 확인서류를 제출받은 후 출고지시서 등을 교부하여야 함

### (2) 개정이유

- 어업영위사실 확인서류 부당교부시 수협에 대한 제재 근거 명확화
  - ※ 수협이 증거서류 미확인 등 관리부실로 출고지시서 등을 잘못 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20% 가산세 징수(조특법§106의2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 20.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확대(농림특례 §17②3·4 신설)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 시간계측기 ○ 선박프리패스시스템용 송신기 <추 가>	<input type="checkbox"/>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확대 ○ (좌 동) ○ (좌 동) ○ 어선위치발신장치 ○ 선박건조시 부착된 가동시간 계측장치

### (2) 개정이유

- 시간계측기 대체 장치를 확대함으로써 어민부담 경감

21.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 명확화  
(조특법 §113②·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 대상 석유류 <input type="checkbox"/>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input type="checkbox"/> 군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input type="checkbox"/>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input type="checkbox"/> 바이오디젤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어업용 면세유* * 농어업용 면세유 중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는 농업용 면세유 등 제외

(2) 개정이유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 후 수협중앙회에 공급한 어업용 면세유에 대해서도 세액환급 가능함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변경에 따른 유형전환 시기 조정  
(부가령 §74의2)

<법 개정내용(§3)>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유형전환(간이→일반, 일반→간이)  ○ 기준금액 이상(미달)된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7.1) 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  *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유형전환 시기  ○ 기준금액 이상(미달)된 해의 다음 다음해(1.1)

(2) 개정이유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이 1년으로 전환됨에 따라 유형전환 시기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13.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부터 적용

(4) 적용특례

- 2012년 공급대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그 적용 기간은 2013.7.1부터 2014.12.31까지로 함

23.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에 따른 절차규정 마련  
(영 §75⑥, ⑦, ⑩ 신설)

<법 개정내용(§26의4)>

간이과세자에 대해 예정부과제도(6개월분) 도입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예정부과방법(법 §26의4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세무서장은 예정부과세액 납세고지서를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발부(제10항)</li> </ul> <input type="checkbox"/> 예정신고 대상 간이과세자(법 §26의4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한의 공급가액·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제11항)</li> </ul> <input type="checkbox"/> 예정신고·납부방법(법 §26의4②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가세신고와 함께 납부(제6항)</li> </ul> <input type="checkbox"/>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법 §26의4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가세신고서와 함께 제출(제7항)</li> </ul>

(2) 개정이유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규정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부과(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4. 면세점 이용 편의 제고

### 24-1 VAT 시내환급창구 허용 관련

(외국인관광객 특례 §5의2, §10의4 신설)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외국인관광객 VAT 환급창구 <input type="checkbox"/>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VAT 환급시기 ○ 출국항에 소재한 보세구역 등 ○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은 때  <신 설>	<input type="checkbox"/> 시내환급창구 허용(지역제한 폐지) ○ <삭 제> <input type="checkbox"/> 시내환급의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VAT 환급시기 신설 ○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은 때 (시내 등에서 이미 환급받은 경우 제외) ○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물품에 대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반출확인을 받기로 하고 환급을 요구하는 때(1회 거래가액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

#### (2) 개정이유

- 외국인의 환급 편의 도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7.1 이후 외국인관광객 등이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24-2 VAT 환급관련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반출확인방법 변경  
(외국인관광객 특례 §9⑤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세관장의 반출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급액에 관계없이 전량 확인하고 확인인 날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급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면세물품과 판매확인서 기재 사항의 일치여부 확인을 생략하고 확인인 날인 가능</li> </ul>

(2) 개정이유

- 외국인관광객의 불편해소를 위해 환급액 1만원 미만 소액구매 물품에 대한 반출확인방법 간소화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반출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24-3 면세판매자의 VAT 신고 및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외국인관광객 특례 §11①·§1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VAT 신고시(개별소비세 환급신청시)첨부서류  <input type="checkbox"/>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송금증명서를 전송받은 경우)

(2) 개정이유

- VAT(영세율)신고 및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시 첨부서류간소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7.1 이후 최초로 외국인관광객 등이 구입하는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4-4 전자판매확인서를 통한 환급 등의 특례  
(외국인관광객 특례 §10의4 신설)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시내 환급*의 경우 물품판매절차 -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전자 판매확인서를 전송 * 환급 후 세관장 반출확인(1회 거래 가액 200만원 이하) ※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
<신 설>	<input type="checkbox"/>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담보요구권 ○ 시내환급시 외국인관광객의 반출 확인을 위해 세액상당액을 한도로 담보 요구 가능
<신 설>	<input type="checkbox"/>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 받은 세관장의 반출확인결과 통보방법 ○ 면세물품과 전자판매확인서 일치 여부 확인 후 날인(정보통신망 이용) 하고, 확인결과를 환급창구운영 사업자에게 전송 및 국세청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
<신 설>	<input type="checkbox"/> 세관장으로부터 반출확인내용을 전송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송금증명서 송부방법 ○ 환급·송금 증명서 전송

(2) 개정이유

- 시내환급 등 전자판매확인서가 전송되는 경우 관련 환급절차의 전산화 등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7.1 이후 외국인 관광객 등이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24-5 제주도여행객 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를 미화기준으로 조정  
(제주특례 §5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면세물품 판매한도 ○ 품목당 40만원 이하	○ 품목당 US\$400 이하
<input type="checkbox"/> 면세물품 구입한도 ○ 1인당 40만원 이하	○ 1인당 US\$400 이하

(2) 개정이유

- 현행 판매 및 구입한도가 원화 기준이어서, 동일한 상품도 환율 변동에 따라 판매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안정적 면세점 운영을 위한 기준화폐 변경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최초로 판매 또는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 인 지 세 법



## [인 지 세 법]

### 【개정된 주요내용】

#### I. 기타 조문정리

1.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조문 정비
  - 1-1 시행령 제2조의2 제15호
  - 1-2 시행규칙 제9조

#### 【인지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률: 개정사항 없음
- 대통령령: 제24363호(2013.2.15)
- 기획재정부령: 제330호(2013.2.23)



1.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조문정비  
(시행령 제2조의2 제15호 , 시행규칙 제9조)

1-1 시행령 제2조의2 제15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인지세 과세대상 금전소비 대차 증서의 범위  <input type="checkbox"/> 「농협법」에 따른 농업협동 조합 및 그 중앙회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	<input type="checkbox"/> 「농협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2) 개정이유

-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관련 조문정리
  - \*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이 농협은행으로 분할·신설
  - 다만, 중앙회도 여전히 상호금융업무를 수행, 소비대차 증서를 작성하므로 중앙회도 계속적으로 규정할 필요

1-2 시행규칙 제9조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인지세 과세대상인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발행기관  <input type="checkbox"/> 「농협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input type="checkbox"/> 「농협법」에 따른 농협은행

(2) 개정이유

- 상 동



# 개별소비세법



## [개별소비세법]

### 【개정된 주요내용】

1.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 면제
2. 고가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3. 하이브리드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4. 제주도 및 기업도시 소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5. 주한외교관용 자동차 석유류 면세절차 개선
6. 외국군인의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종료
7. 유류세 신고·납부특례 보완

### 【개별소비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률: 제11601호(2013.1.1)
- 대통령령: 제24247호(2013.2.15)
- 기획재정부령 : 제333호(2013.2.23)



1.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 면제  
 (개소법 §1, 법률 제9909호 개소법 부칙 §4, 개소령 별표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대용량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 * (에어컨) 월소비전력 370kwh 이상 (냉장고) 월소비전력 40kwh 이상 (세탁기) 1회 소비전력 720wh 이상 (TV)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 (적용기한) '12.12.31	<input type="checkbox"/> 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적용기한) '15.12.31(3년 연장)

(2) 개정이유

- 고효율제품 구매 인센티브 확대 등 에너지소비 절약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 고가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개소법 §1, 개소령 별표1)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고가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 (과세대상) - 보석·귀금속 - 고급시계·사진기·용단·모피 등 <추 가>	○ (좌 동) - 고가가방: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 * 다만, 약기가방 등 가방의 외형·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제품은 과세 제외 ○ (좌 동)
○ (세율) -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가격 중 200만원 초과금액의 20%	○ (좌 동)

### (2) 개정이유

- 과세중인 귀금속·시계 등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3. 하이브리드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하이브리드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 승용차 개별소비세: 1,001~2,000cc 5% 2,000cc초과 7%(’13년), 6%(’14년), 5%(’15년~) ○ 면세한도: 대당 100만원 (교육세 포함시 130만원) ○ (적용기한) ’12.12.31	○ (적용기한) ’15.12.31(3년 연장)

(2) 개정이유

- 에너지소비 절약 유도 및 대기오염 억제

4. 제주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소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14, §121의1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제주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소재 골프장 개별소비세(1회 입장시 1만2천원) 면제  ○ 적용기한: '12.12.31	○ 적용기한: '15.12.31(3년 연장)

(2) 개정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5. 주한외교관용 자동차 석유류 면세절차 개선 (조특법 제111의4)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주한 외교관·공관용 자동차 석유류 면세절차</p> <p>○ 주유소(판매자)는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하는 구입추천서를 받고 면세유 공급</p> <p>○ 제조자는 주유소로부터 구입추천서를 취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유류세 환급 신청</p>	<p>○ 구입추천서 또는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면세유 공급</p> <p>※ 면세유 공급절차</p> <p>① 외교관용 면세유 구매카드 발급</p> <p>② 외교관은 면세유 구입시 카드 사용</p> <p>③ 카드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유류세 환급 신청</p> <p>○ 카드 발급시 외교부장관의 적격대상자 확인 등 필요</p>

### (2) 개정이유

- 외교관용 면세유 구매절차 개선 및 관리 체계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7.1 이후 구입하는 유류분부터 적용

6. 외국군인의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종료  
(개소법 §19의3, 법률 제10404호 개소법 부칙 §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유흥음식 행위 개별소비세(유흥음식요금의 10%) 면제  <input type="checkbox"/> 주한 국제연합군·미군 주둔지역 유흥주점에서 외국군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 행위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12.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종료

(2) 개정이유

- 과세중인 외국인관광객과의 과세형평 등 감안

7. 유류세 신고·납부특례 보완(개소법 §10의5, 교통세법 §8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유류세 신고·납부</p> <p>○ (원칙) 제조장에서 신고·납부</p> <p>○ (특례) 정유소 신고·납부 허용</p> <p>- 정유소에서 유류를 송유관을 통해 반출하여 저유소에서 혼유가 발생하거나 첨가제를 혼합한 경우</p> <p>* 저유소의 혼유 등은 제조행위에 해당되어 제조장인 저유소에서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납세편의상 정유소 신고·납부 허용</p>	<p>○ (좌 동)</p> <p>○ 정유소 신고·납부특례 추가</p> <p>- 송유관 외의 선박, 탱크로리 등을 통해 운반하여 저유소에서 첨가제를 혼합한 경우</p>

(2) 개정이유

- 신고납부절차 간소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개정된 주요내용】

1.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2.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
3. 택시용 LPG 부탄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4. 면세유 관리시스템 구축
5. 외항선박·원양어선용 면세유 공급명세서 도입
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률: 제11603호(2013.1.1)
- 대통령령: 제24362호(2013.2.15)
- 기획재정부령 : 제335호(2013.2.23)



1.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1의2, 조특영 §112의2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1,000cc 미만 경차 사용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 환급액(연간 10만원 한도)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 LPG 부탄: 리터당 161원 ○ (적용기한) '12.12.31 ○ 환급액 산정기간 - '11.1.1~12.31 - '12.1.1~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14.12.31 ○ 환급액 산정기간 - '13.1.1~12.31 - '14.1.1~12.31

(2) 개정이유

- 경차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소비 절약 유도

**2.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 §11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12.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15.12.31.

(2) 개정이유

- 도서지역 주민 지속 지원

**3. 택시용 LPG 부탄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1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택시연료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감면금액) LPG 부탄 개별 소비세 40원/kg(23원/ℓ)  ○ (적용기한) '12.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15.12.31

(2) 개정이유

- 택시업계 지속 지원

#### 4. 면세유 관리시스템 구축(조특법 §113의2 신설)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은 면세유 공급절차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축</li> <li>○ 국세청장은 면세유 관련기관 등에 대해 면세유 공급실적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 제출기관) 중앙행정기관, 농협·수협·산림조합, 한국해운조합 등</li> <li>- (제출자료 종류) 농·어업용 면세유류구입카드 거래내역, 외항선박용 선적확인서 발급내역 등</li> </ul> </li> <li>○ 관련기관은 국세청장의 자료 제공 요구에 협조</li> </ul>

##### (2) 개정이유

- 면세유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면세유 공급실적 관리 및 전산대사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

5. 외항선박·원양어선용 면세유 공급명세서 도입  
 (개소령 §20, §30, §33, §34, 교통령 §17, §22, §23, §2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외항선박·원양어선 등에 공급하는 면세유의 증빙서류 <input type="checkbox"/>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적허가서	<input type="checkbox"/> ‘면세유 공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2) 개정이유

- 외항선박 등에 공급하는 면세유의 불법유통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4.1 이후 적용

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2, 법률 제9346호 교통세법 폐지법률 부칙§1 )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법정세율) 휘발유 475원/ℓ 경유 340원/ℓ * 탄력세율: 휘발유 529원/ℓ, 경유 375원/ℓ ○ (적용기한) '12.12.31. ※ 교통세법 폐지법률 '13.1.1. 시행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3년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15.12.31. ※ 교통세법 폐지법률 시행시기도 '16.1.1.로 연기

(2) 개정이유

-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다른 목적세를 감안



# 주 세 법



## [주 세 법]

### 【개정안 주요내용】

1. 전통주 등 정의 규정 신설
2. 소주 명칭 통합
3. 면허시 부관(조건) 지정에 대한 제한
4. 주세 신고·납부주기 변경
5. 주세 보전명령제도 개선
6. 주류의 표시사항 이관
7. 주류제조시설의 공통 이용시 승인절차 폐지
8. 직매장 시설기준 완화
9. 전통주 세율경감 제도 개선
10. 주류 첨가재료 추가
11. 브랜드·위스키 등 주류 제조시설 기준 완화
12.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완화
13. 탁주(막걸리) 세원관리 강화
14. 국세청 훈령·고시사항 법령화
  - 14-1 용도구분 주류표시제도 신설
  - 14-2 주류 운반 관련사항
  - 14-13 주정소매업 면허 및 면허요건 추가
  - 14-4 주류 제조시설의 변동신고

### 【주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 대통령령: 제24361호(2013.2.15)
- 기획재정부령 : 제334호(2013.2.23)



# 1. 전통주 등 정의 규정 신설(주세법 §3)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전통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주류부문 문화재보유자 또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주류부문 식품명인이 제조한 주류</li> <li>○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인근 지역의 농산물로 제조한 주류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받은 주류</li> </ul>
<p>&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직매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류의 제조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li> </ul>

## (2) 개정이유

- 납세자의 법령 이해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법 공포일 이후 적용

## 2. 소주 명칭 통합(주세법 §4)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소주의 명칭을 ‘증류식소주’와 ‘희석식 소주’로 구분	<input type="checkbox"/> ‘소주’로 명칭 통합 ※ 앞으로는 제조방법으로만 구분 · 증류식소주 → 녹말이 포함된 재료 등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단식 증류한 소주 · 희석식소주 → 주정을 주된 원료로 하여 물로 알코올 도수를 낮춘 소주

### (2) 개정이유

- 세율 등이 동일하여 구분실익이 적은 점 등 감안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법 공포일 이후 적용

## 3. 면허시 부관(조건) 지정에 대한 제한(주세법 §9)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제조·판매 면허에 대한 부관 지정시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목적 달성시 부관 철회 의무화

### (2) 개정이유

- 부관지정 제한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법 공포일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4. 주세 신고·납부주기 변경(주세법 §23)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주세 신고·납부기한(월별) <input type="checkbox"/> 출고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input type="checkbox"/> 주세 신고·납부기한(분기별) <input type="checkbox"/> 출고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25일까지

##### (2) 개정이유

- 납세자의 신고·납부부담을 경감하여 납세편의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 5. 주세 보전명령제도 개선(주세법 §40)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주세 보전명령의 목적 ○ 주세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div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div>	<input type="checkbox"/> 주세 보전명령의 목적 구체화 ○ 주류 제조·판매의 비정상적 경쟁으로 주류거래질서가 저해되거나 주세의 탈루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주세 보전명령의 한계 ○ 필요최소한 범위에서 발령 ○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을 것 ○ 거래당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 (2) 개정이유

-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법 공포일 이후 적용

## 6. 주류의 표시사항 이관(주세법 §44의2, 영 §57의2)

###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주류 용기 등의 표시사항 ○ 주류의 종류,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제조일자 등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 다른 식품과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공전) 적용

### (2) 개정이유

- 식품위생법으로 일원화하여 보건당국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행정효율성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적용

## 7. 주류제조시설의 공통 이용시 승인절차 폐지 (주세령 §5②)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하나의 제조시설을 2종류 이상의 주류 제조에 공통으로 사용  <input type="checkbox"/> 다만, 주류제조용기 세척전문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승인 받지 아니하고 공통으로 사용 가능	<input type="checkbox"/> 주류제조용기 세척전문설비를 갖춘 때에는 하나의 제조시설을 2종류 이상의 주류 제조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2) 개정이유

- 주류 제조관련 규제 완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주류 제조용기를 공통이용하는 분부터 적용

8. 직매장 시설기준 완화 (주세령 §17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직매장 시설기준  ○ 소주·맥주·위스키·브랜디·청주· 과실주·리큐르 등  - 대지 500㎡, 창고 300㎡ 이상  * 탁주·약주·전통주는 적용 제외	<input type="checkbox"/> 직매장 시설기준 완화     - 대지 200㎡, 창고 100㎡ 이상

(2) 개정이유

- 제조업자 등의 주류 판매관련 규제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직매장 허가신청 분부터 적용

## 9. 전통주 세율경감 제도 개선 (주세령 §21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소규모 생산 전통주에 대해 기본세율의 50% 경감  ○ 소규모 생산 - 발효주 500kl, 증류주 250kl 이하  ○ 경감대상 - 발효주 연 200kl, 증류주 연 100kl	<input type="checkbox"/> 졸업 유예제도 신설  ○ 감면대상 소규모 생산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이후 3년간 주세율 경감 적용

### (2) 개정이유

- 전통주 업체의 성장 유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 10. 주류 첨가재료 추가 (주세령 별표1)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탁주, 소주의 첨가재료 ○ 아스파탐 · 스테비올배당체 · 수크랄로스 · 당분 등	<input type="checkbox"/> 첨가재료 추가 ○ 효소처리스테비아 · 삭카린 나트륨
<input type="checkbox"/> 과실주의 첨가재료 ○ 당분 · 산분 · 향료 · 색소 · 「식품 위생법」상 허용되는 식물 등	<input type="checkbox"/> 첨가재료 추가 ○ 아스코르빈산(비타민C)

### (2) 개정이유

- 소비자기호에 맞는 다양한 주류 개발 및 경쟁력 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출고 ·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1. 브랜디·위스키 등 주류 제조시설 기준 완화 (주세령 별표3)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브랜디·위스키 시설기준 ○ 원액숙성용 나무통 용량: 85kl 이상 ○ 저장 및 제성조 용량: 50kl 이상 ○ 담금(발효)조 용량: 7kl 이상	<input type="checkbox"/> 시설기준 완화 ○ 25kl 이상 ○ 25kl 이상 ○ 5kl 이상
<input type="checkbox"/> 증류식소주 시설기준 ○ 담금(발효)조 용량: 6kl 이상	<input type="checkbox"/> 시설기준 완화 ○ 5kl 이상
<input type="checkbox"/> 일반증류주·리큐르·기타주류 시설기준 ○ 담금(발효)조 용량: 6kl 이상	<input type="checkbox"/> 시설기준 완화 ○ 5kl 이상

### (2) 개정이유

-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투자확대 유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신청하는 면허분부터 적용

## 12.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완화 (주세령 별표5)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창고면적: 66㎡ 이상	<input type="checkbox"/> 면허요건 완화 < 삭제 > ○ 22㎡ 이상
<input type="checkbox"/>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요건 ○ 창고면적: 33㎡ 이상	<input type="checkbox"/> 면허요건 완화 ○ 22㎡ 이상

### (2) 개정이유

- 주류 수출입업 등의 신규진입 확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신청하는 면허분부터 적용

## 13. 탁주(막걸리) 세원관리 강화 (주세규칙 §9)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납세증지 부착 주류 ○ 탁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 * 주세 납세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표지(주류 용기에 부착)	<input type="checkbox"/> 납세증지 부착 주류 추가 ○ 일정규모 이상(예: 1만kl 이상/년) 제조하는 탁주

### (2) 개정이유

- 탁주에 대한 주세보전 및 유통질서 확립 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 14. 국세청 훈령·고시사항 법령화

### 14-1 용도구분 주류표시제도 신설(주세령 §46)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data-bbox="336 461 501 495"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 <p data-bbox="185 528 647 647">※ 현재 국세청 훈령·고시에서는 주류 유통관리를 위해 가정용, 대형 매장용, 면세용 등으로 구분</p>	<p data-bbox="683 461 1134 544"><input type="checkbox"/> 용도구분 등 주류표시제도 신설</p> <p data-bbox="695 611 1015 694">○ 가정용, 면세용 등 용도구분을 규정</p>

#### (2) 개정이유

- 영업 자유와 관련된 사항으로 법령에서 규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출고·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

## 14-2 주류 운반 관련사항(주세령 §46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lt; 신 설 &gt;</p> <p>※ 국세청 훈령·고시에서 주류 운반시 본인 소유차량, 임차차량만을 이용하고, 운반차량에 검인스티커 부착의무 규정</p>	<p><input type="checkbox"/> 주류 제조·도매업자·수입업자는 본인 소유 차량, 임차차량을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p> <p><input type="checkbox"/> 운반 차량에 검인스티커 부착 의무</p> <p>○ 다만,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검인스티커 부착의무 면제</p>

### (2) 개정이유

- 영업 자유와 관련된 사항으로 법령에서 규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출고·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

## 14-3 주정소매업 면허 및 면허요건 추가(주세령 §9②, 별표5)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lt; 신 설 &gt;</p>	<p><input type="checkbox"/> 주정소매업 면허</p> <p>○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li> <li>-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저장소 시설을 갖출 것</li> </ul>

### (2) 개정이유

-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정소매업 면허를 다른 면허와 마찬가지로 시행령에서 규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신청하는 면허분부터 적용

#### 14-4 주류 제조시설의 변동신고 (주세령 §48)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신고대상을 국세청장에게 위임  ○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는 주류·밑술이나 술덕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시설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신설·확장 또는 개량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  * 국세청 훈령에서 구체적인 변동 신고 대상을 규정	<input type="checkbox"/> 신고대상을 시행령에 규정  ○ 제조자는 제조시설 및 설비 (제조장의 건물 또는 대지 포함)를 신설·확장 또는 개량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

##### (2) 개정이유

- 국세청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류 제조시설 변동 신고의 대상을 시행령에 규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 【개정된 주요내용】

1. 사인간 주식 장외거래 내역 제출 의무화
2.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
3.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기한 연장
4. 창업자·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증권거래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률: 제11615호(2013.1.1)
- 대통령령: 제24364호(2013.2.15)
- 기획재정부령 : 제324호(2013.2.23)



## 1. 사인간 주식 장외거래 내역 제출 의무화(증권거래세법 §9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제출의무자) 「자본시장법」 (§8①)상 금융투자업자  <input type="checkbox"/> (제출자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장외에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거래에 대한 증권이체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자 인적사항, 거래주식, 거래수량, 거래일자 등</li> </ul> <input type="checkbox"/> (제출기한) 매 분기말일부터 2개월 이내

### (2) 개정이유

- 증권거래세 신고 누락 및 정확성 여부 검증에 필요한 과세 자료를 확보

### (3) 적용시기

- 2013.1.1 이후 주권 또는 지분 양도분 부터

2.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  
(증권거래세령 §1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금융투자업자’ <input type="checkbox"/> 각 지점이 아닌 본점에서 증권거래세 일괄납부 가능 *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input type="checkbox"/> 승인제 → 신고제 <input type="checkbox"/> 관할세무서장에게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신청 <input type="checkbox"/> 본점일괄납부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적용제외 * 2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등

(2) 개정이유

- 신속한 민원처리 및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기한 연장  
(조특법 §117①1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금융기관 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12.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3년 연장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15.12.31.

(2) 개정이유

- 금융회사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속 지원

**4. 창업자·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11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창업조합 등이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12.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년 연장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14.12.31

(2) 개정이유

-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 지속 지원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된 주요내용】

1. 과세자료 대상 금융상품설명서 등 사전제출 의무화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일자】

- 법률: 개정사항 없음
- 대통령령: 제24372호(2013.2.15)
- 기획재정부령: 제326호(2013.2.23)



1.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설명서 등 사전제출 의무화  
(과세자료 제출령 §3)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p>&lt;신 설&gt;</p>	<p>□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 과세자료 사전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대상기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3호)에 따른 금융회사</li> <li>○ (제출자료) 신종 금융상품 중 과세제외 및 조세특례(비과세·감면·저율과세 등)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한 금융상품설명서 및 과세구분</li> <li>○ (제출시기) 상품승인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해당 금융상품설명서 등을 제출할 때</li> <li>○ (제출기관) 국세청</li> </ul>

(2) 개정이유

-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판매하는 금융상품부터 적용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 【개정 한 주요 내용】

1. 전자송달을 위한 신청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자진납부
2. 부담부증여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3.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4. 고액 국세채권과 관련된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
5. 부당감면가산세 신설
6. 납세조합의 불성실가산세 부과사유 변경
7.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 조정
8. 기한후 신고·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배제사유 확대
9. 근로장려금의 국세환급금 발생일 추가
10.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절차 명확화
1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12. 심사·심판청구의 중복 제기 시 처리절차 명확화
13.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사유 추가
14. 의견진술신청 시 간이통지 허용
15.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경정절차 개선
16. 당초 지정통지한 심판관 중 일부 제외시 통지 생략
17.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상정방식 보완
18. 세무조사 중지사유 추가
19.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20.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21.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도 개선
22.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절차 개선

### 【국세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률: 제11604호(2013.1.1)
- 대통령령: 제24366호(2013.2.15)
- 기획재정부령 : 제320호(2013.2.23)



1. 전자송달을 위한 신청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자진납부  
(기본법 §10⑧, 기본령 §6의2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전자송달* * 전자송달 : 이메일, 홈택스를 통해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등 송달 ○ 납세자의 신청 필요 < 단서 신설 >	<input type="checkbox"/> 전자송달 신청 간주 ○ ( 좌 동 ) - 단, 납세고지서 송달 전에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가세 예정고지·예정부과세액을 확인하여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전액 자진납부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봄

(2) 개정이유

- 자진납부 시 해당 세액에 대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납세자가 필요시 홈택스를 통해 납세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불편해소와 행정비용 절감 도모
  - 부과결정·고지하는 세액 중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예정부과세액에 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이후 자진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2. 부담부증여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연장(기본법 §26의2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인 경우 : 5년</li> <li>○ 무신고 : 7년</li> <li>○ 부정행위 : 10년</li> <li>※ 상속·증여세 : 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행위, 무신고, 거짓·누락 신고 : 15년</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을 상증세와 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 10년</li> <li>○ 부정행위, 무신고, 거짓·누락 신고 : 15년</li> </ul>

(2) 개정이유

-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인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일치시켜
  - \* 수증자가 증여자의 일정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부담부증여재산 파악 시 증여세와 함께양도세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이후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

### 3.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기본법 §26의2④)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부과제척기간 연장 ○ (사유) 부정행위로 상증세를 포탈한 경우로, 제3자 명의의 피상속인 등의 재산을 상속인 등이 보유한 경우 등 ○ (기간)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이내 부과 가능	<input type="checkbox"/> 연장 사유·대상 확대 ○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50억원 이상)을 수증자가 보유, 사용·수익한 경우 추가 ○ ( 좌 동 )

#### (2) 개정이유

-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 명의의 증여자 재산과 같이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무신고 등의 경우 15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

4. 고액 국세채권과 관련된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  
(기본법 §27①)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 5년 ( 추 가 )	<input type="checkbox"/> 소멸시효 기간 연장 ○ 5억원 미만 국세채권 : 5년 ○ 5억원 이상 국세채권 : 10년

(2) 개정이유

- 고액채납자에 대한 국세징수권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 5. 부당감면가산세 신설(기본법 §47의3)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부당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권거래세, 종부세 - (사유) ·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 추 가 > - (계산) ① + ② ① 부당과소신고분: 산출세액 ×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 / 총 과세표준) × 40% ② 일반과소신고분: 산출세액 × (일반 과소신고과세표준 / 총 과세표준) × 10% < 추 가 >	<input type="checkbox"/> 부당감면가산세 ○ ( 좌 동 ) - (사유) · ( 좌 동 )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 - (계산) ① + ② + ③ ① ( 좌 동 ) ② ( 좌 동 ) ③ 부당감면·공제분: 부당감면·공제세액 × 40%

### (2) 개정이유

- 거짓 증빙 등을 통하여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현재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고 있음
  - 소득세, 법인세 등을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받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6. 납세조합의 불성실가산세 부과사유 변경(기본법 §47의5①)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납세조합의 불성실가산세 ○ (사유) 납세조합이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미·과소납부한 경우 ○ (계산) 미납세액의 3% + 0.03% × 미납일(10% 한도)	<input type="checkbox"/> 가산세 부과 사유 변경 ○ 징수하여야 할 세액 → 징수한 세액 ○ ( 좌 동 )

### (2) 개정이유

- 원천징수의무자와 달리 납세조합은 소득 지급자가 아니므로 “징수하여야 할 세액” → “징수한 세액”으로 규정하여
  - 납세조합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징수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적용 배제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 7.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 조정(기본법 §49)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의 경우 <input type="checkbox"/> 가산세 한도 : 1억원(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 <input type="checkbox"/> 「법인세법」의 경우 - 법정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 < 추 가 > - 계산서 부당교부불성실가산세	<input type="checkbox"/>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 조정 <input type="checkbox"/> ( 좌 동 ) <input type="checkbox"/> 「법인세법」의 경우 - ( 좌 동 ) - 주주등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삭 제 >

### (2) 개정이유

- 「법인세법」 개정(‘12.1.1)으로 주주에 대한 정보 확보를 위해 주주등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이는 단순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이므로 한도를 적용할 필요
- 계산서 부당교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고의성 있는 단순협력의무위반이므로, 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주주등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2013.1.1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 계산서 부당교부불성실가산세 : 2013.1.1이후 계산서를 부당하게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8. 기한후 신고·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배제사유 확대  
(기본령 §29)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한후 신고·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배제 사유  <input type="checkbox"/>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신고한 경우  <추 가>	<input type="checkbox"/> 배제 사유 확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2) 개정이유

-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도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 수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  
적용 배제

\* 가산세 감면

- 수정신고 :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50%), 6개월~1년 이내(20%), 1년~2년 이  
내(10%)
- 기한후신고 :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50%), 1~6개월 이내(20%)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근로장려금의 국세환급금 발생일 추가(기본령 §3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세환급금의 발생일 ○ 소득세법 등*에 따른 환급 세액의 신고·경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 신고일 * 소득·법인·부가·개소·주세법 - 신고하지 아니하여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 결정일 <추 가>	<input type="checkbox"/> 근로장려금의 발생일 추가 ○ (좌 동) ○ 근로장려금 : 결정일

(2) 개정이유

- 근로장려금(EITC)에 대한 국세환급금 발생일 규정이 없어 국세환급금의 체납액 충당 시 소급효를 적용하기 곤란
  - 국세환급금은 수급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환급하고 있으므로 그 결정일에 환급금이 발생한다고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근로장려금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0.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절차 명확화(기본령 §43의4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세환급금의 양도 ○ 양도인의 체납액 등 충당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수인의 양도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함	○ 양도인의 체납액 등 충당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양수인의 체납액 등 충당 후 환급

(2) 개정이유

- 양수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양도 시 양수인의 체납액에 충당한 후 환급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 1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기본규칙 §13의2)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연 4.0%	<input type="checkbox"/> 이자율 조정 ○ 연 4.0% → 3.4%

### (2) 개정이유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은행권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12.2월 당시보다 인하(4.0% → 3.4%)된 점을 감안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3.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 12. 심사·심판청구의 중복 제기 시 처리절차 명확화(기본법 §65①)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심사·심판청구 <input type="checkbox"/> 중복 제기 불가 <p style="text-align: center;">&lt; 추 가 &gt;</p>	<input type="checkbox"/> 중복 제기 시 효과 규정 <input type="checkbox"/> ( 좌 동 ) - 후행 청구(동시 제기시 심사청구)를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

### (2) 개정이유

- 「국세기본법」에서 동일 처분에 대한 심사·심판 청구를 중복 제기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여 중복 제기시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

### 13.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사유 추가(기본법 §66①)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 <input type="checkbox"/>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input type="checkbox"/> 같은 지방국세청장 관할로 조사·과세한 세무서장이 상이 <input type="checkbox"/>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사유 추가 <input type="checkbox"/> ( 좌 동 ) <input type="checkbox"/> 관할에 관계없이 조사·과세한 세무서장이 상이(과세처분한 세무서의 관할지방청에서 담당) <input type="checkbox"/> ( 좌 동 )

#### (2) 개정이유

- 관할에 관계없이 조사·과세한 세무서장이 상이한 경우에도 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료 확보 등을 용이하게 하여 심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이의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14. 의견진술신청 시 간이통지 허용(기본령 §47)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의견진술 신청에 대한 통지 ○ 출석·기각통지 등을 서면으로 통지	<input type="checkbox"/> 간이통지 허용 ○ 서면통지 외에 간이통지도 (전화 등) 허용

##### (2) 개정이유

- 「행정심판법」과 같이 의견진술신청에 대한 통지를 간이통지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심사·심판제도의 효율성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 15.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경정절차 개선(기본령 §53의2①)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경정 ○ (사유)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유사한 잘못 ○ (절차) 국세심사위원회 의결로 경정	<input type="checkbox"/> 경정절차 개선 ○ (좌 동) ○ 국세심사위원회 의결 → 국세청장 직권

##### (2) 개정이유

- 불복결정에 대한 결정의 단순한 경정은 결정내용의 변경 없이 단순 기재착오만을 바로잡는 것이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아닌 결정권자의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도록 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16. 당초 지정통지한 심판관 중 일부 제외시 통지 생략 (기본령§57)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조세심판관 지정통지 <input type="checkbox"/> 통지 사유 - 담당 조세심판관을 지정·변경한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	<input type="checkbox"/> 통지 예외 신설 <input type="checkbox"/> 통지 사유 - (좌 동)  <input type="checkbox"/> 당초 지정통지한 심판관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 통지 생략 가능

### (2) 개정이유

- 당초 지정통지한 심판관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이미 통지제도의 운영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별도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 17.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상정방식 보완 (기본령§62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조세심판관 합동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종전 결정례를 변경하거나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정의 일관성의 유지 또는 향후 조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이 필요한 사항</li> </ul> </li> <li>○ (구성) 심판원장 및 상임심판관 전부와 상임심판관 수 이상의 비상임심판관</li> <li>○ (심리내용 통보) 주심조세심판관은 심리 종료 시 그 내용을 심판원장에게 통보</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	<p><input type="checkbox"/> 합동회의 상정방식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의견청취) 심판원장은 합동회의 대상사건 해당 여부에 대해 주심조세심판관의 의견청취 가능</li> </ul>

### (2) 개정이유

- 합동회의의 특성상 현실적 제약(월 1~2회, 회당 3~4건 처리)이 있으므로, 당해 사건의 합동회의 대상 여부를 주심심판관과의 의견청취를 통해 판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합동회의 상정 분부터 적용

## 18. 세무조사 중지사유 추가(기본령 §63의10)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세무조사 중지 사유 <input type="checkbox"/>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 로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어려움, 납세자·납세관리인의 질병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 압수·영치 <input type="checkbox"/> 국외자료의 수집 등에 따라 외국과세기관과의 협의 필요 <input type="checkbox"/> 장부·서류 등의 은닉, 노동쟁의 등으로 세무조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 <input type="checkbox"/> 납세자보호관 등이 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추 가>	<input type="checkbox"/> 세무조사 중지 사유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납세자의 소재 불명·해외 출국 등으로 세무조사의 정상 적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

### (2) 개정이유

- 납세자의 소재 불명 또는 해외 출국 등에 따라 사실상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조사중지 사유에 추가하여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세무조사의 중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9.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기본법 §84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포상금 지급 ○ (대상) 탈세제보,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시 신고자에게 지급 ○ (지급한도) 1억원	<input type="checkbox"/> 지급한도 인상 ○ ( 좌 동 ) ○ 1억원 → 10억원으로 인상

(2) 개정이유

- 탈세 제보 등의 포상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한도를 1억원 → 10억원으로 인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0.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기본법 §84의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포상금 지급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루세액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li> <li>○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li> <li>○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 신고</li> <li>○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신고</li> <li>○ 타인 명의 사업자 신고</li> <li>○ 해외계좌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중요한 자료 제공</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 추 가 &gt;</p>	<input type="checkbox"/> 포상금 지급 사유 추가  <p style="text-align: center;">( 좌 동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 신고</li> </ul> <input type="checkbox"/>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지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명계좌의 신고로 1,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을 확인한 경우 건당 50만원 포상금 지급</li> <li>○ 지급한도 : 연간 5,000만원</li> </ul>

(2) 개정이유

- 고소득 자영업자의 주된 탈세수단이 되고 있는 차명계좌 정보를 확보하여 과세표준 양성화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1.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도 개선(기본령 §9의3)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세예규심사위원회 ○ (위촉권자) 세제실장 ○ (구성) 위원장이 지정하는 12 ~ 15명 이내의 위원	<input type="checkbox"/> 위촉권자 변경 및 위원수 확대 ○ 세제실장 → 기획재정부 장관 ○ 15명 → 20명

### (2) 개정이유

-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기관장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여 행정기관의 세법해석에 대한 최종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민간위원의 책임을 강화함
-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12년부터 내국세 및 관세 안전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최대 회의 구성인원을 종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분부터 적용

## 22.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절차 개선(기본령§10)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절차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석권자) 기재부장관, 국세청장</li> <li>○ (국세청장의 회신) 기재부 예규심 심의 사항*만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규심 심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 필요</li> <li>- 기존 해석·관행을 변경</li> <li>- 납세자 권리 등에 중대한 영향</li> </ul> </li> </ul> </li> <li>- 사본을 기재부장관에게 송부 다만, 사실판단, 기존해석에 따른 회신은 제외</li> <li>○ (국세청장의 해석요청) 예규심 심의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석요청 해야 함, 이견 존재 시 재해석 요청 가능</li> <li>○ (기재부장관의 회신) 직접 제출된 질의는 국세청장에게 이송하나, 다음 사항은 직접 회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규심 심의사항</li> <li>- 국세청장의 해석에 대한 재질의</li> <li>- 새로 제·개정된 세법에 대한 기재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질의절차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좌 동 )</li> <li>- &lt; 단서 삭제 &gt;</li> <li>○ 예규심 심의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예규심 심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li> <li>○ ( 좌 동 )</li> </ul>

### (2) 개정이유

- 국세청의 회신 사항을 모두 송부받도록 함으로써 국세청이 당초 입법취지와 다르게 민원인에게 회신하는 것을 방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회신하는 분부터 시행



# 국세징수법



## [국세징수법]

### 【개정된 주요내용】

1.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 개선
2. 신고납부 시 납부서에 따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3. 재기 중소기업인 징수유예기간 특례요건 완화
4. 압류금지재산 중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범위 조정
5.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 금액 인상
6. 복수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방법 규정
7.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
8. 공매 취소의 사유 규정
9. 채납처분 중지 기준 개선

### 【국세징수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률: 제11605호(2013.1.1)
- 대통령령: 제24367호(2013.2.15)
- 기획재정부령 : 제321호(2013.2.23)



## 1.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 개선(징수령 §4)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는 자가 원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p> <p>* 국가, 지자체,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p> <p>○ (하도급대금) 하도급법 §14①1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제출</p> <p>*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p>	<p>□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 개선</p> <p>○ (하도급대금) 하도급법 §14①1호 → 1호 및 2호*</p> <p>* 발주자(국가 등)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p>

### (2) 개정이유

- 원사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 등에 직면하여 발주자인 국가등과 원·수급사업자간 합의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하도급법 §14①2호)에도
  -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만으로 발주자인 국가 등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2. 신고납부 시 납부서에 따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징수법 §8)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정부부과세목 : 납세고지서로 납부 <input type="checkbox"/> 신고납부세목 : < 신 설 > ※ 종전 시·군·구 위탁징수 서식을 활용하였으나, 서식 삭제	<input type="checkbox"/> ( 좌 동 ) <input type="checkbox"/> 납부서로 납부

### (2) 개정이유

- 「국세징수법」에서는 정부부과세목에 대한 징수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3. 재기 중소기업인 징수유예기간 특례요건 완화 (징수령 §2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징수유예기간 특례</p> <p>○ (대상) 다음의 요건을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금액) 직전년도 6억원 이하</li> <li>- (채납) 1년간 3회 미만 채납, 채납액·결손처분액(3년간) 500만원 미만</li> <li>- 조세범처벌 사실 없을 것(5년간)</li> <li>- 세법 상 의무 이행자(복식부기 기장의무 등)</li> </ul> <p>○ (징수유예기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18개월 ※ 일반 징수유예 기간 : 9개월</li> <li>- (대상세목) 제한없음</li> </ul> <p>○ (일몰) '12.12.31.</p>	<p>□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특례</p> <p>○ 재기 중소기업인*</p> <p>*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자금을 용자받은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억원 → 10억원</li> <li>- 500만원 → 1천만원</li> <li>- ( 좌 동 )</li> <li>- ( 좌 동 )</li> </ul> <p>- 제한없음 → 소득·법인·부가세로 제한</p> <p>○ (일몰 연장) '13.12.31.까지 재기 중소기업인에 한하여 적용</p>

(2) 개정이유

-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의 목적인 금융위·중기청의 재창업 자금 지원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소규모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완화하여 징수유예기간 확대
- 사업과 관련없는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도 기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어 특례 대상 세목을 제한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특례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일몰을 종료함
  - 다만, 재기 중소기업인에 한해 일몰기한을 1년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4. 압류금지재산 중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범위 조정(징수령 §36)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 재산에 대한 압류금지</li> <li>○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 환급금, 만기환급금</li> <li>○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압류금지재산 범위 조정</li> <li>○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 환급금, 만기환급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1천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li> <li>ii) 치료·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li> <li>iii) 그 외 보험금의 50%</li> <li>iv) 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 해약환급금</li> <li>v) 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 만기환급금</li> </ul> </li> <li>☞ 2 이상 보험계약 시 : i), iv), v)는 합산하여 계산, iii)은 보험계약별로 계산</li> <li>○ 120만원 → 150만원으로 상향</li> </ul>

##### (2) 개정이유

- 채납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국세징수법」상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 범위를 확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 5.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 금액 인상(징수령 §37)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input type="radio"/> 120만원 미만 금액	<input type="radio"/> 120만원→150만원

### (2)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월 1,495,550원 ('12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채납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압류제한금액을 월 120만원 → 150만원으로 인상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 6. 복수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방법 규정(징수령 §68)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복수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input type="checkbox"/> 납세담보 제공 재산 등의 경우 구분공매* 하도록 함 *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 전세권 등 담보목적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 무체재산권 등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	<input type="checkbox"/> 공매방법 규정 <input type="checkbox"/> < 삭 제 > <input type="checkbox"/> (원칙) 개별매각 <input type="checkbox"/> (예외)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형태 등을 감안하여 일괄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괄매각

### (2) 개정이유

- 복수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공매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가 낙찰을 방지하여 채납자의 재산권 보호
  - (원칙) 동일 채납자의 여러 압류재산 존재 시 개별매각
  - (예외) 재산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일괄매각이 적당한 경우 일괄매각 가능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

## 7.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징수법 §67⑤)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배분요구 종기(終期) <input type="checkbox"/> 최초 입찰기일 이전 <p style="text-align: center;">&lt; 추 가 &gt;</p>	<input type="checkbox"/> 배분요구 종기의 연기 <input type="checkbox"/> (원칙) ( 좌 동 ) <input type="checkbox"/> (예외) 필요한 경우* 배분요구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 가능 <p style="margin-left: 20px;">* 필요한 경우(시행령 위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매공고 등기(등록)의 지연·누락</li> <li>- 입찰 진행을 못하여 구매취소 공고 후 재공고하는 경우</li> <li>- 기타 구매절차상의 하자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li> </ul>

### (2) 개정이유

- 구매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할 때 배분요구의 종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구매 집행 상 문제점을 해소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8. 공매 취소의 사유 규정(징수법 §69, 징수령 §73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공매 취소 ○ (사유) - 채납처분 유예된 경우 -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 - 압류해제된 경우 - 세무서장이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청으로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 ○ (효과) 공매 진행이 취소되고 압류된 상태로 전환

(2) 개정이유

- 공매취소의 사유 및 효과를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공매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9. 체납처분 중지 기준 개선(징수법 §85②)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체납처분 중지 ○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금액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추 가>	<input type="checkbox"/> 체납처분 중지 예외 신설 ○ ( 좌 동 )  ○ 다만, 압류·교부청구한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2) 개정이유

- 현재 공매 실익을 압류한 처분청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다른 조세채권의 징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참가압류기관의 조세채권이 당해세인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권이 있어도 압류가 실익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분부터 적용

# 관 세 법



# [관 세 법]

## 【개정안 주요내용】

### I. 기본관세율 조정

1. 물가안정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관세율 조정

### II. 관세평가 제도 개선

1. 과세가격에 생산지원비 배분가산 근거 마련
2. 동종·동질(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요건 명확화
3.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 명확화
4.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가격자료 미제출·비협조등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 마련

### III. 관세 부과징수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1. 원산지 검증 관련 부과제척기간·후발적 경정청구기간 보완
2. 관세환급 사유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명확화
  - 2-1. 관세환급 사유별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3.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주체 확대 등
4.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사유 추가
5. 보세판매장 특허제도 개선
6. 수출입 물품가격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
7. 탁송품 통관관리 강화
  - 7-1. 탁송품 운송업자 자체시설 통관허용 기준
8. 품목분류 기준상 국내註 신설
9. 관세율표 '알기쉬운 법령' 개정
10.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 통관 관련 담보비율 조정
11. 개항외 지역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사유 신설 등

#### IV. FTA관세특례법 관련 제도개선

1.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 1-1.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
2. FTA관세특례법상 특례부과제척기간 도입
3. 협정관세 적용보류 규정 명확화
  - 3-1. 협정관세 적용보류 기간
  - 3-2.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요건
4. 원산지 확인요청 사유 추가

#### V. 관세 감면제도 정비

1.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단계적 정비
2. 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 대상기관 확대
3. 임상시험용의약품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
4. 디지털방송장비 관세감면 종료
5. 해외진출 후 국내복귀 기업 관세감면
6. 제주첨단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 일몰연장

#### 【관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률: 제11602호(2013.1.1)
- 대통령령: 제24373호(2013.2.15)
- 기획재정부령: 제337호(2013.2.23)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률: 제11612호(2013.1.1)
- 대통령령: 제24374호(2013.2.15)
- 기획재정부령: 제338호(2013.2.23)

# I. 기본관세율 조정

## 1. 물가안정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관세율 조정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 (1) 개정내용

품 명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할당관세 장기적용 품목 ○ 면사 ○ 주정박(사료용) ○ 단판(합판제조용) ○ 견사 ○ 견방사	2% 3% 3% 4% 4%	1% 2% 2% 3% 3%
<input type="checkbox"/> 산업경쟁력 강화 ○ 뱀장어	- 실뱀장어*(양식용에 한함) 0% * 0.3g/마리 이하 - 기타 10%	- (좌 동) 새끼뱀장어(0.3g/마리 초과 50g/마리 이하, 양식용에 한함) 5% 기타 10%

### (2) 개정이유

- 물가 안정 및 원가 절감을 통한 국내취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적용

## II. 관세평가 제도 개선

### 1. 과세가격에 생산지원비 배분가산 근거 마련 (관세법 §30①, 관세령 §18)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는 비용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매자 부담 수수료</li> <li>○ 용기·포장 비용</li> <li>○ 권리사용료</li> <li>○ 사후귀속금액</li> <li>○ 운임·보험료 등 운송비용</li> <li>○ 생산지원비</li> <li>* 생산지원비 배분 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생산지원비 배분규정 적용</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	<input type="checkbox"/> 생산지원비 배분가산 근거 마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 margin: 5px 0;"></div>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지원비를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토록 명확화</li> <li>* WTO평가협정(8조 및 주해) 법제화</li> </ul> <input type="checkbox"/> 생산지원비 배분 기준(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대비 실제 수입된 물품의 비율</li> <li>○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이 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 생산과 함께 관련되어 있는 경우 각 물품별 거래가격 합계액 대비 해당 수입물품 거래가격의 비율</li> </ul>

#### (2) 개정이유

- 과세가격 산정방식 합리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

## 2. 동종·동질(유사)물품 거래가격 요건 명확화(관세법 §31②, §32②)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의 과세가격 결정 요건  <input type="checkbox"/> 동일 수출국 생산물품으로서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 같거나, 차이가 조정된 것 등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	<input type="checkbox"/> 요건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동종· 동질(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거래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

### (2) 개정이유

- 과세가격 평가원칙 명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

### 3.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 명확화(관세령 §24①)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거래가격과의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li> <li>○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의 경우 신고가격의 국제거래시세와의 현저한 차이</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	<p><input type="checkbox"/>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과 같음)</li> <li>○ (현행과 같음)</li> <li>○ 국제거래시세가 공개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로서 관세청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가격과의 현저한 차이</li> </ul>

#### (2) 개정이유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정확성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영 시행일 이후 적용

4.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가격자료 미제출·비협조등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 마련(관세법 §37조의3, §277①, 관세령 §31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lt;신 설&gt; (법§37의3)</p>	<p><input type="checkbox"/> 세관장은 특수관계자에게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료의 제출범위,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p> <p>○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60일내 자료 제출 의무. 제출기한 연장 신청시 60일 범위내 1차례 연장 가능</p>
<p>&lt;신 설&gt; (법§277①)</p>	<p><input type="checkbox"/>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시 과태료 부과</p> <p>○ 1억원 이하의 과태료</p>
<p>&lt;신 설&gt; (령§31의3)</p>	<p><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세액심사시 과세자료 제출 방법, 제출범위 등 구체화</p> <p>○ (제출자료) 특수관계자간 출자비율 등 거래관계 자료, 가격결정 자료, 계약서, 등</p> <p>○ (제출방법) 원칙은 국문자료, 필요시 영문자료 허용</p> <p>○ (제출기한연장신청)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 제출, 7일 이내 연장여부 통지</p> <p>○ (연장신청 사유) 관련자료 도난, 사업장 중대한 위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p>

(2) 개정이유

- 특수관계자간 기업심사의 실효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법·령 시행일 이후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

### Ⅲ. 관세 부과징수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1. 원산지 검증 관련 부과제척기간·후발적 경정청구기간 보완 (관세법§21, 관세령§34)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특례부과제척기간 및 사유(법§21) ○ 결정 또는 판결일로부터 1년 - 심판결정, 행정소송 판결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적용사유 확대 ○ (좌 동) - 법률·조약·협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수출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조사 결과를 회신받은 날
<input type="checkbox"/>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및 사유(영§34) ○ 후발적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 소송 판결, 서류압수 해제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적용사유 확대 ○ (좌 동) - 법률·조약·협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수출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조사 결과를 회신받은 날

##### (2) 개정이유

- 관세부과권·경정청구권 보장
  - \* 특례부과제척기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관세 포탈 경우 등은 5년)이 지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일반제척기간), 이후에도 특별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이로부터 1년 이내에는 관세 부과 가능
  - \*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관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납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나, 이후에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이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경정청구 가능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법·령 시행일 이후 원산지검증 요청분부터 적용

## 2. 관세환급 사유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명확화(관세법§46, §48)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과오납금 환급(법§46) ○ (사유)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과오납한 경우 ○ (조치) 즉시 환급 또는 총당이 경우 환급가산금 가산	<input type="checkbox"/> 관세 환급 ○ (사유) 과오납 및 세법에 따른 환급세액 발생 ○ (조치) 즉시 환급(총당)금액 결정 및 환급가산금 가산 → 30일 이내 지급(총당)
<input type="checkbox"/> 과오납 환급가산금(법§48) ○ (적용이율) 연 4% (관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 (적용기간)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 또는 총당 결정일까지	<input type="checkbox"/> 관세환급 가산금 ○ (좌 동) ○ (적용기간) 환급가산금 기산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 또는 총당결정일까지

### 2-1. 관세환급 사유별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관세령 §56)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관세환급 사유별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구체화 ○ 착오납부, 이중납부, 부과경정·취소: 납부일 ○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 감면 또는 법률 개정: 감면 결정일 및 개정법률 시행일 ○ 환급세액 신고(잘못 신고한 경우 경정한 금액)에 따른 환급: 신고를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 (2) 개정이유

- 국제기본법과의 통일성 제고 및 관세환급가산금 산출의 정확성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법·령 시행일 이후 환급·총당하는 분부터 적용

### 3.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주체 확대 등(관세법§86)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품목분류 사전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자, 관세사 등</li> <li style="padding-left: 40px;">&lt;신 설&gt;</li> </ul> </li> <li>○ 사전심사 결과공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주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물품 제조자</li> </ul> </li> <li>○ 결과공개 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시 또는 공표</li> </ul> </li> </ul> <p>* 시행령 문구 정리(령 §106④)            품목분류의 <u>고시</u>를 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유효기간은 1년            → --- <u>고시 또는 공표</u>-----</p>

#### (2) 개정이유

- 국내 수출업체의 FTA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결과공개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4.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사유 추가(관세법 §224)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업무정지·등록취소 등) 사유 <input type="checkbox"/>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관세법 및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input type="checkbox"/> 행정제재 사유 추가 <input type="checkbox"/> 「조세범처벌법」 제4조제4항 (면세유 부정유통)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은 경우 추가

##### (2) 개정이유

- 면세유 부정수급 방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

## 5. 보세관매장 특허제도 개선(관세법 §176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시도지역·공항·항만별 보세관매장 특허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중견기업에게 일정비율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게 일정비율 이하의 특허 부여</li> <li>○ 특허심사기구에서 관세법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특허 부여(기존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 포함)</li> <li>○ 특허기간은 5년 이내로 제한</li> <li>○ 특허수수료는 여타 보세구역(보세창고·보세공장 등)과 다르게 규정 가능</li> <li>○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세관매장별 매출액을 다음해 3월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li> </ul>

### (2) 개정이유

-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특허수수료 특례 도입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0.1 이후 적용

## 6. 수출입 물품가격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관세법 §276①)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허위신고죄: 명령사항 위반 또는 허위신고시 벌금형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천만원 이하: 검사거부 등</li> <li>○ 2천만원 이하: 세관장 의무 이행 요구 불이행 등</li> <li>○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이하 : 수출입 신고사항 누락 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물품원가 또는 5천만원 이하 : 수출입 신고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li> </ul>

### (2) 개정이유

- 납품가격 조작, 부의 해외이전 등을 방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적용

7. 탁송품 통관관리 강화(관세법 §254의2 ⑤·⑥)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탁송품*의 특별통관</p> <p>○ 목록통관 등 수입신고 간소화, 통관목록 제출 의무, 탁송품 검사 규정 등</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고시로 운용되고 있는 사항의 법제화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p>	<p>○ (좌 동)</p> <p>○ 탁송품의 장치(§254조의2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탁송품은 세관장이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통관</li> <li>-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체시설에서 통관하도록 승인 가능</li> </ul> <p>○ 업체시설 통관에 관한 사항의 대통령령 위임(§254조의2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설비 기준, 승인절차, 승인의 유효기간, 갱신 및 승인 취소 등</li> </ul>

\* 탁송품: 특송업체(DHL, FEDEX 등)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7-1. 탁송품 운송업자 자체시설 통관허용 기준(관세령 §258의2~4)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p>&lt; 신 설 &gt;</p>	<p><input type="checkbox"/> 탁송품 운송업자 시설에서 통관하기 위한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설비) X-Ray 검색기, 자동분류기, 보관시설 등</li> <li style="padding-left: 20px;">* 세부기준은 관세청 고시에 위임</li> <li>○ (자체시설 이용 절차) 운송업자 시설기준, 탁송품 운송실적, 인력현황 등을 확인</li> <li>○ (자체시설 운영 관리) 세관장은 운영시설 등의 확인 및 시설보완 요구, 미이행시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을 일시정지하거나 종료</li> </ul>

(2) 개정이유

- 불법물품 반입 단속 등 탁송품 통관관리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법·령 시행일 이후 적용, 다만 현재 관세청 고시가 적용되는 탁송품 운송업자는 '16.1.1 이후 적용

## 8. 품목분류 기준상 국내註 신설(관세법 별표)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관세율표 상 협약상의 註와 국내 註가 구분없이 통합되어 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lt; 참고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註: HS 체약국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품목분류 기준·용어 해석</li> <li>* 국내註: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품목분류 기준·용어 해석</li> <li>* (예) 제37류 사진용·영화용의 재료</li> </ul> <p>1호, 2호: 협약註 3호, 4호, 5호: 국내註</p>	<p><input type="checkbox"/> 협약상 註와 국내註를 분리하고 국내註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류(Chapter)의 국내註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7류 (조당과 정제당)</li> <li>- 제20류 (찌거나 삶은 고구마와 옥수수, 볶거나 튀긴 은행)</li> </ul> </li> </ul>

### (2) 개정이유

- 품목분류 기준과 해석의 투명성 제고 및 관련 분쟁 축소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적용

**9. 관세율표 ‘알기쉬운 법령’ 개정(관세법 별표)**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관세율표 전체: 6,670개 품목	□ 5,600여개 품목과 1,800여개 주(품목에 대한 설명문)의 용어 및 문장을 개정

(2) 개정이유

-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명확한 방향으로 관세율표의 용어 및 문장을 알기 쉽게 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적용

**10.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 통관 관련 담보비율 조정(관세령 §24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재권 침해의심 물품의 통관 ○ 지재권자는 통관보류 요청시 물품과세가격 120% 담보, 수출입업자는 해제 요청시 150% 담보를 제공 <신 설>	○ 지재권자 및 수출입업자 모두 물품과세가격의 120%를 담보로 제공 ○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금액을 1/2 수준으로 경감

(2) 개정이유

- 담보금액의 형평 제고 및 중소기업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영 시행일 이후 통관보류(해제) 요청분부터 적용

11. 개항외 지역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사유 신설 등  
(관세규칙 §62②·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개항 외 지역 출입허가수수료</p> <p>○ 수수료 징수 예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에 따른 강제 입항</li> <li>- 조난자에 따른 일시입항 등</li> </ul> <p style="padding-left: 20px;">&lt;신 설&gt;</p> <p>○ 출입허가 취소 수수료 반환: 개항외 지역 출입허가 기간 개시 전날까지 출입허가를 취소한 경우 수수료는 반환</p>	<p><input type="checkbox"/> 징수예외 사유추가 및 수수료 반환 기준일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항의 협소 등 입항여건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li> </ul> <p>○ 출입허가 기간 개시일까지 취소한 경우 반환</p>

(2) 개정이유

- 개항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한 수수료제도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수수료 면제사유는 2013.4.1 이후 적용하고, 수수료 반환 기준 변경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적용

## IV. FTA관세특례법 관련 제도개선

### 1.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FTA관세특례법 §9의3)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대외무역법(§37) 원산지증명 -발급기관(지경부 고시) · 일반원산지: 상공회의소 · 특혜관세: 상공회의소·세관 -수수료(지경부 고시) · 일반원산지증명: 7,000원 · 관세법에 따른 특혜 원산지 증명: 1,500원  * FTA원산지증명서는 FTA관세 특례법 적용(지경부 고시)	<input type="checkbox"/>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 1-1.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FTA관세특례규칙§13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 <input type="radio"/> 상공회의소: 7,000원 <input type="radio"/> 세 관: 면제

#### (2) 개정이유

-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따른 비용 보전 근거 마련
  - 세관은 무료로 증명서를 발급하고, 대한상의에 대해서는 비용 보전 차원에서 수수료 도입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7.1 이후 증명서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 FTA관세특례법상 특례부과제척기간 도입(FTA관세특례법 §16②)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특례법에 따른 경정, 부과지</p> <p>○ 협정관세 미적용시 납부할 세액 또는 납부할 세액과 기납부세액 차액을 부과·징수</p> <p>○ 해당세액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관세법 준용규정 신설</p> <p>○ (좌 동)</p> <p>○ 관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특례부과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 조항 준용</p> <p>* 관세법 제21조제2항 :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 등 7종의 특별제척기간 적용 사유를 규정</p>

### (2) 개정이유

- 관세부과권 확보 및 관세법과 통일성 제고
  - \* 특례부과제척기간 준용규정 도입에 따라, 원산지 조사결과 회신의 경우도 특례 사유로 추가(관세법도 개정)하여 적용 가능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관세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

### 3. 협정관세 적용보류 규정 명확화(FTA관세특례법 §17)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원산지 조사기간 중 협정관세* 적용 보류  ○ 대상: ①조사대상 수입자가 수입하는 ②조사대상 물품과 동종동질 물품	<input type="checkbox"/> 협정관세 적용보류 기간조정 및 조사범위·대상물품 한정  ○ 대상: ①조사대상 수입자가 ②조사대상 물품 수출자·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③조사대상 물품과 동종동질 물품으로 한정

\* 협정관세: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는 관세

#### 3-1. 협정관세 적용보류 기간(FTA관세특례규칙 §25)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원산지조사 개시일  ○ 수입자에게 서면조사를 통지한 날  * 현행 법 §17① : 원산지조사 개시일부터 조사결과의 통지일	<input type="checkbox"/>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보류 기간  ○ 조사개시 통지일부터 조사결과 통지일 까지  * 법 개정안 §17①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협정관세 적용을 보류

#### (2) 개정이유

- 협정관세 보류 남용 방지 및 통상마찰 완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원산지 조사 개시 분부터 적용

3-2.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요건(FTA관세특례령 §26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원산지 조사대상 물품과 동종 동질의 물품 추가 수입시 세관장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협정관세 적용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대한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li> <li>○ 원산지증빙서류 부정 발급·작성, 탈세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제보가 있는 경우</li> <li>○ 기타 세관장이 원산지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li> </ul>

(2) 개정이유

- 단순 확인 조사의 경우 협정관세 적용보류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원산지 조사 개시 분부터 적용

#### 4. 원산지 확인요청 사유 추가(FTA관세특례법시행령§14①)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계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input type="checkbox"/> 수입자 조사결과 원산지 확인 곤란 또는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요청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	<input type="checkbox"/> 원산지 확인요청 사유 추가  <input type="checkbox"/>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표본 조사를 하려는 경우

##### (2) 개정이유

- 원산지증명서 위·변조에 대해 신속·탄력적 대응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적용

## V. 관세 감면제도 정비

### 1. 서울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단계적 정비(관세법 §89)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서울불균형물품 관세감면 ○ (감면대상) 항공기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수리용 부분품 및 원재료 ○ (감면율) 100%(관세규칙)	<input type="checkbox"/> 서울불균형 관세감면 정비 ○ (일반기업) '15년부터 감면율 단계적으로 축소 후 폐지 ※ 감면율: ('13·'14) 100% → ('15) 80% → ('16) 60% → ('17) 40% → ('18) 20% → ('19) 폐지 ○ (중소기업) 현행 유지

#### (2) 개정이유

- FTA확대 등으로 관세감면 실효성이 감소된 점을 반영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유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적용

### 2. 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 대상기관 확대(관세규칙 §37②)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학술연구·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 물품 관세 80% 감면 ○ 감면대상: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2) 개정이유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규칙 시행일 이후 적용

### 3. 임상시험용의약품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관세규칙 별표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임상시험용의약품* 관세면제 ○ (면제대상) 임상시험용의약품 중 시험약 및 그 위약 ○ (적용기한) '12.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15.12.31.

\* 임상시험용의약품: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임상 시험에 사용하는 시험약 및 대조약

(2) 개정이유

- 임상시험 유치 경쟁력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규칙 시행일 이후 적용

### 4. 디지털방송장비 관세감면 종료(조특법 §118①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 관세감면 ○ (대상자)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 (적용기한) '12.12.31	<삭 제>

(2) 개정이유

- 정책목적 달성, FTA 확대에 관세감면 실효성 감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적용

5. 해외진출 후 국내복귀 기업 관세감면

(조특법 §118의2, 조특령 §115의2, 조특규칙 §50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해외진출 후 국내로 복귀한 중소기업의 자본재 수입에 대해 관세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기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복귀기업</li> <li>○ 수도권 밖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할 것</li> <li>○ 감면대상 자본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자본재</li> <li>- 국내복귀기업 확인 후 5년 이내 수입되는 자본재</li> </ul> </li> <li>○ 감면율: 10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사업장 철수방식: 100%감면(2억원 한도)</li> <li>- 해외사업장 유지방식: 50%감면(1억원 한도)</li> </ul> </li> <li>○ (적용기한) '15.12.31</li> </ul>

(2) 개정이유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법·령·규칙 시행일 이후 적용

6. 제주첨단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  
일몰연장(조특법§121의10, §121의11)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면제(면제율: 100%)  ○ 일몰기한 : '12.12.31	         ○ 일몰기한 연장 : '15.12.31

(2) 개정이유

- 제주지역 첨단과학기술단지 활성화 및 투자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적용



## 2012간추린 改正稅法

---

印 刷 2013年 3月 日

發 行 2013年 3月 日

發 行 處 企劃財政部 稅制室 租稅政策課

印 刷 處 新진기획 (044-863-7887)

---

\* 본 冊子를 複寫出版하고자 하거나 본 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企劃財政部 稅制室 租稅政策課(215-4112)에 事前問議 바랍니다.

\* 본 冊子는 改正된 稅法內容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설명중 改正法令과 상이한 내용이 包含되는 경우에 法令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